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2020년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경 상 남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목 차

Ⅰ.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5
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9
Ⅲ. 입찰방법 심의 ····· 17
Ⅳ. 입찰안내서 심의 ····· 33
Ⅴ.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 ····· 39
Ⅵ. 기술형입찰 설계 등 적격여부 및 평가 심의방법 ····· 49
Ⅶ. 기술형입찰 실시설계 적격여부 심의 ····· 87
Ⅷ.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 심의 ····· 93
Ⅸ.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심의 ····· 97
Ⅹ.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계획 ····· 105
Ⅺ. 기술심의 관련 서식 ····· 125

## 【참고 자료】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169
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207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37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257
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277
6.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363
7.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373
8.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95
9. 기관별 설계심의담당자 연락처 ····· 467

# Ⅰ

#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주요 법령 개정 사항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개정내용<법률 제16414호, 2019. 11.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

### 개정내용<법률 제16624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사후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개정내용<경상남도 공고 제2020-635호, 2020. 3. 26>

#### 가. 개정사유

○ 국토교통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사항 반영

○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객관성 확보

#### 나. 개정내용

○ 설계 등 용역

- 업무중복도 평가 개선,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부여
- 신기술인정기간 축소,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개선
- 책임기술인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 확인 의무화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 명확히 기재 등

○ 건설사업관리 용역

- 신용도 및 투자실적 평가기준 완화
- 업무중복도 평가 시 사실 확인서류 발급 개선
-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 완화, 용역수행실적 평가항목 추가
- 폐기물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 평가대상 범위 추가

○정밀안전진단용역

- 참여기술인 자격 및 등급 평가 시 직무분야로 평가토록 명시
- 참여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 실적 및 경력 인정
-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조정 등

○ 용역업자 → 용역사업자로 변경

○ 신용도 평가(별표1~3)기준 : 감점항목 중 "입찰참가제한"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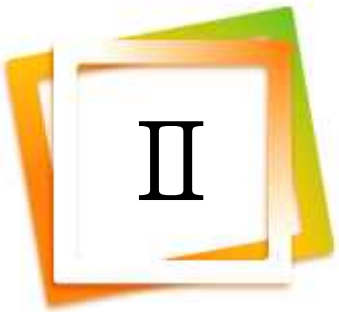

# Ⅱ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1. 근거법령 및 구성현황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구성요건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 25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구성하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

※ 임 기 : 2년, 연임가능(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1회 연임 가능)

○ 심의위원 : 21분야, 249명(공무원 49, 교수 77, 기술사 등 123)

- 임 기 : 2019. 9. 1. ~ 2021. 8. 31.(2년)

| 구 분 | 계 | 위원장 | 부위원장 | 단지계획 | 도로 | 철도 | 교통 | 토목구조 | 수자원 | 상하수도 | 항만해안 | 토질지질 |
|---|---|---|---|---|---|---|---|---|---|---|---|---|
| 구성 | 249 | 1 | 1 | 6 | 19 | 2 | 6 | 18 | 12 | 17 | 4 | 27 |
| 토목시공 | 건축계획 | 건축시공 | 건축구조 | 건축설비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환경 | 폐기물 | 조경 | 건설안전 | |
| 28 | 15 | 12 | 12 | 9 | 9 | 12 | 5 | 8 | 2 | 10 | 14 | |

○ 설계심의분과위원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필요 시 구성운영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과반수 포함 구성)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명단은 우리 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설정보⇨건설관련위원회)에 게시되어 있음)

##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기준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격

- ○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 ○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자
-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그 밖에 건설기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임명)

- ○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 대상 및 내용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등**
  - ▸ 기술형 입찰공사(일괄, 대안, 기술제안)의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 사업수행능력(PQ)평가, 기술인평가서(SOQ)평가, 기술제안서(TP)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등

○ 소위원회 구성 : 위원 249명 중 7 ~ 25명으로 구성

⇒ **심의위원 중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분야 위원 선정**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심의 대상 :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설계(기술제안) 평가 심의

○ 소위원회 구성 :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10 ~ 20명으로 구성

⇒ 분과위원 중 공사특성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선정

## 기술심의 업무 구분표

| 구 분 | 입찰방법 심 의 | 입찰안내서 심 의 | 기본설계적격 평 가 심 의 | 실시설계적격 평 가 심 의 | 기본 및 실시 설 계 심 의 |
|---|---|---|---|---|---|
| 일괄입찰 | ○ | ○ | ○ | ○ | X |
| 대안입찰 | ○ | ○ | X | ○ (대안설계) | X |
| 기본설계 기술제안 | ○ | ○ | ○ (기술제안서) | ○ | X |
| 실시설계 기술제안 | ○ | ○ | X | ○ (기술제안서) | X |
| 기타공사 | X | X | X | X | ○ |

## 지방건설기술심의 업무 흐름도(예시)

○ 기술형 입찰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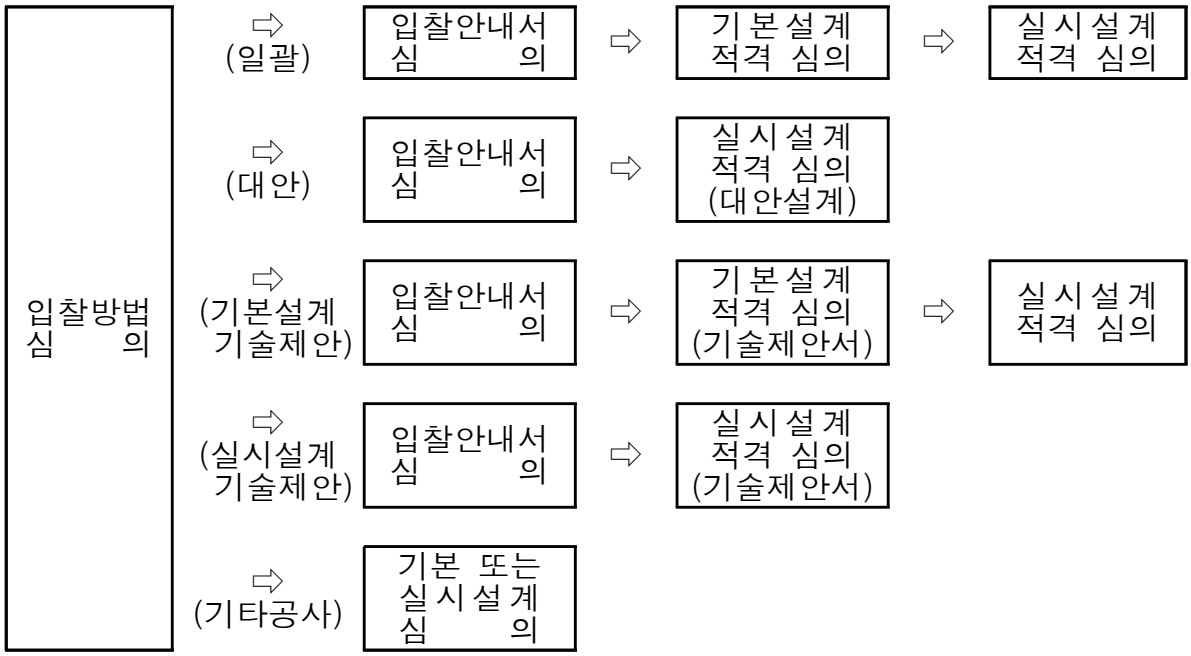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기본 또는 실시설계 타당성 심의 |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br>입찰공고안(SOQ, TP 대상)의 적정성 심의 |
|---|

# 4.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및 수수료

## 심의수당 및 수수료

○ 산출기준

| 구 분 | 심의수당 및 수수료 산출기준(건당) |
|---|---|
| ① 조례[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 · 수 당 : 사전심의수당[2]+참석수당<br>·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
| ② 조례 제6조제4호 입찰방법 심의 | · 수 당 : 참석수당<br>·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
| ③ 조례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적격평가심의, 기술제안서 적격평가심의(기술형 입찰) | · 수 당 : (기술검토비[3] × 업체수) + 참석수당<br>· 수수료 : 수당×심의위원수 |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7조

2) 사전심의수당은 심의 건 당 30,000원으로 한다.

3) 기술검토비는 기술사 단가의 50%로 한다.

※ 기술사 단가 :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사 단가로 한다 (천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함)

4) 수당지급 시 여비(교통비 등)는 별도 산정하며 실비를 지급한다.

5) 참석수당은 일 당 70,000원으로 한다.

6) 초과수당은 일 당 30,000원으로 하며, 소집심의 2시간 초과 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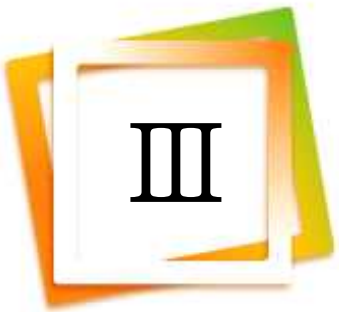

# Ⅲ

# 입찰방법 심의

# 입찰방법 심의

## 1. 근거법령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심의절차

| 심의요청 | ⇨ |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 성 | ⇨ |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 최 | ⇨ | 심의의결 | ⇨ | 심의결과 통보 및 공고 |
|---|---|---|---|---|---|---|---|---|
| (발주청) | | (심의부서) | | (심의부서) (발 주 청 ) | | (심의위원회) | | (심의부서) |

## 2. 세부 추진 절차 및 주요내용

### 1 심의요청 : 발주청 → 심의부서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도, 고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일괄·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일괄·대안입찰 공사 :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또는 특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중 일괄이나 대안으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기술제안입찰 공사 :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 기타공사 : 일괄·대안 및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 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제출

✔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입찰방법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명시하여 제출

1.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집행할 공사와 기타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 발주청은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함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2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7 ~ 2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전문분야 및 인원 구성(예시)

| 구 분 | 계 | 도 로 | 토목시공 | 토목구조 | 토질·기초 |
|---|---|---|---|---|---|
| 인 원 | 13 | 3 | 4 | 3 | 3 |

## 3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발 주 청 : 사업계획 및 입찰방법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 심의위원 : 적정한 입찰방법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발주청과 질의·응답 및 심의위원 간 토론

ㅇ **일괄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②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ㅇ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대안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ㅇ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 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②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ㅇ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심의기준(내용)
  ①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 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 4 심의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일괄, 대안, 기술제안, 기타공사 등 입찰방법 결정

## 5 심의결과 통보 및 공고 : 심의부서 → 발주청

○ 심의부서 : 심의의결서를 발주청에 통보 및 심의결과 공고

✔ 심의결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로 심의의결 된 경우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

✔ 회의록 작성 및 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 발주청 : 30일 이내에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 심의부서에 통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0조)

##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1호(2019. 2. 25.)]

[별표 1]

###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분 야 | 심의대상 시설기준 |
|---|---|
| 토 목 | ▪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br>▪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br>▪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br>▪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br>▪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br>▪ 철도(철도차량기지)<br>▪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 건 축 |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br>▪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br>▪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 플랜트 |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br>▪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br>▪ 가스공급시설<br>▪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분 야 | 심의대상 시설기준 |
|---|---|
| 토 목 |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br>▪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m 이상<br>▪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br>▪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br>▪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br>▪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br>▪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br>▪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br>▪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br>▪ 철도(철도차량기지)<br>▪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 건 축 |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br>▪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br>▪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 플랜트 |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br>▪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br>▪ 가스공급시설<br>▪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별표 2]

#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 대상공사 선정기준 | 검토항목 |
|---|---|---|
|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때<br>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br>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 ▪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br>▪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br>▪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br>▪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br>▪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br>▪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br>▪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도<br>▪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
|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br>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 ▪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br>▪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br>▪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3.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br>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br>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 ▪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br>▪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br>▪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br>▪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
|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br>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 ▪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br>▪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br>▪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

[별표 3]

#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 대상공사 선정기준 | 검토항목 |
|---|---|---|
|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br>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br>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br>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br>4)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

[별표 3의 2]

#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 대상공사 선정기준 | 검토항목 |
|---|---|---|
|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설계 및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br>2) 시공 전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br>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해당기술 채택 사유)<br>2)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지 여부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인 적용은 제외)<br>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등)<br>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br>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리한지 여부 |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 | |
|---|---|
| 스마트 건설 | ▪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br>▪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br>▪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br>▪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br>▪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

[별표 4]

#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 발주방식 (우선순위) | | | |
|---|---|---|---|---|
| | 기본계획완료 후 | | 실시설계완료 후 | |
| | 일괄 | 기본설계 기술제안 | 대안 | 실시설계 기술제안 |
| Ⅰ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 | | | |
| 1)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 | ○ | △ | ○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 △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 △ | △ |
| Ⅱ.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 | |
| 1) 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 △ | ○ | △ | ○ |
|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 △ | ○ | △ | ○ |
| Ⅲ.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 | | | |
| 1) 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 △ | ○ |
| 2)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 | ○ | △ | ○ | △ |
|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 ○ |
| Ⅳ.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 | | |
| 1) 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반영이 필요 | △ | ○ | △ | ○ |
| 2) 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 | △ | ○ | △ | ○ |
| Ⅴ.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Ⅵ. 설계와 시공·유지관리 전반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 | ○ |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와 “△”로 구분 후, “○”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표 5]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①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

| 종 류 | | 낙찰자 결정방법 |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 ▪ 설계 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
| 종합평가방식 | 입찰가격조정 |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
| | 설계점수조정 |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 가중치기준 |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 |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②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⑵ 입찰가격 조정/설계점수 조정방식 :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있어 비용절감,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⑶ 가중치 기준방식 : 시설물의 사용 목적 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⑷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공사 또는 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

# 입찰방법 시설기준 미달사업 사전협의 절차

## □ 필요성

○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대상시설 기준미달 사업**에 대하여 심의요청 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함

-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협의절차 등을** 미리 규정할 필요

* 기준미달 사업 협의대상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 제6항)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 □ 주요내용

○ **협의대상** : 심의대상시설 기준 미달사업을 일괄·대안·기술제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 **협의기관** :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계획 중인 **全발주청**(지자체 등)

○ **협의시기**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前

○ **협의방법** : 협의요청 사유(양식 참고1)를 작성하여 **해당 심의기관을 경유**하여 **중앙위에 요청**

○ **협의회신** : 중앙위 심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해당 발주청과 심의기관에 통보

* 향후 설계심의관리시스템(온라인 턴키마당)에 입찰방법 심의결과 입력 시 협의여부 확인 추진

**참고1** **협의요청 양식**

#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 협의
## (심의대상 시설기준 미달사업)

### 1. 사업개요

○ 공사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주요 시설물 현황 :

* 교량·터널 등 구조물, 건물 층수·연면적 등 심의대상 시설기준 항목위주로 작성 (필요시 별첨으로 처리)

○ 총공사비/공사기간 :　　/

○ 발주기관 :

### 2.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3. 추진경위

### 4. 입찰방법 협의요청 내용

○ 입찰방법 요청(안) :

○ 입찰방법 요청사유

1) 공기단축 필요성

–

* 공기단축 목표 개월수, 당초 대비 단축내용 비교설명 등 정량적으로 작성

2) 신기술·신공법 적용 필요성

–

붙임 : 참고자료(위치도, 도면 등)

# 입찰안내서 심의

# 입찰안내서 심의

## 1. 근거법령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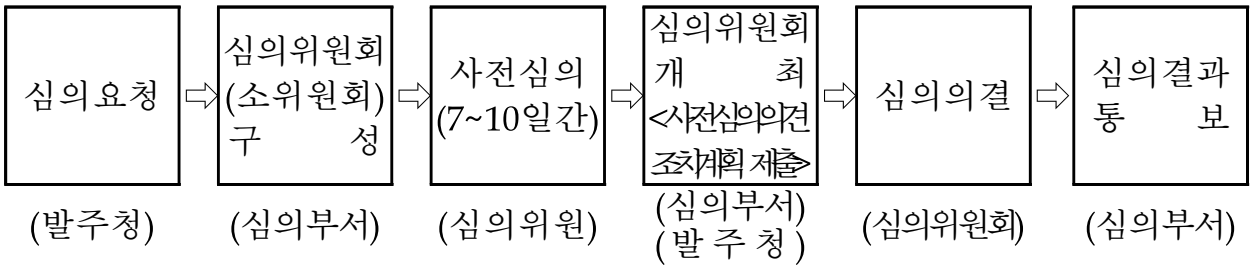


## 2. 세부 추진 절차 및 주요내용

### 1 심의요청 : 발주청 → 심의부서

○ 발주청에서는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심의 요청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9, 11, 12의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1.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기술제안) 배점표, 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기술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사전조사 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 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

✔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질조사 생략은 가능하나 그 외 공동 활용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실시

○ (입찰서)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서 제출 목록 중 토목 및 건축분야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8,9,11,12)를 참고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내용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의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 범위내로 한정

○ (감점사항)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상기 입찰안내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

## 2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 7 ~ 2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전문분야 및 인원 구성(예시)

| 구 분 | 계 | 도 로 | 토목시공 | 토목구조 | 토질·기초 |
|---|---|---|---|---|---|
| 인 원 | 14 | 3 | 4 | 4 | 3 |

## 3 사전심의

○ 사전심의 기간 : 10일 이내

○ 심의위원 : 입찰안내서를 검토하여 심의의견 작성

○ 심의부서 : 사전심의 시 제시된 심의위원 의견을 발주청에 통보

○ 발 주 청 : 심의위원 사전심의 의견을 검토 후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4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발 주 청 : 사업계획 및 입찰안내서 내용을 설명

○ 심의위원 : 발주청과 질의·응답 및 심의위원간 토론

✔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해 아래 사항을 심의

· 소요사업비,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 지장물, 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 5 심의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의결

-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6 심의결과 통보 : 심의부서 → 발주청

○ 심의부서 : 심의의결서, 심의조건사항(사전심의 및 소집심의시 제시된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 : 입찰공고 전까지 심의조건사항에 대해 심의위원의 개별 확인을 받은 후 보완된 입찰안내서를 심의부서에 제출

# V

#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

#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제도

## 1. 기술형입찰 개요

### 입찰방법(종류)

○ **일괄입찰** :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지침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사의 기본설계서 및 기타 도서를 작성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 **대안입찰** :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서(원안설계) 공종 중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원안설계보다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대체(대안)설계를 하여 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청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청이 작성하여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

### 기술형입찰 장·단점 비교

○ 장 점

① 책임소재 일원화(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

② 최적 대안 선정(경쟁을 통해 합리적 시공 및 다양한 대안 유도)

③ 공사기간 단축, 민간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전문화의 촉진

○ 단 점

① 대형건설사 간 입찰담합·수주독점으로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② 高 낙찰률 구조(최저가공사에 비해 높은 낙찰률)

③ 사업비용의 불확실성(설계안 미확정으로 착공이후 위험부담 노출)

### 도입연혁

○ 턴키제도는 1975년 건설기술 발전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어 1996년 턴키활성화 대책 이후 본격 적용

○ 기술제안 입찰은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적용되다 현재 모든 대형사업에 확대

# 2. 기술형입찰 제도의 일반사항

## 기술형입찰 공사와 기타공사(최저가) 비교

| 분야별 | 일괄(턴키)공사 | 대안공사 | 기술제안 | 기타공사 |
|---|---|---|---|---|
| 설계주체 | ▪ 입찰자 | ▪ 발주기관 : 원안설계<br>▪ 입 찰 자 : 대안설계 | ▪ 발주기관 : 기본설계, 실시설계<br>▪ 입찰자 : 기술제안 | ▪ 발주기관 |
| 예정가격 적정여부 | ▪ 작성하지 않음 | ▪ 총공사(원안) 및 대안 공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 ▪ 기본설계 : 작성하지 않음<br>▪ 실시설계 : 작성 | ▪ 작 성 |
| 낙찰자 결정방식 | ▪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방법 (5가지)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후 적합자 | ▪ 좌동 (단,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제외) | ▪ 좌동 |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중 적격심사 통과자 |
| 계약금액 조정여부 | ▪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금액 조정불가 (단, 발주기관 귀책사유 제외) | ▪ 원안부분 : 가 능<br>▪ 대안부분 : 불가능 | ▪ 기본설계 : 불가능<br>▪ 실시설계 : 가능 |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가능 |

## 일괄입찰 추진절차(예시)

① 예비타당성 조사 ⇨ ② 기본계획 수립 ⇨ ③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 ④ 기본설계

- ① 예비타당성 조사: ▪ 사업성·경제성 검토(발주청)
- ② 기본계획 수립: ▪ 설계용역업체 참여 (각종 영향평가 등) ▪ 개략사업비, 공구분할
- ③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 기본설계 발주방식 결정(일괄 or 기타) (심의위원회) ▪ 입찰안내서 작성 (심의위원회)
- ④ 기본설계: ▪ 일괄(턴키) 발주 ▪ 사전PQ심사 후 현장설명회 (기본계획도서 배포)

⑤ 기본설계 적격심의 ⇨ ⑥ 실시설계적격업체 선정 ⇨ ⑦ 실시설계 ⇨ ⑧ 실시설계 적격심의

- ⑤ 기본설계 적격심의: ▪ 설계 성과품 적격 심의 ▪ 실시설계적격업체 최대 6개사 선정
- ⑥ 실시설계적격업체 선정: ▪ 공고된 실시설계 적격업체 경쟁방법에 따라 선정
- ⑦ 실시설계: ▪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실시설계 수행
- ⑧ 실시설계 적격심의: ▪ 실시설계 적격업체 설계성과품 적격심의(낙찰업체 결정)

## 기술형입찰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 공사의 목적, 기술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

| 낙찰자 결정방식 | | 적용대상 공사 및 기준 |
|---|---|---|
| 설계적합 최저가 | | ▪ 최저가 입찰자(설계기준 정형화·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
| 종합평가 | 입찰가격조정 |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br>※조정가격=입찰가격/(설계점수/100) |
| | 설계점수조정 |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br>※조정점수=[(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세포함)]/입찰가격 |
| | 가중치 기준 | ▪ 기술강조 : 설계 가중치 범위 - 전체의 50% 초과 ~ 80% 이하 적용<br>▪ 균등평가 : 설계 가중치 범위 - 전체의 40% 이상 ~ 60% 이하 적용<br>▪ 가격강조 : 설계 가중치 범위 - 전체의 20% 이상 ~ 50% 미만 적용 |
| 확정금액 최상설계<br>(일괄입찰만 적용) | |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소위원회 구성 | - 10~20명 이내, 전문분야별 2명 이상 |
| 소위원 구성시기 | - 설계평가일 최소 20일 전<br>-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 |
| 소위원 구성방법 | -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선정 |
| 검토기간 | -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
| 평가범위 |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 결과공개 | -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자 해명 요구시 Debriefing(사후설명)을 실시 |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운영절차

| 심의요청 | ⇨ | 소위원회 구 성 (명단공개) | ⇨ | 공동설명회 개 최 (사전심의) 현장답사 | ⇨ | 기술검토회 개 최 | ⇨ | 평 가 회 개 최 (설계평가) | ⇨ | 결과통보 |
|---|---|---|---|---|---|---|---|---|---|---|
| (발주청) | | (심의부서) | | (분과위원회)<br>(심의위원)<br>(입찰참가자)<br>(발 주 청 ) | | (분과위원회)<br>(심의위원)<br>(발 주 청 ) | | (분과위원회)<br>(심의위원)<br>(입찰참가자)<br>(발 주 청 ) | | (심의부서) |

## 4.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추진방향

### 설계심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

○ 선정된 위원의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5조, 제32조

☞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 명단 공개

☞ (제32조제6항)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 점수, 평가사유서 등을 실명으로 공개

○ 민간 분과위원 비리시, 공무원 의제 처벌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

☞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해당(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될 때에는 공무원으로 처벌

○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 시, 검토결과를 Debriefing(사후설명)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

☞ (제32조제8항)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제기 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

### 설계심의 내실화

○ 분과위원은 자신의 전문분야만 평가 · 채점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

☞ (제32조제1항제2호) 심의위원은 담당 분야의 설계점수를 채점하고 평가 사유서를 작성

○ 설계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전 위원 선정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위원회 조례' 제10조의 3

☞ (제10조의3 제4항) 심의위원은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

# 기술형입찰 설계 등 적격여부 및 평가 심의방법

# 기술형입찰 설계 등 적격여부 및 평가 심의방법

## 1. 근거법령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심의절차

| | |
|---|---|
| 심의요청 | ▪기술제안 심의 의뢰(발주기관→심의기관)<br>▪기술제안서, 기본설계서, 입찰안내서 제출<br>▪전문분야 검증기관 검토서(필요시) |
| ⬇ | |
| 심의계획 수립<br>(D - 20일전) | ▪심의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br>▪소위원회 구성(안)<br>▪지원반 구성 및 운영(발주기관 협의)<br>▪온라인 턴키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등 |
| ⬇ | |
| 심의계획 설명회<br>(D - 15일전) | ▪전반적 심의운영방안 설명(심의기관→입찰사)<br>▪공동설명회 운영 및 심의위원 질문항목 답변서, 입찰사간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설명<br>▪분과위원 제척대상 확인<br>▪온라인 턴키마당 사용방법 및 절차 등<br>▪업체간 설계(기술제안서) 토론회 방법 설명 |
| ⬇ | |
| 심의위원 선정 및 공개<br>(D - 10일전) | ▪심의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br>(홈페이지, 온라인 턴키마당 등에 공개)<br>▪심의자료 온라인 턴키마당 등록(발주기관, 심의기관)<br>▪설계도서 배포 |
| ⬇ | |
| 공동설명회 및 현장답사<br>(D - 8~9일전) | ▪전반적 심의운영 방안 설명(심의기관 → 심의위원)<br>- 기술검토서 및 질문서 등 작성방법 설명<br>▪심의위원에게 기술제안 내용 설명(입찰사 → 심의위원)<br>▪입찰업체 기술제안서 설명 이후, 간단한 질문 및 답변<br>▪심위위원 현장답사(발주기관 수행) |
| ⬇ | |
| 설계(기술제안서)검토서, 질의서, 등 심의자료 제출 및 등록 (D -6일전) | ▪온라인 턴키마당 이용 위원 질의 및 업체 답변<br>▪입찰참가자별 설명자료 등록<br>▪위원 공통질문서 및 업체간 질문서 제출 |

| | |
|---|---|
| ⬇ | |
| **기술검토회의**<br>**(D - 5일전)** |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확정<br>▪설계검토서 검증 및 기준위반사항 심의<br>▪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 |
| ⬇ | |
| **설계(기술제안서) 평가회의**<br>**(D - day)**<br>**▪ 설계심의 토론회**<br>**▪ 설계평가**<br>**▪ 평가결과 공개** | ▪입찰업체 기술제안서 설명 이후, 질문 및 답변<br>- 배점위원회 별도 개최<br>▪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br>▪보충·추가질의 및 입찰사 답변<br>▪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br>▪평가위원 설계도서 검토 및 토론<br>▪설계 점수 채점(심의위원)<br>▪설계적격여부 심의(심의위원)<br>▪평가결과 발표 및 공개(홈페이지, 온라인 턴키마당) |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실시설계 후, 심의 절차를 추진하여 기술제안 적격여부와 점수를 평가 한다.

## 2. 세부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1 심의요청 : 발주청 → 심의부서

○ 발주청 : 설계(기술제안서)평가 심의를 위해 설계도서(기술제안서), 보고서, 입찰안내서 등과 함께 심의 요청

✔ 입찰공고(조달청) → 설계서(기술제안서) 작성(입찰참여업체) → 입찰실시(조달청) → 가격입찰서(조달청), 설계(제안) 평가(심의부서)

### 2 심의계획 수립(소위원회 구성)

○ 발주청과 협의하여 심의일정, 장소 등 결정

○ 심의계획 설명회, 공동설명회(현장답사 포함), 기술검토회 및 설계(제안서)평가회 운영계획 수립

○ 평가심의에 필요한 주요 공지사항 결정

○ 소위원회 구성

- 분야별 심의위원 수 및 선정방법 결정하여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 구성시 기피대상 심의위원은 대상에서 제외(심의계획 설명회시 확인)
- 구성시기 : 평가회 개최 20일 이전(충분한 검토기간 확보)

✔ 소위원 명단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구성인원 : 분과위원 중 전문분야별 2명 이상, 10 ~ 20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 입찰안내서의 설계평가표(전문분야, 배점)에 따라 적정한 인원 구성(예시)

| 구 분 | 계 | 도로・교통 | 토목시공 | 토목구조 | 토질・기초 |
|---|---|---|---|---|---|
| 인 원 | 14 | 4 | 3 | 4 | 3 |

### 3 심의계획 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개최

○ 심의계획 설명회 개최

- 참석대상 : 발주청, 입찰참여업체
- 주요내용 : 심의일정 및 운영절차 등 설명
- 기피 대상 심의위원 확인
- 입찰참여업체 발표 및 답변순서 결정(추첨)

❍ 공동설명회 개최(1회 이상 실시)

- 참석대상 : 심의위원, 발주청, 입찰참여업체
- 주요내용 : 심의일정 및 운영절차 등 설명
- 발 주 청 : 사업현황 및 제안사항 설명, 현장답사 시행
- 입찰참여업체 : 제출한 설계도서(제안서)에 반영된 주안점 및 특성 설명

✔ 설명시간은 입찰참여업체별 동일한 시간으로 제한, 초과시 강제로 중단 조치(전원차단 등)

- 청렴서약서 제출 : 심의위원, 입찰참여업체
- 현장답사 시행 : 심의위원에게 현장 설명(입찰참여업체 참석 불가)
- 설계도서 배부 : 심의위원, 입찰참여업체(발주청이 직접 배부)

✔ 입찰참여업체는 설계내용 설명을 위해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턴키마당을 활용하여 입찰참여업체들이 심의위원에게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4 사전심의

❍ 심의기간 : 10일 이내(평가회의 6~10일 전)

❍ 심의위원 : 기술검토서(장・단점, 공통질문) 작성

❍ 입찰참여업체 : 입찰참여업체 간 질문서 작성
(상대업체 설계내용 검토 후 질문사항 작성)

❍ 발주청 :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 검토

✔ 설계(기술제안) 검토서 내용

・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 등 설계(기술제안서) 검토 결과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등 필요시 전문분야에 대한 검증기관 검토 결과
・ 각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도서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제시(요구) 내용의 위배여부, 최소시설기준 미달 등 부적격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적 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사항 등의 검토내용 설명

## 5 기술검토회 개최

○ 참석대상 : 심의위원, 발주청, 입찰참여업체

○ 전문분야별 1인 이상 참석과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

○ 발주청 설계(기술제안) 검토서 검증, 심의위원 기술검토서(보완사항, 공통질문) 검증, 입찰참여업체간 질문서 검증

✔ 공통질문 : 전문분야별로 질문내용을 검토하고 입찰참여업체에게 질의할 건수와 내용을 확정

○ 평가회 운영방법·절차 결정(심의위원 및 업체의 질문순서와 건수, 질문 및 답변 시간, 제출서류 양식 등)

✔ 기술검토회 결정 사항 통보(발주청, 입찰참여업체)

· 통보내용 : 평가회 운영계획, 심의위원 기술검토서(보완사항, 공통질문), 업체간 질문서 등

· 발 주 청 : 검증된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준비

· 입찰참여업체 : 설계(기술제안)제안설명, 심의위원 기술검토서(보완사항, 공통질문) 및 입찰참여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작성

⇒ 평가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제출기한, 작성양식 및 부수는 별도로 정함)

## 6 평가회 개최

○ 참석대상 : 심의위원, 발주청, 입찰참여업체

○ 평가회 개최 전 준비사항

- 입찰참여업체 : 전문분야별 기술인 등록 및 성실답변서약서 작성
- 준비사항 : 기본설계도서, 심의위원 기술검토서(지적사항 및 공통질문)에 대한 입찰참여업체 답변서, 입찰참여업체 질의·답변서, 발주청 설계검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 주요 사항

- 전문분야별 1인 이상 참석과 입찰참여업체의 출석으로 개회
- 평가회 운영방법 및 절차, 입찰참여업체의 답변순서 및 시간, 답변시간 초과 시 제재방법 등 운영과 관련한 유의사항 전달

- 심의위원 : 입찰참여업체에 설계내용 질문(공통질문), 입찰참여업체의 답변 청취, 보완사항 및 제안사항 제출(입찰참여업체는 처리의견 및 수용여부 결정), 보충·추가 질의(서면으로 위원장에 제출), 심의위원 전문분야별로 토론, 설계(제안서)점수 평가 등
- 발 주 청 : 제안설명, 설계(기술제안)검토서 및 감점 내역 보고 등
- 입찰참여업체 : 공동 및 입찰참여업체간 질의·답변, 입찰참여업체간 설계(기술제안)토론회(생략가능), 심의위원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 평가회 주요 진행절차

① 개회 및 성원보고, 심의위원 소개 : 간사
② 인사말씀 및 심의안건 상정 : 위원장
③ 회의 진행방법 안내 : 간사
④ 심의위원과 입찰참여업체간 질의·답변(공통질문) - 생략가능
⑤ 입찰참여업체간 설계(기술제안) 토론회
⑥ 심의위원 추가 질의 및 입찰참여업체 답변

✔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소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위원장은 질문내용이 공통질문으로 검토된 경우에 한하여 소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하고 입찰참여업체의 전문분야별 기술인이 답변함

⑦ 설계(기술제안) 보완·추가 검토의견서 작성 : 심의위원

✔ 보완·추가 검토서 작성 내용

· 입찰참여업체의 답변내용이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입찰시 제출한 설계를 보완·추가하고자 할 경우의 의견
·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와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만 설계도서의 일부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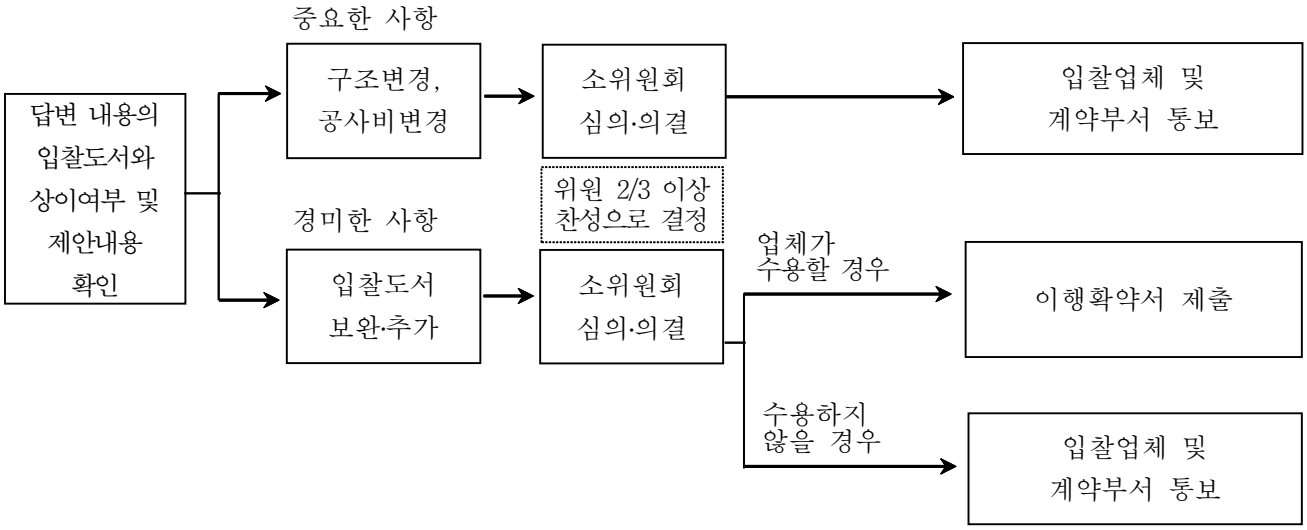


⑧ 업체답변서 등 진위 여부 검토서 제출 : : 심의위원

⇒ 입찰참여업체 : 진위확인 및 성실이행확약서 제출

⑨ 전문분야별 심의위원간 토론

✔ 심의위원간 토론 시 입찰참여업체는 퇴장 조치

⑩ 점수 평가(평가사유서 작성) : 심의위원

✔ 전문분야별로 평가(채점) :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혀 공정한 평가 유도

✔ 기술제안 입찰은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 여부 심의

⑪ 감점사항 보고 : 발주청

✔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 여부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평가(채점)가 끝난 후 위원회에 제출

⑫ 평가결과 집계 : 심의부서

⑬ 심의의결 : 설계의 적격여부 및 종합평가점수 확정

⑭ 설계(기술제안) 적격여부, 대안 채택여부,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세부 감점내용 공개(입찰참여업체 참석)

⑮ 폐 회

## 7 심의의결

**<일괄입찰>**

- ❍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설계
- ❍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여부 의결

**<대안입찰>**

- ❍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설계
- ❍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 ❍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 ❍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 설계적격 여부와 대안공종별 대안채택 여부 의결

**<기술제안입찰>**

○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적격 : 기술제안서 제안사항,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기술제안 범위, 기타 공사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건부 적격 : 기술제안서 제안사항,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기술제안 범위, 기타 공사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공사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완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의위원이 요구한 보완, 수정사항을 계약체결 이전에 설계도서에 반영할 것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심의위원 및 계약담당 직원에게 확약하는 경우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 부적격 : 기술제안서 제안사항,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기술제안 범위, 기타 공사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단, 특정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 설계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전문분야 적정성]**

○ 전문분야의 기술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추진방향, 추진전략, 분석기준,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내용 등)과 기술제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야 및 항목[에너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 공사관리, 산출내역(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표]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평가항목(또는 세부분야) 및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8 심의결과 통보 : 심의부서 → 발주청

○ 심의부서 : 심의결과에 대한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제기 접수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심의결과에 대한 입찰참여업체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접수하고 이의제기 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입찰참여업체에 설명(접수 후 5일 이내)한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발주청에 심의결과를 통보

✔ 해명시 포함될 내용과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내용

| 해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해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
| - 입찰자의 제안서에 중대한 약점 또는 결함에 대한 평가<br>- 전체적으로 평가된 성공한 입찰자의 가격 또는 비용 그리고 기술등급, 해명된 입찰자에 대한 과거 수행정보<br>-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기관이 작성한 어떤 순위가 있을 경우, 모든 입찰자의 전체 순위<br>- 입찰요청서에 포함된 낙찰자 선정절차, 적용규정, 기타 적절한 질문에 대한 합리적 답변 | - 다른 제안서들과 입찰자 제안서의 항목별 비교<br>- 거래처 비밀<br>- 특권이 있거나, 비밀인 기술 가격분석, 이윤, 직접비 비율,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권이 있거나 비밀인 재정정보<br>- 입찰자의 과거 수행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이름 |

○ 심의부서 : 이의제기 접수 후 최종결과를 발주청에 심의의결서, 심의조건사항(사전심의 및 평가회시 제시된 심의위원의 심의의견) 통보

○ 발 주 청 : 입찰참여업체 심의결과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통보

○ 조 달 청 :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 9 심의결과 공개

○ 심의위원의 입찰참여업체별 전문분야점수,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홈페이지, 온라인 턴키마당 등에 15일간 공개

## 3. 입찰참가업체간 토론회 운영방안

### 시행배경

○ 평가회시 공통 및 업체간 질의·답변이 제출된 답변서의 낭독·운영으로 답변의 진위여부 확인 어려움 등 심의 효율성 저하

○ 설계(기술제안서)의 충분한 비교·검토, 진위여부 확인 등 심의 내실화를 위해 입찰참가업체 상호간 설계(기술제안)내용을 토론하는 방안 시행

### 토론회 운영방안

**<토론개요>**

○ 토론방법 : 질의 토론

○ 토론시기 : 평가회 당일 기존의 '공통 및 업체간 질의·답변' 서면 대체 및 활용

○ 참 석 자 : 소위원장,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심의위원(참관)

**<토론 진행방법>**

○ 진행(좌장) : 소위원장

○ 토론참석 : 2개 업체씩 입장하여 토론

* 심의위원은 참관만 하며, 업체 회의참여 순서는 심의계획 설명회시 결정

○ 토론범위 : 심의위원 공통질의 + 업체간 질의 내용

○ 토론시간 : 48분 / 상대 업체별 3개씩 질의

○ 토론실시

- 질의순서 : A, B업체 번갈아 질의(A질의→B질의→A→B→A→B)
- 토론방법 : 각 질문 건별로 질의 및 답변 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질의 건당 최대 8분)

☞ A업체 질의(1분)→B업체 답변(2분)→A업체 추가질의(2분)→B업체 답변(2분)→A업체 마무리(1분)

* 추가질의는 선택사항, 질의 성격의 답변은 지양
* 토론 소요시간 : 48분(2개업체 참여시)
  · 토론 1회당 소요시간 : (2개 업체 × 3개 질의) × 8분(질의당 토론시간) = 48분
* 주제를 벗어나거나 상대방 비방 등 토론범위를 벗어날 경우 소위원장이 즉시 중단 및 해당업체 주의조치(심의위원 평가 시 반영가능)
* 토론시간 초과시 즉시 중단

○ 입찰참가자가 4개사 이상일 경우, 토론방법·장소·시간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특성에 맞추어 토론회 운영방안 수립 시행

## 참고 1 토론회 진행방법(질의 1건당)

## 4. 기술제안입찰 전문분야 검증기관 선정

○ 심의요청 전에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에너지, 생애주기비용 등의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설계(기술제안) 검토회의' 시 공유 가능

○ 심의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검증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심의 요청

○ 필요시 검증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에너지 및 VE/LCC 관련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

○ 검증기간은 검증기관 선정 이후, 10일 이내로[최대 설계(기술제안) 검토회의 3일전] 검증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내용은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 내용 및 개선효과에 대한 적정성(오차율 등을 통한 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을 제시

○ 검증내용은 설계(기술제안)검토회의 이전에 온라인 턴키마당에 등록

○ 검증기관은 설계(기술제안) 검토회의 시, 검증결과를 심의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참관하여 검증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음

○ 심의위원 판단에 의해, 필요시 심의위원 공통질문 사항에 검증기관의 질의를 포함하여 질문 가능

## [전문분야 검증기관 운영방안 (예시)]

### 1. 시행배경

○ 에너지,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개선효과의 타당성을 심의기간 내에 검증하기 힘들며, 실제 시뮬레이션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제안된 개선효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심의를 저해

○ 따라서, 심의요청 전, 필요시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에너지, 생애주기비용 등의 제안내용 및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검증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에너지 및 VE/LCC 관련 전문기관 등을 대상)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설계(기술제안) 검토회의 시 심의위원에게 정보(검증결과)를 공유하고자 함

### 2. 전문분야별 검증기관 주요 운영방안

#### 2-1 공통사항

<검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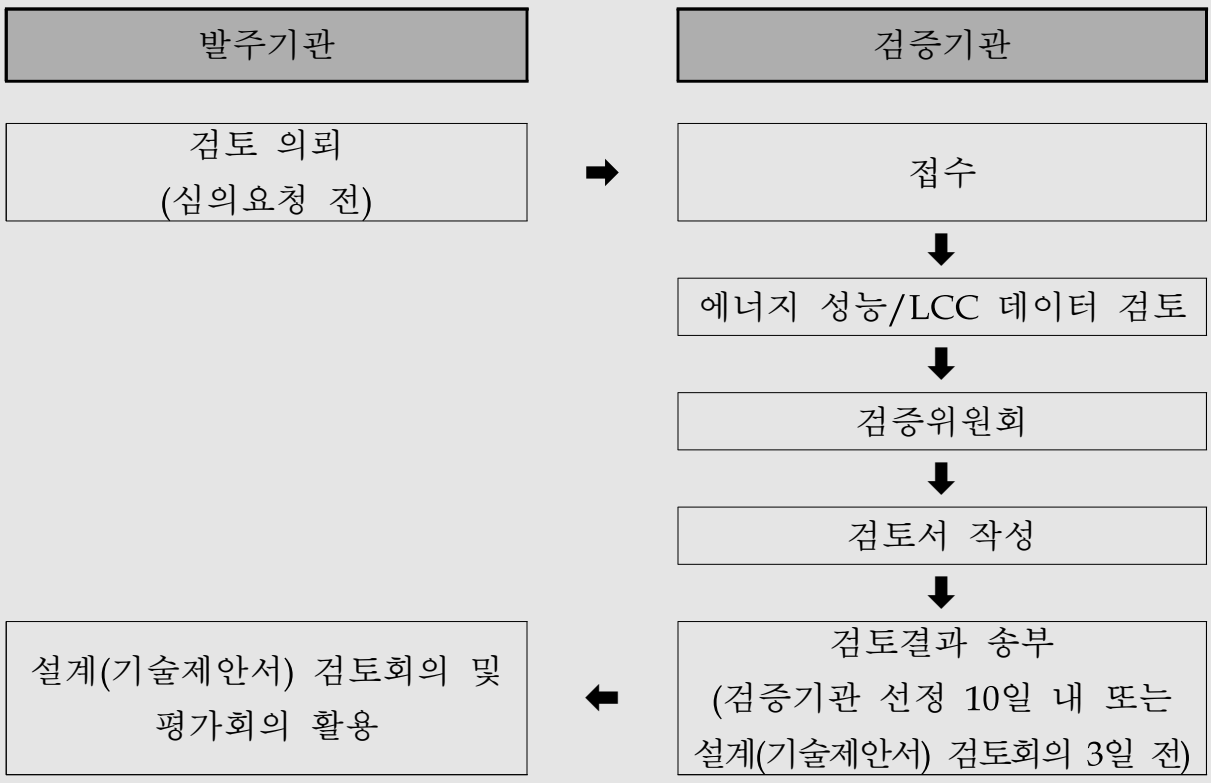

**<검증 수수료>**

○ 검증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가업체 수와 관계없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검증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산정하되, 추정가격의 0.05% 이내(에너지, LCC 포함)에서 책정

**<검토기간>**

○ 검증기관 선정 이후, 10일 이내[최대 설계(기술제안) 검토회의 3일전] 검증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

**<검토 전제조건>**

○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는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기술제안 도서를 기반으로 하되, 시뮬레이션 및 분석 데이터의 누락이 있을 경우, 추가로 입찰참가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

**<검토결과 제안방법>**

○ 기술제안의 내용 대비 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의 오차율로 표현하여 결과값 제시 및 각 항목별 오류 및 검토내용 작성

○ 검토내용은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검토내용에 대한 적정성(오차율 등을 통한 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을 제시

**<검토결과 확인 및 송부>**

○ 검증위원회를 통한 최종 검토(에너지전문가, LCC전문가 3인 이상의 위원회 구성)

- 오류 최종 확정
- 검토 항목 및 결과보고서 검토

○ 검토보고서 송부

## 2-2 에너지

**<검토방법 및 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은 ISO-13790 등의 국제규격에 맞춰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신재생 에너지 소요량 등을 산정하며, 이에 따른 기상데이터 및 용도 프로필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규정 등 준용

○ 기술제안도서 중 에너지 관련 제출서류와 검토 시트 등을 토대로 입력항목 및 기술제안 도서의 제안값 오류 검토

○ '건축물 등의 에너지 비용'은 분석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 측면의 검토를 위하여 입찰사에서 제출한 ECO2 프로그램의 입력파일의 입력값 등 오류 검토

○ 명확한 오류 수정 후 에너지 시뮬레이션 재실시

○ 검토보고서 작성

## 2-3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검토방법 및 내용>**

○ 분석기준 및 방법, 가정사항 적정성 (정성)

- 분석기준 적정성(내용연수, 할인율, 에너지비, 가정사항 등)
- 분석방법의 적정성(민감도, 확률분석 등)
- 수선/교체주기 산정의 적정성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제안서 적정성 (정량)

- RFP 제안양식 반영 여부
- 작성내용의 타당성

○ 분석결과 타당성 (정량)

- 기술제안 LCC 분석의 적정성
  - · 원안 또는 기술제안 중 초기공사비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제안
  - · 초기공사비 절감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술제안
  - · LCC 절감액이 1억원 이상인 기술제안
  - · 신재생,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제안
- 건축물 LCC 분석의 적정성
- 정량적 개선효과 및 데이터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에너지 성능평가 검토 결과보고 (예시)

| 건축물명 | 000 건물 | | | 제안서 접수번호 | |
|---|---|---|---|---|---|
| 발주기관 | | 요청일자 | | 검토기관 | |

| 구분 | 항목 | 정보관리 | 주요 검토의견 |
|---|---|---|---|
| 건축 | 입력존 | | [붙임 활용 가능] |
| | 입력면 | | 〃 |
| | 열관류율 | | 〃 |
| | 유사 전산실 검토 (24시간 존) | | 〃 |
| | 기타 | | 〃 |
| 난방 | 난방기기 | | 〃 |
| | 난방공급시스템 | | 〃 |
| | 난방분배시스템 | | 〃 |
| | 기타 | | 〃 |
| 냉방 | 공조처리 | | 〃 |
| | 냉방기기 | | 〃 |
| | 냉방분배시스템 | | 〃 |
| | 기타 | | 〃 |
| 신재생 및 열병합 | 신재생 | | 〃 |
| | 열병합 | | 〃 |
| | 기타 | | 〃 |

| 1차에너지 소요량 | 기술제안 내용 | kWh/㎡.a | 검증결과 오차율 | ±10% 이내 | (√ 체크하기) |
|---|---|---|---|---|---|
| | | | | ±15% 이내 | |
| | | | | ±20% 이내 | |
| | | | | ±20% 초과 | |

**※ 위 결과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 사업의 에너지 성능평가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검토기관의 장 (인)

OO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생애주기비용(LCC) 검토 결과보고 요약 (예시)

| 건축물명 | 000 건물 | | | 제안서 접수번호 | |
|---|---|---|---|---|---|
| 발주기관 | | 요청일자 | | 검토기관 | |

■ 주요 오류 및 왜곡사항

| 업 체 | 주요 오류 및 왜곡사항 |
|---|---|
| A사 | |
| B사 | |
| C사 | |

■ 검토의견

| 구분 | 주요 검토의견 | A사 | B사 | C사 |
|---|---|---|---|---|
| 분석기준 및 방법, 가정사항 적정성 | · A사는 .....<br>· B사는 .....<br>· C사는 ..... | 적격 | 조건부 | 부적격 |
| 생애주기 비용개선방안 제안서 적정성 | · A사는 .....<br>· B사는 .....<br>· C사는 ..... | | | |
| 분석결과 타당성 | · A사는 .....<br>· B사는 .....<br>· C사는 ..... | | | |

[붙임] 생애주기용(LCC)업체별 분석결과 (예시)

이와 같이 ○○○ 사업의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검토기관의 장 (인)

OO 발주기관의 장 귀하

# [붙임] 생애주기비용(LCC) 업체별 분석결과 (예시)

| 업 체 명 | |
|---|---|

■ 분석기준 및 방법, 가정사항 적정성

| 항목 | 세부항목 | 검토의견 | 적격 | 조건부 | 부적격 |
|---|---|---|---|---|---|
| 분석기준의 적정성 | 원안공사비 | [붙임 활용 가능] | √ | | |
| | 내용연수 | | | | |
| | 할인율 | | | | |
| | 에너지비 | | | | |
| | 비용항목 | | | | |
| | 가정사항 | | | | |
| 분석방법의 적정성 | 분석방법론 | | | | |
| | 민감도분석 | | | | |
| 수선/교체주기 산정의 적정성 | 규정(주택법 등) | | | | |
| | 입찰사 제안 | | | | |

■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제안서 적정성

| 항목 | 세부항목 | 검토의견 | 적격 | 조건부 | 부적격 |
|---|---|---|---|---|---|
| RFP 제안양식 반영여부 | 별지 3 | [붙임 활용 가능] | √ | | |
| | 별지 6 | | | | |
| | 별지 7 | | | | |
| | 별지 8~10 | | | | |
| | 별지 11 | | | | |
| 제안서 상의 데이터 일치성 | | | | | |

■ 분석결과의 타당성

| 항목 | 세부항목 | 주요 검토의견 | 적격 (±5%) | 조건부 (±10%) | 부적격 (±10% 초과) |
|---|---|---|---|---|---|
| 기술제안 LCC 분석의 적정성 | 건축 1 | [붙임 활용 가능] | √ | | |
| | … | | | | |
| | 제안번호 | | | | |
| 건축물 LCC 분석의 적정성 | 별지 8~10 | | | | |

■ 종합의견

| |
|---|
| |

## 5. 온라인 턴키 마당

### 필 요 성

○ 설계심의 자료 DB화, 단계별 자료등록 심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표준화, 자료 정보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필요

- 음성적 로비차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 설계설명 기회를 참여업체들에게 보장
- 설계심의 자료를 각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에서 별도 관리하여 자료확인 및 심의제도 운영·관리에 어려움

### 운영 체계

○ 현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턴키마당"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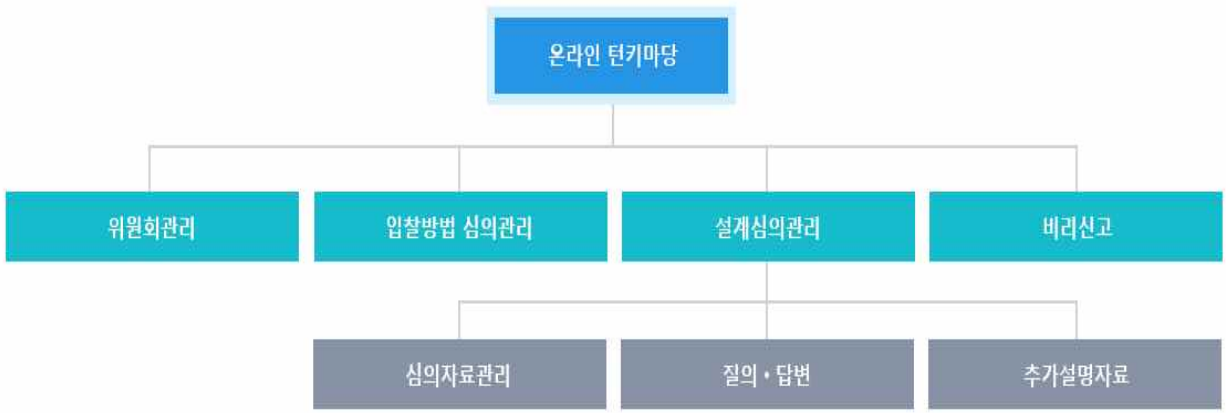


○ 위원회관리, 입찰자료, 심의자료 등록·관리를 통한 자료 공유

○ 음성적 로비차단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 설계설명 기회를 업체들에게 보장

○ 설계심의 관련자료를 각 발주기관 및 심의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자료의 확인 및 심의제도 운영·관리에 어려움 발생

## 세부 운영방안

○ 위원회 관리

- 전국 심의기관(27개)의 위원명단, 심의실적 등 위원회 현황 등록

○ 입찰방법 심의관리

- 심의요청서, 심의결과 및 위원별 의견서 등 자료등록

○ 설계심의관리

(심의자료 관리) 평가위원 명단, 입찰서류 및 심의단계별 생성자료 등록

(질의・응답) 심의위원이 업체에 설계내용 확인 및 자료요구

(추가설계설명) 입찰업체에서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싶은 설계내용 (장점, 타사와의 차별점 등)에 대한 자료를 등록

○ 비리신고

- 사전접촉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사실 등록·신고

## 시스템 접속방법

○ 접속방법 : 건설CALS포탈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https://www.calspia.go.kr/portal/)

○ 로그인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6. 채점 및 평가사유서 작성방법

## 채점방법

○ 평가 당일 배포한 “평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각 심의안건별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채점방법에 의함

○ 각 위원별로 입찰참여업체 간 순위에 따른 차등 채점(동점 금지)

## 평가사유서 작성 방법

○ 각 입찰참여업체 간 점수 차이에 대한 근거 적시

○ 평가항목별로 입찰참여업체 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

○ 설계(기술제안)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 7. 평가 예시(채점 및 평가사유서)

## 입찰안내서 채점기준 예시

○ 입찰안내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1.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 심의위원별로 평가서의 각 항목마다 해당 배점의 10%씩 차등 평가 하고 그 점수를 집계한다. (1차 평가)
2. 해당 전문 분야의 심의위원별 합계 점수(1차 평가 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등 점수만 인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점수 순위별 1등(최고)점수에서 해당 전문 분야 배점의 10%씩 강제 차등 하는 상대평가로 한다.(2차 평가)
3. 해당 전문 분야별 심의위원의 점수(2차 평가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해당 전문 분야 평가 점수로 한다.
4. 각 전문 분야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는 설계 평가 점수가 되고 발주기관의 감점을 고려한 점수가 입찰 참가 업체별 최종 설계 평가 점수가 된다.
5. 항목별 설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점수(채점) 예시

○ 전문 분야 : 도로(40점) ※ 3개사 참여 경우

| 평 가 항 목 | 배점 | A사 | B사 | C사 | 차등폭 | 비 고 |
|---|---|---|---|---|---|---|
| 가. 도로노선 및 종단선형 | 7 | 6.2 | 5.5 | 4.8 | 0.7 | 항목별 차등 평가 (10%) |
| 나. 교량 상하부 구조의 적정성 | 5 | 3.8 | 4.3 | 3.3 | 0.5 | |
| 다. 교량 기초의 적정성 | 10 | 8.5 | 9.5 | 7.5 | 1.0 | |
| 라. 시공계획의 적정성 | 3 | 2.3 | 2.6 | 2.0 | 0.3 | |
| 마. 신기술, 신공법 적용 및 경제성 | 15 | 14.4 | 12.9 | 11.4 | 1.5 | |
|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합계 | 40 | 35.2 | 34.8 | 29.0 | | |
| 전문 분야 상대평가 점수 | 40 | 35.2 | 31.2 | 27.2 | 4.0 | 차등평가 |

※ 분야별 차등 평가 폭 : 40점(전문분야 점수) × 10% = 4.0점

| | | | |
|---|---|---|---|
| 1위 : | A사(최고점수 업체) | | 35.2점 |
| 2위 : | B사 | 35.2 - 4.0 = | 31.2점 |
| 3위 : | C사 | 31.2 - 4.0 = | 27.2점 |

✔ 심의위원은 아래 사항의 관계 서류와 평가회의 질문 및 답변 내용 등을 참고하여 설계(기술제안) 점수를 채점

· 발주청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 검토서
· 소위원회 질문 사항 및 입찰참여업체 간 질문 사항 및 답변
· 평가회의(소위원 및 입찰참여업체 간의 질의·답변)
· 입찰참여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
· 전문 분야 소위원간 토론회 실시 결과
· 기타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 전문분야 평가사유서 예시

| 도로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사유서 |
|---|
| 1. 도로노선부분<br>- A사는 ---------- 등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적 노선계획을 수립 하였으므로 타사의 계획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며,<br>- B사는--------<br><br>2. 종단선형부분<br><br>□ 종합평가 의견<br>- A사는 ----------보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였고,<br>- B사는 ----------사유로 2위로 평가하고,<br>- C사는 ----------사유로 3위로 평가하였음.<br><br>심의위원 : ○ ○ ○ 서명 |

✔ 심의위원은 설계 채점과 더불어 평가사유서를 작성 제출.

·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은 평가 항목별로 업체 간 점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설계(기술제안서)의 평가사유서는 각 과제별로 작성

## 입찰참여업체별 종합 평가 점수 산정 예시

### 업체별 평가 점수 총괄 집계표(예시)

| 전 문 분 야 별 | 배 점 | 0 0 0 공사 | | | 비 고 |
|---|---|---|---|---|---|
| | | A사 | B사 | C사 | |
| 도로·교통 | 40.0 | 35.2 | 31.2 | 27.2 | |
| 토목시공 | 15.0 | 14.0 | 11.0 | 12.5 | |
| 토목구조 | 30.0 | 25.0 | 28.0 | 22.0 | |
| 토질·기초 | 25.0 | 21.0 | 23.5 | 16.0 | |
| 계 | 100.0 | 95.2 | 93.7 | 77.7 | |
| 감 점 | | 0 | 0 | 1.0 | |
| 종합 평가 점수 | 100.0 | 95.2 | 93.7 | 77.7 | |
| 순 위 | | 1 | 2 | 3 | |

○ 순위 : ① A사(95.2점), ② B사(93.7점), ④ C사(77.7점)

✔ 심의 의결 : 설계(기술제안)적격(A~C사) ⇒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임

○ 감점의 적용은 감점 기준에 따라 채점한 점수의 합계를 「위원별·입찰참여업체별 총점 집계표」의 업체별 평균점수에서 최종 감점처리

## 평가 감점 적용 기준

### ① 관련 규정

○ 발주청은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비리 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설계심의 비리 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감점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 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입찰 도서 작성·제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의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입찰참여업체가 심의 관련 금지 행위를 위반한 감점에 대해서는 입찰 도서 작성·제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과는 별도로 감점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은 입찰참여업체가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입찰도서 작성·제출 관련 위반 사항 감점

○ 발주청장은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입찰 공고 또는 서면 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참조하여 운영 지침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 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 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설계도면 및 설명 자료는 색도 사용 금지
7. 투시도, 조감도 제출 금지
8. 애니메이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 자료 작성 금지
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 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작업 금지)
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입찰참여업체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추가 감점

○ 소속 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 부터 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 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 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 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 <심의 관련 비리에 대한 감점 기준>

○ 적용 기준

| 감점사항 | 감점 | 감점기간 |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3 | 당해심의 |
|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비리 감점 부과 방법

-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 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 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 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8. 참고 자료(설계 평가 배점표, 감점 기준 등)

# 설계 평가 배점표(예시)

(사례 : 도로공사(교량 및 터널 포함))

| 전문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
| 도로 | ◦ 사전 조사의 적정성<br>- 각종 현황 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br>-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br>◦ 설계 기준 적정성<br>◦ 도로 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br>-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후 접속 검토<br>-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br>◦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
| | ◦ 토공 설계 적정성<br>◦ 배수 시설 적정성<br>◦ 포장 설계 적정성<br>◦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 관리 용이성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br>◦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적정성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br>◦ 유지 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
| | ◦ 환경 친화적 도로 설계의 창의성 | |
| 구조 | ◦ 교량 계획 수립의 적정성<br>- 현지 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br>-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br>-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br>◦ 설계 기준 수립 및 세부 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교량 상부 형식의 시공 적정성<br>◦ 교량 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br>◦ 교량 가설 공법의 적정성<br>◦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br>- 교량 받침, 신축이음 장치, 난간, 방호책 등<br>◦ 교면 방수 및 교면 포장의 적정성 | |
| | ◦ 터널 굴착 공법의 적합성<br>◦ 발파 패턴의 적정성<br>◦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br>◦ 갱문 형식의 적정성 | |
| | ◦ 유지 관리 계획 및 계측 시설 계획의 적정성<br>◦ 계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br>◦ 공용중 안전 점검 계획의 적정성 | |
| | ◦ 구조계산 및 단면 설계의 적정성<br>◦ 설계 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br>◦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전문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
| 구조 | ◦ VE/LCC 기법 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 계획 평가<br>◦ 유지 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 교량 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토질 및 기초 | ◦ 조사 계획 및 조사 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br>◦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br>◦ 구조물 기초 지반(연약 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깍기 및 쌓기 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br>◦ 교량 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 공법 평가<br>◦ 유지 관리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토목 시공 | ◦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br>◦ 환경 관리 계획의 적정성<br>◦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공사 중 시공 계획의 적정성<br>-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의 적정성<br>- 공사 중 계측 계획의 적정성<br>◦ 건설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예상 민원 대처 방안의 적정성<br>◦ 공사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환경 | ◦ 환경 현황 조사의 적정성<br>◦ 환경 영향 저감 방안 수립의 적정성<br>◦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조경 | ◦ 조경 계획의 적정성<br>- 공간 구조의 효율성<br>- 친환경적인 식재 계획 | |
| 기계 설비 | ◦ 설비 시스템 선정<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전기 설비 | ◦ 수변전 설비 및 공급 방식의 적정성<br>◦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 관리의 용이성<br>◦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총 계 | | 100 |

✔ 작성 요령

1. 발주청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한다.
2. 평가 항목은 발주청이 공사의 종류,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설계도서(기술제안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작성
3.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한다.

# 설계(기술제안)평가 배점표(예시)

(사례 : 건축 공사)

| 전문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
| 건축계획 | ◦ 사전 조사 사항<br>◦ 단지 및 건물 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br>◦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 등<br>◦ 공개 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br>◦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 기법 반영 여부 | |
| 건축구조 | ◦ 구조계획<br>◦ 구조 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 설계 계획<br>◦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기타 | |
| 건축시공 | ◦ 공법 선정, 시공 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환경 관리 계획<br>◦ 자재 선정 계획은 시공 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 사항 포함)<br>◦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 등 | |
| 기계 설비 | ◦ 설비 시스템 선정<br>◦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br>◦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 관리<br>◦ 자재 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br>◦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기타 | |
| 전기 설비 | ◦ 설비 시스템 선정<br>◦ 전력, 조명, 약전, 소방<br>◦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 관리<br>◦ 자재 선정 계획, 주요 시방 내용<br>◦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기타 | |
| 통신 설비 | ◦ 설비 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br>◦ 주요 시방 내용<br>◦ 자재 선정 계획<br>◦ 신기술·신공법 적용 | |
| 토목 | ◦ 사전 조사 및 부지 조성 계획<br>◦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계획 | |
| 조경 | ◦ 조경 계획<br>◦ 식재 계획<br>◦ 조경 및 조형 시설물 계획<br>◦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기타 | |
| 기타 | ◦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br>◦ 건축 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 실적(정도) | |
| **총 계** | | 100 |

✔ 작성 요령

1. 발주청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한다.
2. 평가 항목은 발주청이 공사의 종류,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자가 설계도서(기술제안서)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작성
3.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한다.

# 설계(기술제안)평가 시 감점 기준(예시)

| 항 목 | 감 점 |
|---|---|
| 1. 입찰도서 제출 부수 부족<br>·발주청이 입찰 설계도서(기술제안서)를 접수할 때 사전 확인하여 부수가 부족할 시는 접수를 거절함(보완 조치) | 없음 |
| 2.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 쪽수 및 규격의 확인<br>·발주청이 입찰 설계도서(기술제안서)를 접수할 때 사전 확인하여 기준 쪽수가 많거나 규격이 맞지 않을 시는 접수를 거절함(보완 조치) | 없음 |
| 3. 설계도서(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br>·인쇄 방법 및 종이 재질 위반<br>·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위반<br>·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작업 금지)<br>·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br>·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br>·기타 입찰 설계도서 작성 지침 위반 | 1점<br>(1면당<br>0.05점) |
| 4.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 위배<br>* 토론회 직전까지 상대업체 등 불특정 인의 신고에 의하고 확인된 사항에 한함 | 2점 |
| 5. 설명자료 작성 금지 위배<br>* 토론회 직전까지 상대업체 등 불특정 인의 신고에 의하고 확인된 사항에 한함 | 2점 |
| 계 | 5점 |

✔ 발주청이 입찰 도서를 제출받을 때 확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되도록 보완 조치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도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예시)

◈ 입찰안내서 제시(요구)조건 위배 여부 검토 (회사명 :  )

| 구 분 | 기 준 | 입찰 서류 검토내용 | 적합 여부 | 부적합 사유 |
|---|---|---|---|---|
| 변경 불가 사항 | · 공구 시·종점의 평면 선형 (Tangent방향) | | | |
| | · 공구 시·종점의 종단 선형 및 계획고 | | | |
| | · 설계 기준 | | | |
| | · | | | |
| 공사 기간 | · 착공 일로부터 00월 | | | |
| 발주처 통보 내용 반영 | · | | | |
| | | | | |

◈ 보고서 및 설계도면(기술제안서) 기준 쪽수 및 규격 확인

| 입 찰 도 서 명 | 쪽 수 (Page이내) | | | 조치 내용 | 비 고 |
|---|---|---|---|---|---|
| | 기 준 | 제 출 | 초 과 | | |
| · 기본설계 보고서 | 100~150 | | | | A4규격 |
| · 설계도면 | 100 | | | | A3 〃 |
| · 토질 보고서 | 100 | | | | A4 〃 |
| · 구조계산서 | 300 | | | | A4 〃 |

✔ 쪽수 판단 세부 기준

1. 쪽의 크기를 측정하여 해당 규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 (예 : 1.23쪽 → 2쪽)하며, 절상 방법은 해당 쪽을 바로 절상함.(누계의 결과로 절상하지 않음)
2. 표지, 목차, 간지는 제한 쪽수에서 제외
3. 보고서에 A4를 초과하는 내용[공법·형식 등의 비교표(Table), 삽도 등] 수록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A4로 환산하여 적용
4. 도면 규격 : A3을 기준으로 하되, 초과 규격은 A3 규격으로 환산
5. 설계 보고서에 한하여 위치도, 노선 비교도 등 A4규격 초과 내용(제한 쪽수 미포함)을 10쪽(A4 기준)까지 허용하되, 용지 규격이 A4규격을 초과할 경우 A4규격으로 환산 적용하고, 환산 후 10쪽(A4 기준) 초과분은 입찰 도서 제한 쪽수(A4)로 적용 (보고서 용지는 일반 백상지를 사용)
6. 쪽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빈 쪽은 쪽수에서 제외하며, 쪽 표시는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경우와 쪽 표시는 없으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쪽수로 계상

◈ 색도 및 사진사용 위반 여부(예시)

| 입 찰 도 서 명 | 규격 | 색도 사용 위반 | | 비 고 |
|---|---|---|---|---|
| | | 쪽 수 | 위 반 내 용 | |
| · 기본설계 보고서 | A4 | | | |
| · 설계도면(축소도) | A3 | | | |
| · 구조·수리계산서 | A4 | | | |
| · 토질 조사 보고서 | A4 | | | |
| · 기타 | | | | |
| 계 | 쪽 | | ∴ 적용 감점 점 | |

✔ 감점 기준 : 1쪽당 0.05점 감점

✔ 색도 사용 위반 판단 세부 기준

1. 입찰 도서 색도 허용 기준
   - 위치도, 노선도
   - 지반 조사 보고서의 지질 평면도
   - 대안 설정 등 비교가 불가피한 노선(선로)도
2. 위반 사항(해당 규격 기준으로 환산하여 색도 허용 기준 위반 적용 감점)
   - 도면내 사진·조감도(천연색) 등의 삽입
   -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MAC작업)
   - 도면 또는 보고서에 투시도, 조감도 등의 삽입
3. 색도 허용기준 중 “대안설정 등 비교가 불가피한 노선(선로)도”라 함은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 대안별 비교가 불가피한 도로(철도)선형 노선도를 말하며, 설계 보고서, 설계 요약 보고서에 한하여 위치도, 노선도와 함께 허용
4. 간지는 단색의 칼라 사용 가능

# 입찰업체별 감점 총괄 집계표(예시)

| 공 구 | 업 체 | 제한 쪽수 초과 | 색도 사용 위반 | 계 | 비 고 |
|---|---|---|---|---|---|
| 제0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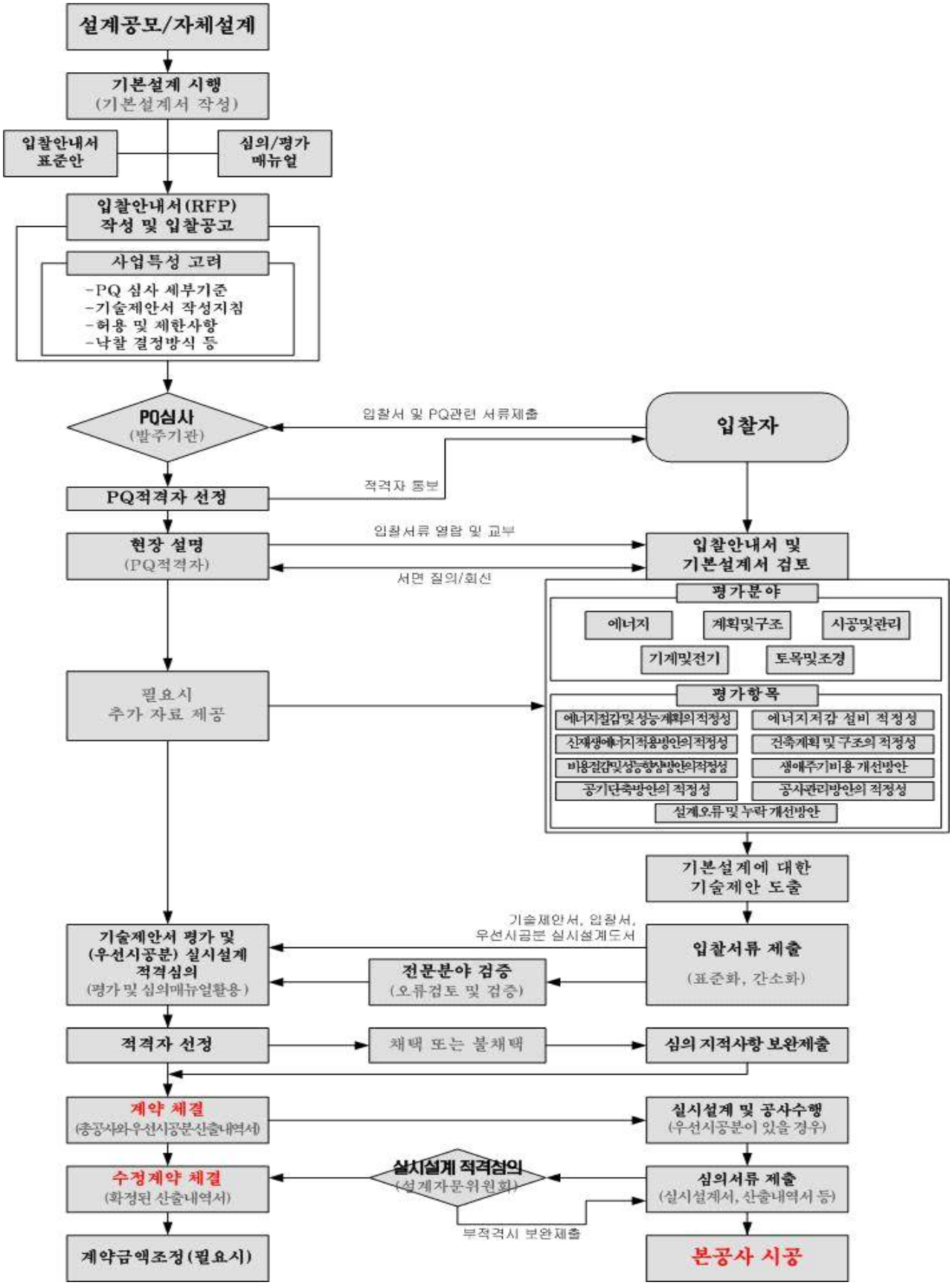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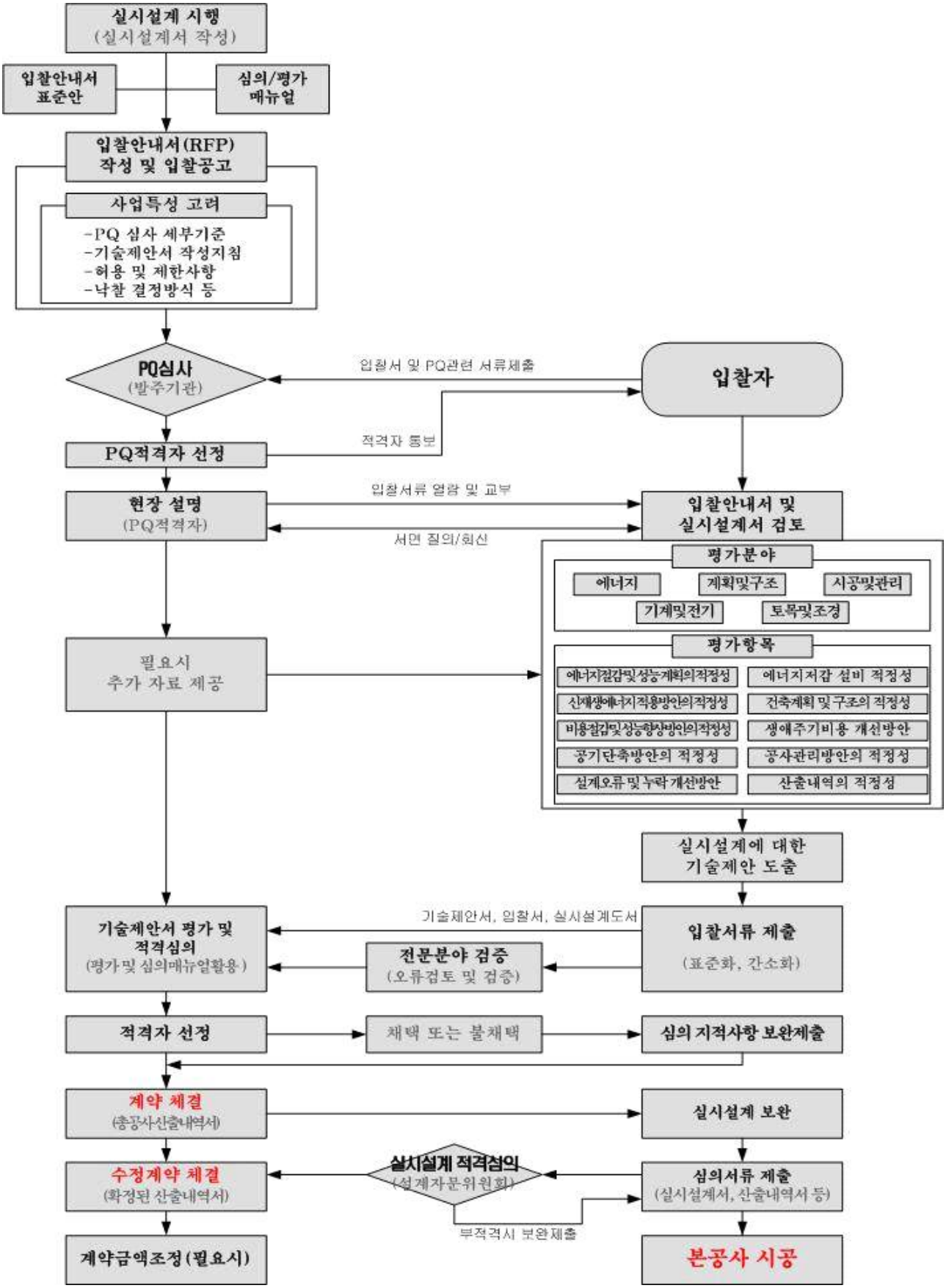

## 9.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 판단 방법(예시)

###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 목적 및 개념

○ **목적** : 일괄·대안 등의 설계 심의에 있어 우수한 설계 제출자가 설계 적격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의 일반적 판단 방법을 제시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괄·대안 등의 심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

○ **개념** :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 품질,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서 시공비가 낮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유지 관리를 포함한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되는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해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한 설계

### 심의평가에서의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방법(예시)

○ 시방 기준, 품질, 성능 및 안전 등의 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히, 발주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최소 요구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이를 만족하는 설계

○ 측량 및 지반 조사 등 기초 조사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이를 잘 반영한 설계

○ 민원 해소나 지역 발전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된 설계

○ 시설물의 형식이나 공법이 지형 조건이나,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반영된 친환경적 설계

○ 시공중 또는 장래 이용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는 설계

○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을 적용하여 시공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설계

○ 완공 후 운영 단계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설계

# 기술형입찰 실시설계 적격여부 심의

# 기술형입찰 실시설계 적격여부 심의

## 1. 근거법령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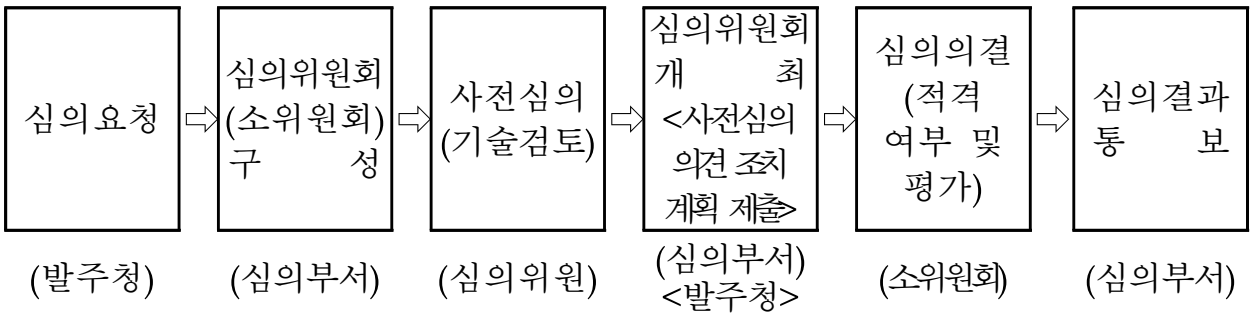


## 2. 세부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1 심의요청 : 발주청 → 심의부서

○ 발주청 : 실시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서를 심의 요청

✔ 기본설계(기술제안) 적격 심의 시 제시된 조건 사항을 반영한 실시설계도서 작성

### 2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기본설계(기술제안) 적격평가 심의를 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으로 구성, 부득이할 경우 동일분야 설계심의분과위원 중에서 선정

### 3 사전심의 : 10일 이내

○ 심의위원 : 사전심의 의견서(기술 검토)

✔ 기본설계(기술제안) 심의 시 반영된 신기술, 주요 공법 비교, 심의 시 지적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등 검토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사전심의

○ 발주청 : 설계(기술제안) 검토서 및 조치 계획서 작성

✔ 기본설계(기술제안) 심의 시 반영된 신기술, 주요 공법 비교, 심의 시 지적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등 검토 작성, 사전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작성

## 4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심의위원, 발주청, 실시설계 적격 업체

○ 개회 전 준비 사항

- 실시설계 적격업체 : 전문분야 기술인 등록 및 성실답변서약서 작성
- 준비사항 : 제안설명 PPT, 실시설계도서, 사전심의의견(기술검토)에 대한 조치 계획

○ 주요사항

- 전문분야 위원 1인 이상 참석과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실시설계 적격업체의 출석으로 개회
- 심의위원 : 실시설계 적격업체에 설계 내용 질의·응답 사전 심의 시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조치계획의 수용여부 결정), 보충·추가 질의, 심의위원 전문분야 토론, 심의 의견서 및 설계 평가 등
- 발주청 : 제안설명 등
- 실시설계 적격업체 : 설계설명, 심의위원 질의·답변

## 5 심의의결 : 설계적격, 설계부적격으로 의결

○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설계

○ **설계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이거나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낙찰자 결정 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 6 심의결과 통보 : 심의부서 → 발주청

○ 심의부서 : 심의의결서, 심의조건 사항(사전심의 및 심의 시 제시된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발주청에 통보

✔ 회의록 작성 및 심의위원 심의 수당 지급

○ 발주청 : 착공 전까지 심의 조건사항에 대해 심의위원의 개별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심의부서에 제출

#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 심의

# 실시설계 및 설계변경 심의

## 1. 근거법령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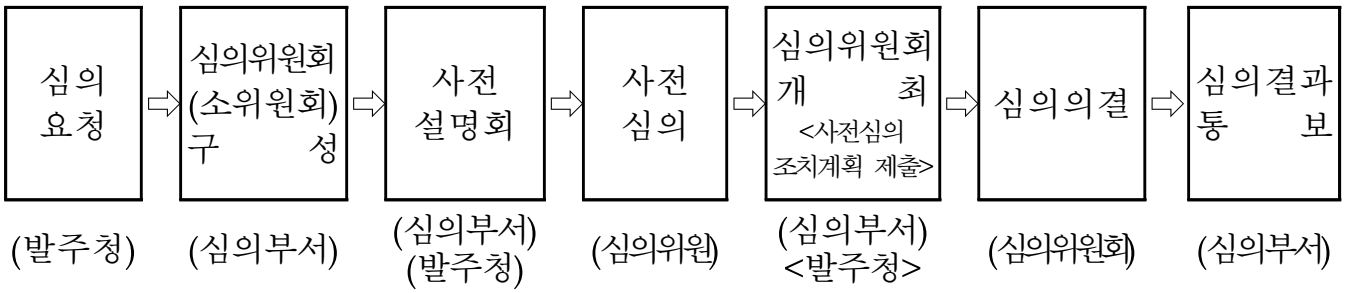


## 2. 세부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

### 1 심의요청 : 발주청 → 심의부서

○ 발주청에서는 공사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심의 요청

✔ 요청시기 : 공사설계 - 공사설계 용역 준공 2개월 전(설계VE 완료 후)
설계변경 -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설계VE 완료 후)

※ 심의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2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249명 중에서 7~25명으로 소위원회 구성

✔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전문 분야 및 인원 구성(예시)

| 구 분 | 계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토목시공 | 기계/금속 | 조 경 |
|---|---|---|---|---|---|---|
| 인 원 | 12 | 2 | 3 | 3 | 2 | 2 |

## 3 사전 심의

○ 사전심의 기간(공사비 규모에 따라 결정)

- 시설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150억 원 미만 : 5일 이내
- 시설 공사금액 150억 원 200억 원 미만 : 7일 이내
- 시설 공사금액 200억 원 이상 : 10일 이내

○ 심의위원 : 공사설계(변경)도서를 검토하여 심의의견 작성

○ 심의부서 : 사전심의 시 제시된 심의위원 의견을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 : 심의위원 사전 심의의견을 검토 후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4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소위원회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발 주 청 : 사업 현황 및 공사설계(변경) 내용을 설명(5급 공무원 이상)

○ 심의위원 : 적정한 공사설계(변경)를 확정하기 위해 발주청 및 설계용역 기술인과 질의·응답 및 심의위원 간 토의

## 5 심의 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의결 :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의결

-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6 심의결과 통보 : 심의부서 → 발주청

○ 심의부서 : 심의의결, 심의 조건사항(사전심의 및 심의 시 제시된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을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 : 착공 전까지 심의 조건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개별 확인을 받은 후 수정·보완된 공사설계(변경)도서를 심의부서에 제출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심의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심의

## 1. 근거법령 및 심의절차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심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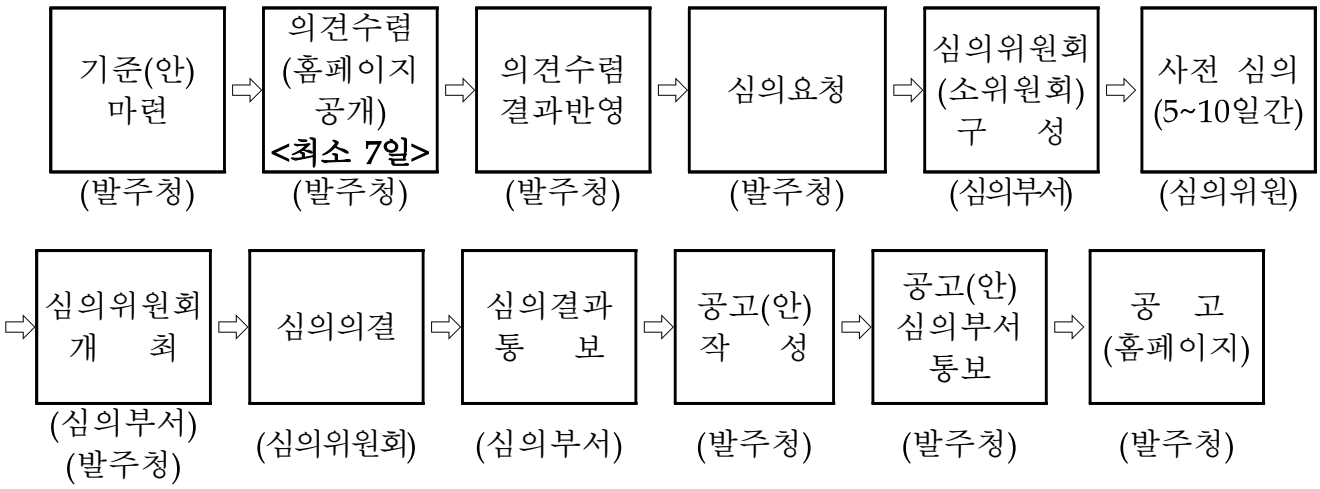


## 2. 세부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1 심의요청 : 발주청 → 심의부서

○ 발주청은 기준(안) 마련 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요청

✔ 공고된 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이고 경미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이행 후 심의 요청

✔ 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심의 생략 가능

## 2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249명 중 7~25명 구성

## 3 사전심의

○ 사전심의 기간 : 5 ~ 10일 이내

○ 심의위원 : 기준(안)을 검토하여 심의 의견 작성

○ 심의부서 : 사전 심의 시 제시된 심의위원 의견에 대한 안건별 심의 자료 작성

## 4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발주청 : 제안 설명

○ 심의위원 : 발주청과 질의·응답을 통한 각 안건별 심의 의결

- 과도한 경력 및 실적 제한 금지
- PQ평가의 공정성 확보, 입찰 부담 완화, 변별력 강화 등

## 5 심의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별 의결

○ 심의 의결 :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로 의결

- 원안 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조건부 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6 심의결과 통보 : 심의부서 → 발주청

○ 심의 부서 : 심의 의결 사항을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 : 공고 전까지 심의 의결 사항이 반영된 기준(안)을 심의 부서 제출 후 공고 최종 확인

## 3. 용역 규모별 평가 적용 기준

### 일반사항

❍ PQ(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 입찰 전에 미리 건설기술용역 수행능력등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SOQ(기술인평가 Statement of Qualification)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 수행실적 ·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

❍ TP(기술제안평가 Technical Proposal)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 수행실적 ·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

### 결정기준

❍ 『**금액기준**』과 『**난이도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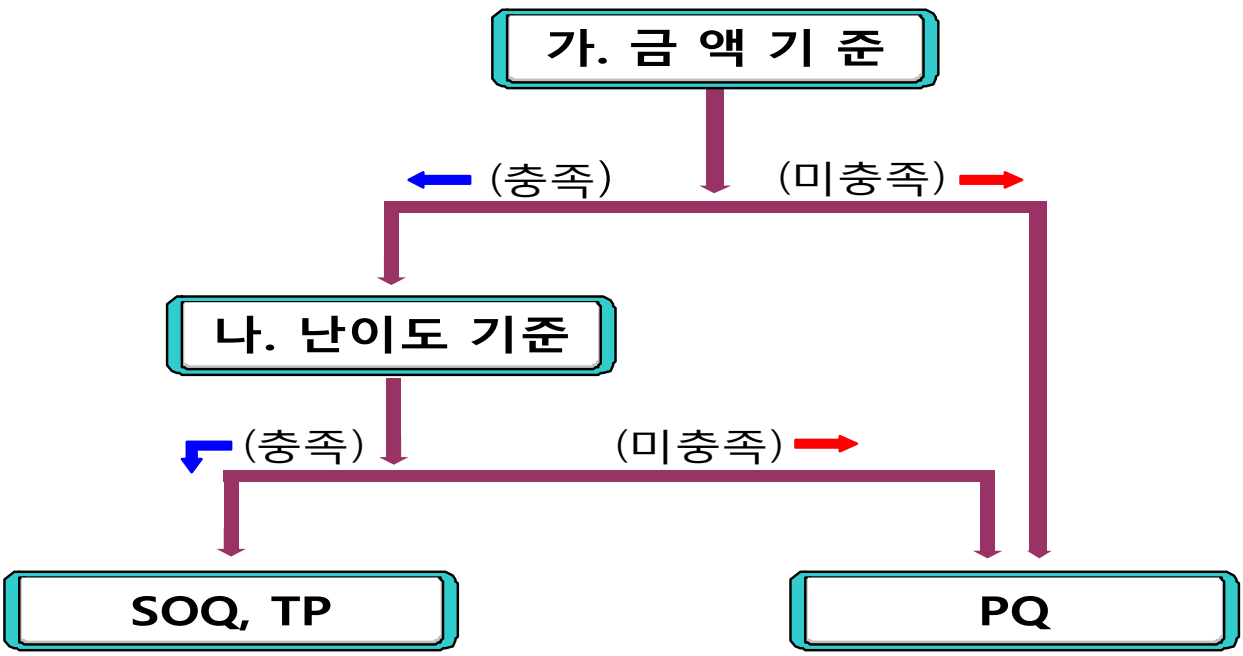

## ○ 용역금액 기준

| 구 분 | 용 역 비 | 평가방법 | 비 고 |
|---|---|---|---|
| 기본계획<br>기본설계 | 2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PQ | 건축설계<br>제외 |
| | 10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PQ + 기술인평가(SOQ) | |
| | 15억 원 이상 | PQ + 기술제안서평가(TP) | |
| 실시설계 | 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PQ | 건축설계<br>제외 |
| | 15억 원 이상 ~ 25억 원 미만 | PQ + 기술인평가(SOQ) | |
| | 25억 원 이상 | PQ + 기술제안서평가(TP) | |
| 건설사업관리 | 2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PQ | 건축<br>건설사업관리<br>포함 |
| | 20억 원 이상 | PQ + 기술인평가(SOQ)<br>PQ + 기술제안서평가(TP) | |
| 정밀점검<br>또는<br>정밀안전진단 | 1억 원 ~ 2억 원 미만 | PQ | 시 설 물 의<br>안전관리에<br>관한특별법 |
| | 2억 원 이상 | PQ + 기술인평가(SOQ)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 ○ 용역난이도 기준

-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청에서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SOQ, TP 난이도 대상 시설물(예시)

| 전문분야 | 시설물별 난이도 대상기준 |
|---|---|
| 도 로 | ①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경간장 100m 이상 특수교량<br>② 3km 이상 해저 또는 하저터널<br>③ 도시부 장대지하도로(500m 이상)<br>④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br>⑤ 출입시설(완전입체교차) 신설, 확장 개량 설계 용역 및 공용 중인 기존 교량(경간장 100m 이상)의 전면 개량 설계 용역<br>⑥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 환경보호·보전지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으로 지정된 지역 및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 수자원 | ① 댐(총저수량 1천만톤 이상)<br>② 배수갑문(2,000㎥/sec 이상) |
| 철 도 | ① 장대교(연장 400m 이상, 경간장 70m 이상) 및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br>② 철도차량기지<br>③ 일반터널(3km 이상 터널), 해저 또는 하저터널<br>④ 도심구간<br>⑤ 자연재해위험지구(산사태, 홍수 등)로 지정된 구역, 환경보호·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국립공원, 수변구역, 백두대간 등), 문화재,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통과가 예상되는 경우 |
| 공 항 | ①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
| 플랜트 | ①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처리시설<br>②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br>③ 가스공급시설<br>④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 건 축 | 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br>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br>③ 다중이용건축물<br>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
| 기 타 | ① 하저터널<br>② 첨단교통체계 시설<br>③ 설계 예상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계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br>④ 기타 특별한 기술력이 요구되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공사의 설계용역 |

## ○ 설계용역 평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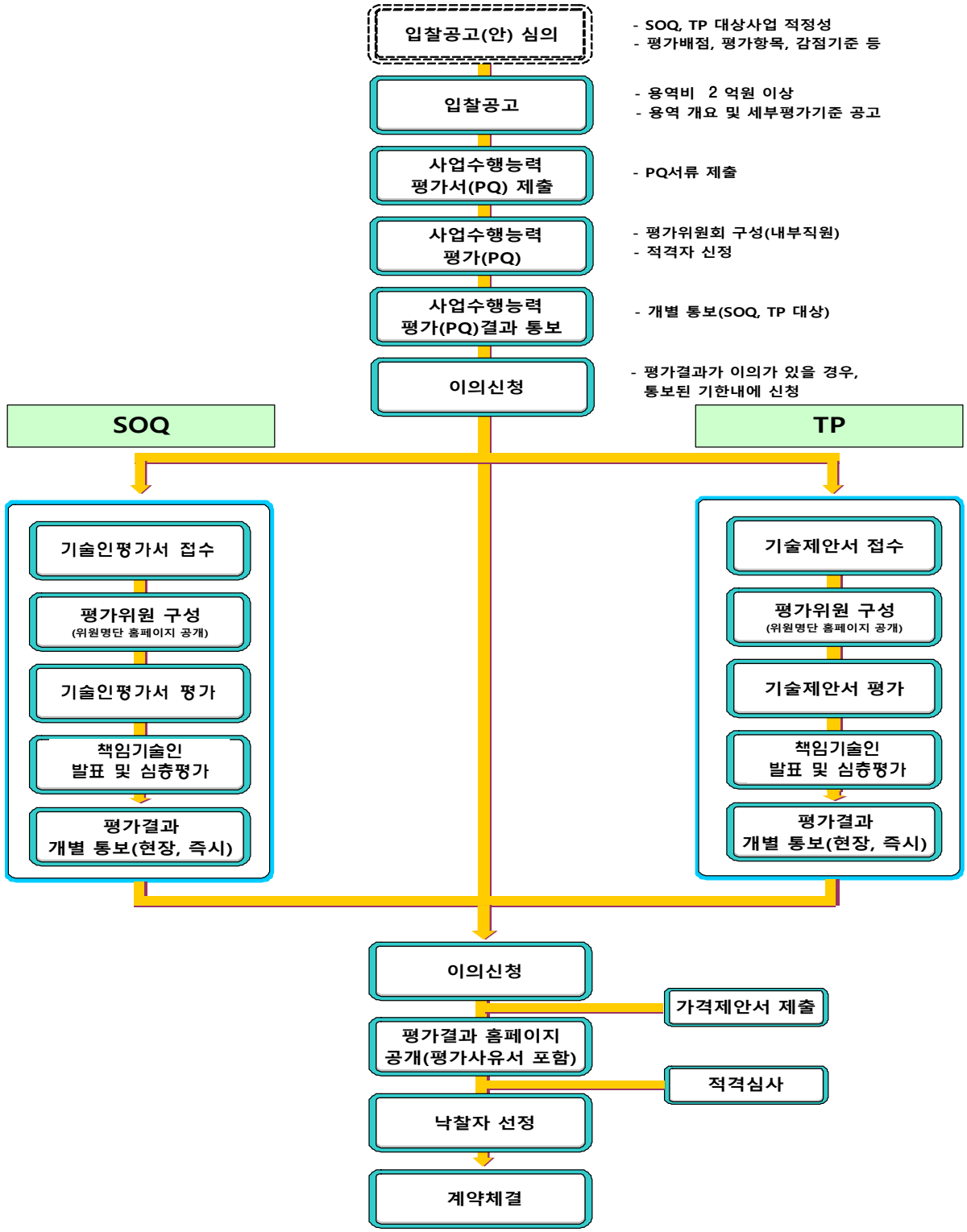


※ 발주청은 입찰공고 전에 SOQ, TP 대상용역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자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계획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계획

## 1. 기본방향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용으로 건전한 심의 문화 조성
-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위원대상 업체로비 사전 차단
- 전문분야별 심도있는 기술심의로 최고의 내실있는 설계확보 및 기술 우위의 변별력 확보

## 2.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계획

○ **(임무)** 우리 도 또는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일괄·대안 입찰, 기술제안(실시설계, 기본설계)입찰 공사에 대한 설계(기술제안) 심의

○ **(구성)** 지방건설기술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도 소속 공무원 과반수)

○ **(운영)** 소위원회는 전문분야 2명 이상, 10 ~ 20명 범위 내에서 구성, 소위원회는 1/2 이상 소위원의 출석으로 개회

- 평가대상 전문분야 배점 비중(입찰안내서)을 고려하여 구성
- 심의 20일 전까지 심의일정을 해당분야 소위원에게 통보

### 설계심의 내실화 계획

○ 심의 요청 시 설계심의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전문분야 소위원회 구성, 심의진행 공개설명회, 현장답사 계획 및 기술검토·심의 평가 계획 등

○ 평가 항목 및 배점 검토

- 운영규정 및 평가메뉴얼에 평가항목 및 방법, 배점 등에 대한 일반사항 제시
-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충분한 사전 협의 후 세부사항 확정

○ 전문분야 평가항목의 구체화

- 발주청 해당 입찰안내서 작성 협의 시, 평가 소위원의 기술검토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 소위원에게 설계도서(기술제안) 입수 후 충분한 기일 동안(D-20일전 ~ 7일전) 전문분야를 면밀·상세하게 검토하도록 당부

○ “잘된 설계”, “효율적 설계” 우위의 평가 유도

- 화려한 외양과 과도한 규모를 제시하는 설계보다 내구성과 경제성에 기반을 둔 기술력을 확보한 설계에 비중
  ✔ 기능성,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감안한 LCC 개념을 도입한 효율적 설계(기술제안)에 대한 평가 우위 유도 등
- 소위원의 평가사유서 작성 시 업체별 차등 이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의 이의 제기에 대응
- 기술력 우위의 공정한 평가를 확립함으로서 로비가 배제된 경제적 기술력에 근거한 선의의 경쟁 유도

○ 기술적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 계발

- 당해 건설공사의 주된 전문분야는 2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시켜 기술적 변별력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 입찰참 업체의 설계(기술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 심의위원 간 설계(기술제안) 평가 토론회 실시 의무화
- 분야별 공종 중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 유도
- 평가 시행 후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 위원과 미참여 동일분야 공무원위원과의 모임을 통해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설계패턴 및 평가사례 전파

#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 관리계획

## 1. 기본방향

- 건전한 설계심의 분위기 조성 및 반부패·청렴 의식 고취
-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운영으로 위원회 위상 및 신뢰 제고

## 2. 윤리행동강령에 의한 위원 청렴 관리

- **분과위원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 수행**
  - ○ 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촉장 교부 및 청렴교육 병행 실시
  - ○ 강령의 교육·상담,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위반 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 이권 개입, 금전 차용 및 알선·청탁 등 행동강령 준수 여부 확인
  - ○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 실시 등

## 3. 소위원 선정 시 맞춤형 관리

- 소위원 명단 확정시 공개와 동시에 설계심의분과위원장 명의로 투명하고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한문 발송
- 공동설명회 시 소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에게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강조하고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등 징구
- 소위원 명단 및 입찰 등록 업체 현황을 감사관실에 통보하여 특별감찰 협조 및 입찰참여업체간 상호 감찰 유도

## 4. 감사관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 매건 심의 시 선정된 소위원 명단과 입찰참가업체 현황 및 심의 진행상황을 감사관실 조사담당에 통보하여 특별감찰 협조
- 국토교통부, 타 시도 설계 심의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정보교류 및 발전방안 토의

## 5. 윤리성 저해 시 대응방안

### 심의위원 등의 신고·상담을 위한 신고 전화 운영

- ❍ 건설지원과 : 기술심의담당부서(055 - 211 - 2922~5)
- ❍ 감사관실 : 조사담당부서(055 - 211 - 2171~9)

### 입찰참여업체의 심의위원 접촉 사례, 심의위원의 윤리행동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방안

- ❍ 입찰참여업체의 사전설명 금지 위배 등에 대해 평가 시 감점 조치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감점기준 적용)
- ❍ 금품·향응 제공 등 윤리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감사관실에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위원 해촉 등 조치
- ❍ 비위 행위 업체는 발주청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 조치

# 설계심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

## 1. 투명성 강화

- 심의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소수 정예로 구성하고 사전 명단공개
- 심의 내용과 위원별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업체 해명 요구 시 Debriefing(사후설명) 실시
- 설계평가 회의는 회의 장소 등 각 기관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관계자 참관, CCTV 영상 등 공개 여부 결정

## 2. 심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 설계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분과위원회 발주청 소속 직원 과반수 참여와 민간 심의위원 비리 발생 시 공무원 의제 처벌을 통해 심의위원 책임성 강화
- 평가의 전문성 강화와 충분한 설계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일 20일 이전에 소위원 선정 공개
- 심의위원의 설계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설명 및 답사를 시행하고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비리 감점 관련 업무처리

## 1. 입찰참여업체 감점 행위 시 감점 부과 기준

### 필요성

○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시 시공사와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

○ 이들 컨소시엄 중 일부업체에게 비리 등으로 인한 감점부과 시 컨소시엄 내 타 업체에 대한 감점부과 등 세부내용 규정 필요

### 감점 기준

(운영규정 별표10)

| 감점사항 | 감점 | 감점기간 |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3 | 당해심의 |
|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비리 감점 부과방법

○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 ○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 ○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 ○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 ○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감점 부과시기

- ○ 모든 감점의 부과시기는 총점차등으로 인한 순위 변동이 없도록 총점 차등 전에 적용한다.
- ○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 부과시기는 1심 판결 결과가 통보된 즉시 적용한다.
- ○ 심의위원 사전접촉 감점은 심의위원 접촉신고 확인 후 즉시 감점을 부과한다.

## 감점 적용방법

- ○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은 모두 적용한다.
- ○ 감점은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 감점 취소

- ○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 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 2. 감점 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

### 필요성

○ 부정·비리 등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속하고 공정한 후속 조치 이행 필요

### 주요 내용

○ 신고대상 : 심의와 관련된 모든 부정·비리 등 감점 행위

○ 적용기준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 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 신고접수 : 위원회

* 발주청에서 접수 시 심의기관에 통보하며, 타 위원회 관련 안건에 대한 접수 시 해당 위원회로 이송

○ 신고 방법 : 방문, 온라인 심의 시스템, 팩스 등

* 신고자가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할 경우 신고자 요청으로 직접 방문
* 비리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 불가

### 부정·비리 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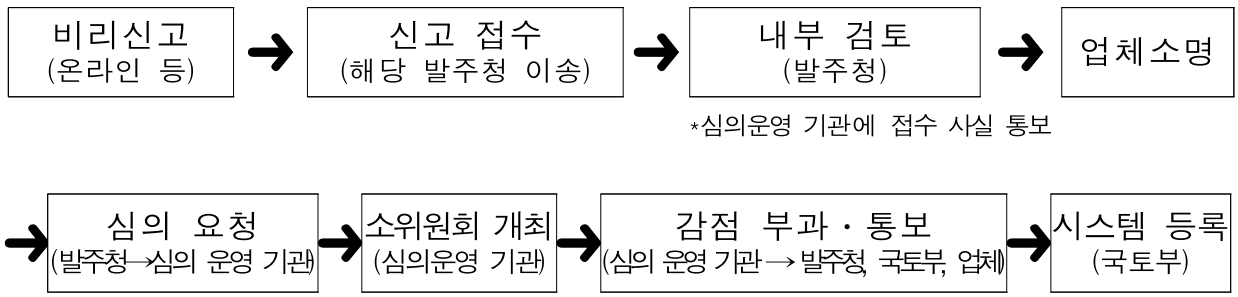


○ 발주청 : 비리신고 접수 및 사실 여부 확인(내부 검토), 업체 소명, 심의 운영 기관에 감점 부과를 위한 심의 요청

* 타 기관, 온라인 등으로 비리 내용 접수 시 해당 발주청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발주청에서는 비리신고 접수사실을 해당안건 심의 운영 기관에 통보**

* 내부검토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보완 필요 여부 검토

· 익명 신고 및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실명 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신고서 보완 요구 및 반려 조치

❍ 심의운영기관 : 감점 부과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상정

❍ 필요 시 신고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사 의뢰(담합 신고 등)

* 신고인의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보호하며, 신변 보호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의 부패·공익 신고 유도

* 비리 감점 부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 소위원장 :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

· 위　　원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6명

· 의결내용 : 감점 부과 여부 및 부과 기간 등

· 의결기준 :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의결 결과 동수일 경우 소위원장이 결정)

## 참고1 비리 감점 신고 시 처리 절차

심의위원, 업체, 국민 신고(온라인 턴키 마당 등)

⇓

**신고 접수**
(접수 : 발주청, 관리 : 심의 운영 기관)

⇓

**내부 검토**(발주청)
* 심의 운영 기관에 신고 접수 사실 통보

⇓

**업체에 신고 내용 통보**(발주청)
* 소명 기간 : 통보 일로부터 10일(필요시 1회 5일 연장 가능)

⇓

**심의 요청**
(발주청 → 심의 운영 기관)

⇓

**위원회 개최·의결**
(심의 운영 기관)

⇓

**감점 부과 및 의결 내용 통보, 시스템 등록**
(심의 운영 기관)

⇓

**신고 내용에 따라 차기 심의에 반영 등 후속 조치**
(심의 운영 기관, 발주청 등)

**참고2** 설계 심의 비리 감점 심의 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설계 심의 비리 감점 심의 요청서

| 의안 번호 | 제 호 |
|---|---|
| 구 분 | 설계 심의 비리 감점 심의 |

| 건 명 | |
|---|---|

| 심의요청기관 | |
|---|---|
| 제출연월일 | |

# 〈 건 명 〉

## 1. 사업 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총공사비 :

## 2. 추진 경위

○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실의 완료시까지 주요 일정 등 작성
○

## 3. 비리신고 내용

○ 신고 접수일 :
○ 신고 대상 :
○ 신고 내용 :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 사실 여부 확인 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등 조사 내용을 작성

○ 검토결과 : 비리 감점 대상 여부 및 부과 감점·감점 기간 작성

## 5. 기타 참고 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 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 실의 참여 업체 현황 및 점수 등 참고 사항

**참고3** **설계 심의 비리 감점 심의 의견 양식**

# 심 의 의 견 서

설계 심의 비리 감점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건명 | 심의 요청 기관 | 심의 대상 업체 | 비리신고 내용 | 감점 부과 | |
|---|---|---|---|---|---|
| | | |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 | | | | 10점(2년) | |

<심의 검토 의견>

20 . . .

심의위원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참고4** **설계 심의 비리 감점 부과 내용 통보 양식(개선안)**

## 설계 심의 비리 감점 부과 내용

| | | | | |
|---|---|---|---|---|
| 감점 대상 업체 | 업체명 | | 사업자번호 | |
| 업체 소명 기간 | ~ | | | |
| 감점 부과 심의 | 위원회 | | 심의 날짜 | |
| 비리 감점 내용 | 관련 심의안건명 | | 심의 기간 | |
| | < 내용 작성 > | | | |
| 부과 감점 | 점 | | | |
| 감점 관리 기간 | ~ | | | |

## 3. 심의 참여위원 용역 등 의뢰 신고 및 확인

### 필요성

○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낙찰업체(컨소시엄 전체)에서 심의 후 1년 이내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할 경우 심의기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함

○ 적용 기준

[비리 감점 기준(별표10)]

| 감점 사유 | 감점 | 감점 기간 |
|---|---|---|
| · 사전 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 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5 |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 심의계획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신고 방법을 입찰업체에 설명 및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비리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 접수 및 처리

## 주요내용

○ (사전신고) 낙찰업체에서는 해당 사전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위원이 속한 심의기관에 신고

* 신고방법(안)

· 신고대상 : 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용역, 연구, 자문 등

· 신고업체 : 낙찰업체(컨소시엄 구성업체 모두)

· 신고(접수)기관 : 심의위원 소속 위원회 운영기관

· 신고양식 : 붙임 양식 참조(온라인 턴키마당에 등재)

· 신고시기 : 용역 등 의뢰(계약)시

○ (신고관리) 사전 신고를 접수한 심의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을 중앙위에 보고하고, 중앙위에서는 설계 심의 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심의 시 위반 여부 확인) 평가회의시 입찰참여업체로 하여금 사전 신고 실적 및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내용을 제출토록 함

○ (감점신고) 사전 미신고 등 훈령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사항 신고 접수 시 “감점 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심의위원 용역 등 의뢰 사전 신고 양식]

# 용 역 등 의 뢰 사 전 신 고 서

| | | | | |
|---|---|---|---|---|
| 신 고 자 | 성 명<br>(업체명)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번호) | |
| | 전화번호 | | 직 업 | |
| | 주 소 | | | |
| 관련<br>심의 안건 | 안건명 | | | |
| | 심의기관 | | 심의 기간 | ~ |
| | 낙찰자<br>선정일 | | | |
| | 낙찰사<br>(컨소시엄) | | | |
| 의뢰대상<br>(심의위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 직 업 | |
| | 주 소 | | | |
| 사전 신고<br>내용 | 의뢰 내용<br>(용역명 등) | | | |
| | 의뢰 기간 | 0000.00.00~0000.00.00 | | |
| 비 고 | | | | |

위와 같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등 의뢰 계획을 사전에 신고합니다.

20 . . .

위 신고업체 대표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심의위원 용역 등 의뢰 사전 신고 위반 사항 신고 (업체용)]**

# 용역 등 의뢰 사전 신고 위반 사항 확인서

| | | | | |
|---|---|---|---|---|
| 업체명 | 위반 사항 유,무 (○표시) | 있음, 없음 | | |
| 위반 내용 | 관련 심의안건명 | | | |
| | 심의기관 | | 심의기간 | ~ |
| | 의뢰 대상 (심의위원) | |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 직 업 | |
| | 주 소 | | | |
| | 의뢰 내용 | | | |

* “위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위와 같이 심의위원에 대한 용역 등 의뢰 사전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위 신고 업체 대표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4. 감점사항 수집 및 종합 관리

### 필요성

○ 운영규정 개정으로 모든 심의기관의 감점 사항을 수집하여 종합 관리하기 위한 절차, 신고양식 등을 규정할 필요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5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감점내용) 심의위원 사전접촉,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사전 신고 없이 낙찰 후 1년 이내 심의위원에게 용역 등 의뢰, 기타 비리 행위 및 부정행위

* 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관 및 발주청(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공사·공단 등에 관련 내용 통보

### 주요내용

○ 감점 부과 및 통보 : 전국 심의기관

○ 감점 관리 절차

| 〈감점 통보〉 | → | 〈시스템 입력〉 | → | 〈심의 반영〉 |
|---|---|---|---|---|
| 감점 부과 내용<br>중앙위 신고(공문)<br>**(각 심의기관)** | | 감점 부과<br>심의 관리 시스템 입력<br>**(중앙위)** | | 시스템 등재 내용 확인<br>및 심의 시 반영<br>**(각 심의기관)** |

○ (감점통보) 모든 심의기관은 감점 부과 후 즉시 중앙위에 공문으로 감점 점수 및 기간 등을 통보

○ (시스템입력) 중앙위는 신고된 내용을 건설사업정보(건설CALS) 시스템의 '온라인 턴키마당'에 입력·관리

○ (심의반영) 모든 심의기관은 건설사업정보(건설CALS) 시스템의 '온라인 턴키마당'에 등재된 감점 내용을 심의에 반영토록 조치

X

# 기술심의 관련 서식

# 기술심의 관련 서식

## 1. 「입찰방법 심의」 관련 서식

### 심 의 의 견 서

- ’00년, 제00차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 심의안건 | | | | 심의요청 | |
| 발주기관 | | 공사비 | | 입찰예정 | |
| 공사개요 | | | | | |
| 심의대상 시설기준 | 내 용 | | | | |
| | 충족여부 | [ ]매우충족 (200%이상) | [ ]충족 | [ ]미달 | [ ]□매우미달 (50%미만) |
|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 | 공사종류 | [ ]국제행사 [ ]국책사업 [ ]수해복구 [ ]국가안보 [ ]기타 | | | |
|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 ]필요 | [ ]보통 | [ ]해당없음 |
| | 사유 | | | | |
| 고난도/고기술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 ]필요 | [ ]보통 | [ ]해당없음 |
| | 사유 | | | | |
| 신기술/신공법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 ]필요 | [ ]보통 | [ ]해당없음 |
| | 사유 | | | | |
|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 ]필요 | [ ]보통 | [ ]해당없음 |
| | 사유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 ]필요 | [ ]보통 | [ ]해당없음 |
| | 사유 | | | | |

| | | |
|---|---|---|
| 기타 검토사항<br>· 설계변경 빈번<br>· 보증책임불명확<br>· 자재공급자 일괄시행 필요<br>· 공사비 절감 | 필요성 정도 | [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 |
| | 사유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
|---|---|---|
| 【심의의결】 | 입찰방법 | [ ]요청안 [ ]요청안이 아닌 기타공사 [ ]재심의 |
| | 낙찰자 결정방법 | [ ]설계적합최저가 [ ]입찰가격조정 [ ]설계점수조정<br>[ ]가중치기준 [ ]확정가격최상설계 |

【심의의견】

○ 분리 도급(발주)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기타공사로 의결된 경우 작성 불필요)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20 . . .

심의위원 _____(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경상남도 공고 제20 - 호

# 입찰방법 등 심의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 심의의결내용

| 번호 | 공사명 | 공사개요 |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 발주기관 | 입 찰 방 법 |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 예정일 |
|---|---|---|---|---|---|---|---|---|---|
| | | | |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2. 「입찰안내서 심의」 관련 서식

# 사 전 심 의 서

| | |
|---|---|
| 1. 안 건 명 | |
| 2. 심의기간 | 20 . . ~ 20 . . .( 일간) |
| 3. 심의의견 | |

위와 같이 사전심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사 전 심 의 조 치 계 획

□ 안건명 : OO공사

| 심의위원<br>(해당분야) | 심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 1.<br>2.<br>3.<br>.<br>. | 1.<br>2.<br>3.<br>.<br>. | 반영<br>미반영<br>부분 반영<br>표기 |

위와 같이 사전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인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장 귀하

# 심 의 의 견 서

| | | | |
|---|---|---|---|
| 1. 안 건 명 | ○○사업(입찰안내서) | | |
| 2. 의 견 | | | |
| 3. 심의구분 | □ 원안채택 | □ 조건부채택 | □ 재심의 |

위와 같이 심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조 치 결 과 서

□ 안건명 : OO공사

| 심의위원<br>(해당분야) | 조 건 사 항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 1.<br>2.<br>3.<br>.<br>. | 1.<br>2.<br>3.<br>.<br>. | |
| (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br>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 | | |

20 . . .

발주청 소속/직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장 귀하

## 3. 「기술형입찰 기본설계 등 적격심의」 관련 서식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관련 서식(예시)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 명단 공개**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위한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전문분야 심의위원 명단을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의2제6항3호』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 임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 명단 1부. 끝.

20 년 월 일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등 적격심의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 명단

❑ 소위원 명단(○○명)

| 일련번호 | 전문분야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 | | 비 고 |
|---|---|---|---|---|
| | | 성 명 | 소 속 | |
| 1 | 위 원 장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심의」 관련 서식(예시)

#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 전문분야 | 검토항목 | 기술 검토내용 |
|---|---|---|
| | | • 장 점<br>1.<br>2.<br>3.<br>• 단 점<br>1.<br>2.<br>• 질문 사항<br>1.<br>2. |

※ 소위원 기술 검토서는 담당 전문 분야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 이내, 단점과 질문 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 하여야 함.

※ 검토 항목 예시 :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
⇒ 검토 항목 중 기술 검토 사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기술 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

| 소위원<br>성 명 | 전문분야 | 기술 검토내용 및 답변서 |
|---|---|---|
| ○ ○ ○<br>위원 | 도로 및<br>공항 | |
| ○ ○ ○<br>위원 | 토목 구조<br>(강구조) | |
| ○ ○ ○<br>위원 | 토목 구조<br>(일반 구조) | |
| ○ ○ ○<br>위원 | 토목 시공 | |
| ○ ○ ○<br>위원 | 철 도 | |
| . | . | |
| . | . | |

※ 질문 제목별로 간단명료하게 근거를 포함하여 성실히 작성

년 월 일

업체명 : ○ ○ ○(주) 대표 ○ ○ ○ (인)

책임기술인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업체 간 질문 사항/답변서

□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 심의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 업체 간 질문 사항 |
|---|
| 가. |
| 나. |
| 다. |
| 라. |
| 마. |

※ 업체 간 질문 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 업체별로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 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 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 내에서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 (인)

책임기술인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자재 등의 장・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1·20>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학술논문집・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홍보용 자료(팜플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 전문 분야 | 세부 검토항목 | A사 | | B사 | |
|---|---|---|---|---|---|
| |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 도로 | ○ 사전 조사의 적정성<br>-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br>-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br>○ 설계기준 적정성<br>○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br>-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br>-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br>○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 | | |
| | ○ 토공설계 적정성<br>○ 배수시설 적정성<br>○ 포장설계 적정성<br>○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
| |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br>○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br>○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 | | |
| |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구조 |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br>-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br>-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br>-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br>○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 |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br>○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br>○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br>○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br>-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br>○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 | |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br>○ 발파패턴의 적정성<br>○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br>○ 갱문형식의 적정성 | | | | |
| |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br>○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br>○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 | | |
| |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br>○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 | | |

| 전문 분야 | 세부 검토항목 | A사 | | B사 | |
|---|---|---|---|---|---|
| |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 |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 |
| |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br>○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
| |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토질 및 기초 |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br>○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br>○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 |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br>○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br>○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토목시공 |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br>○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br>○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br>-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br>-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br>○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br>○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환경 |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br>○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
| | ○ 기타 | | | | |
| 조경 | ○ 조경계획의 적정성<br>- 공간구조의 효율성<br>-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 | | |
| | ○ 기타 | | | | |
| 전기설비 | ○ 설비시스템 선정<br>○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기타 | | | | |
| 기계설비 |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br>○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br>○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기타 | | | | |

## 「기술검토회」 관련 서식(예시)

# 심의위원 설계 보완사항(지적사항) 보완 요구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 심의 |
| 2. 전문분야 | 분야 |
| 3. 보완사항 | |

※ 작성 요령 : 기 제출된 설계 보완사항(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및 추가사항 작성.

위와 같이 심의위원 설계 보완사항(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심의위원 공통 질문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 심의 |
| 2. 전문분야 | 분야 |
| 3. 질문사항 | 〈질문 항목 번호 또는 내용〉 |

※ 작성 요령 : 기 제출된 질문 사항 중 평가심의회 개최 시 질문할 항목 번호(예:2번 항목) 또는 내용만 기재함.

※ 설계평가심의회 시 질문할 공통 질문 사항을 최종 확정.

위와 같이 심의위원 공통 질문 사항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업체 간 질문서 적정성 검토서

□ 안건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 심의

| 질문 업체 | 상대 업체 | 질문 항목 | 구 분 | 사유 및 수정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은 적정, 부적정, 일부 수정으로 구분하고 부적정일 경우 질문에서 제외함.
※ 검토결과 업체 간 질문서가 모두 적정할 경우 최상단의 횡에 “전부 적정함”으로 표기하고, 나머지 횡은 대각선으로 삭선함.

위와 같이 입찰 업체에서 작성한 질문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설계 검토서 검증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적격 심의 |
| 2. 전문분야 | 분야 |
| 3. 검토의견 | |
| ※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 검토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내용과 기술 내용의 오류, 근거가 미흡한 장·단점 등 보완·수정이 필요한 내용 기재 | |

위와 같이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설계평가회」준비 자료

## 작 성 방 법

1. 설계 보완 사항, 공통 질문/답변 및 업체 간 질문/답변을 1권으로 작성하되 설계 보완 사항, 공통 질문/답변과 업체 간 질의/답변을 구분하기 위한 간지는 연한 녹색 용지를 사용할 것
2. 표지는 백색 아트지(250g), 종이 재질은 일반 백상지(100g)로 사용하여 제본할 것
3. 제본은 무선 좌철(A4)로 하고 회사 로고나 치장 및 견출지 부착 등 금지
4. 한글 파일로 작성(파일 제출)하고, 답변서는 1문항 당 1쪽으로 작성할 것
5. 답변 내용에 표 및 도면을 삽입할 수 있음
6. 페이지 여백 : 위쪽 20, 머리말 15, 왼쪽 20, 오른쪽 20, 아래쪽 15, 꼬리말 15
7. 글자 모양 : 신명조 11포인트(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 160%)
8. 흑백으로 작성하고 출력물은 흑백으로 할 것.(칼라 사용 금지)
9. 페이지 기입하고, 양면 복사할 것
10. 작성 부수 : 25부
11. 자세한 작성 내용은 붙임 참고

「○○○공사 일괄입찰 설계 심의」(HY견명조 16P)

# 심의위원 공통 질문, 상대업체 질문 및 설계 보완사항 답변서

(HY견명조 24P)

20 . . .(신명조 16P)

목 차(신명조 16P)


1. 공통 질문 답변서(신명조 14P)
 1-1. ○ ○ 분 야 ---------- 페이지 수
 1-2. ○ ○ 분 야 ----------
 1-3. ○ ○ 분 야 ----------
 1-4. ○ ○ 분 야 ----------

2. 상대업체 질문 답변서
 2-1. 0000 컨소시엄 ---------- 페이지 수
 2-2. 0000 컨소시엄 ----------

3. 설계 보완사항(지적사항) 답변서
 3-1. ○ ○ 분 야 ---------- 페이지 수
 3-2. ○ ○ 분 야 ----------
 3-3. ○ ○ 분 야 ----------
 3-4. ○ ○ 분 야 ----------


## ○○○○ 컨소시엄(HY견명조 24P)

# 공통 질문 답변서(신명조 20P, 밑줄)

□ ○○분야, ○○○ 위원 (신명조 12P)

| |
|---|
| ❶ “질문 내용” (신명조 11P) |

“답변 내용”(신명조 11P)

# 상대업체 질문 답변서(신명조 20P, 밑줄)

| 질문 회사 | (신명조 12P) | ➡ | 답변 회사 | (신명조 12P) |
|---|---|---|---|---|

| |
|---|
| ❶ “질문 내용” (신명조 11P) |

“답변 내용”(신명조 11P)

※ 답변 회사순서(추첨 순에 따름) : ○○건설 → ○○건설 → ○○건설

# 설계 보완사항(지적사항) 답변서(신명조 20P, 밑줄)

□ ○○분야, ○○○ 위원 (신명조 12P)

| |
|---|
| ❶ “설계 보완 내용” (신명조 11P) |

“답변 내용”(신명조 11P)

## 「설계평가」 관련 서식(예시)

# 추 가 질 문 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평가 심의 |
| 2. 질문분야 | 분야 |
| 3. 질문사항 | |

위와 같이 추가 질문 사항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추 가 질 문 답 변 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평가 심의 |
| 2. 질문분야 | 분야 |
| 3. 답변내용 | |

위와 같이 심의위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표자(대리인)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보완·추가 검토 의견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평가 심의 |
| 2. 검토분야 | 분야 |
| 3. 보완·추가 의 견 | |
| 4. 구조의 변경 또는 공사비 변경을 요하는 사안 | |

※ 업체의 답변 내용이 입찰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입찰시 제출한 설계를 보완·추가하고자 할 경우 의견을 제시(설계 보완에 대한 답변 포함)

※ 구조의 변경 또는 공사비 변경을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본 평가에서는 제외함.

위와 같이 보완·추가 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업체 답변서 등 진위 여부 검토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평가 심의 |
| 2. 질문분야 | 분야 |
| 3. 허위답변 유 무 | |
| 4. 허위답변 내 용 | |

위와 같이 업체 답변서 내용의 진위 여부 검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
## (예시, 3개사 참여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토목시공 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세부 배점 | 세부평가 |
|---|---|---|---|
|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 | 미표시*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 –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 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 –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 –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소 계 | | | |
| 합계 | | | |

*** 세부배점은 평가위원들에게 미공개**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설계 평가 사유서

□ 안건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평가 심의

| 평가 분야 | 평 가 항 목 | 평가 사유서 |
|---|---|---|
| 토목 시공 (10) | ◦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br>◦ 환경 관리 계획의 적정성<br>◦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
| | ◦ 공사 중 시공 계획의 적정성<br>◦ 건설 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적정성 | |
| | ◦ 예상 민원 대처 방안의 적정성<br>◦ 공사 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평가사유서는 평가 항목별로 입찰 업체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 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 설계 평가 점수 총괄 집계표

| 안건명 | 『○○○공사』 일괄입찰 기본설계 평가 심의 |
|---|---|

| 평가분야 | 심의위원 | 배점 | 입찰업체별 점수 | | | 비고 |
|---|---|---|---|---|---|---|
| | | | A사 | B사 | C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평균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평균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평균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평균 점수 | | | | | |
| 합계 점수 | | | | | | |
| 감 점 | | | | | | |
| 종합 평가 점수 | | | | | | |
| 의 결 사 항 | | | | | | |
| 순 위 | | | | | | |

## 4. 「기술형입찰 실시설계 적격심의」 관련 서식

# 심 의 의 결 서

| 의안번호 | 제20 - 0 - 0호 |
|---|---|
| 구 분 | 실시설계 적격 심의 |

□ 안 건 명 :

□ 의결사항 :

○ 소위원 명(위원장 , 참석위원 , 불참위원 )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 )으로 의결합니다.

| 참석위원 | 평가 점수 | 설계 적격 여부 | |
|---|---|---|---|
| | | 적 격 | 부적격 |
| | | | |

| 분야별 | 소 속 | 성 명 | 서 명 |
|---|---|---|---|
| 계 | | | |
| 위원장 | | | |
| 건축계획 | | | |
| | | | |
| 기 계 | | | |
| 정보통신 | | | |
| 전 기 | | | |
| 건축구조 | | | |
| | | | |
| 건축시공 | | | |
| 건설관리 | | | |
| 토 목 | | | |
| 조 경 | | | |

○ 조건사항 : 별첨

20 년 월 일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 사전 심의 조치 계획

□ 안건명 : OO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 심의

| 심의위원<br>(해당 분야) | 심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 1.<br>2.<br>3.<br>.<br>. | 1.<br>2.<br>3.<br>.<br>. | 반영<br>미반영<br>부분반영<br>표기 |

위와 같이 사전 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인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평가 대상 | 『○○○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
|---|---|
| 평가 분야 | ○○ 분야 |

| 평가 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 점수 |
|---|---|---|---|
| ○○ 분야 | 1. 사전 조사 | 2 | |
| | 2. 간선 인입, 배수 및 기반 시설 | 3 | |
| | 3. 흙막이, 차수 및 계측 관리 | 2 | |
| | 4. 터파기 및 잔토처리 | 2 | |
| | 5. 신기술 · 신공법 적용 | 3 | |
| | 6. 사전 조사 및 기존 수목 이식 등 활용 계획의 적정성 | 2 | |
| | 7.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설치 계획 | 2 | |
| | 8. 유지 관리 계획 및 용이성 등 | 2 | |
| | 합 계 | 18 | |

위와 같이 실시설계 채점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전문분야 평가 점수 집계표

| 평가대상 | 『○○○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
|---|---|

| 평가 분야 | 심의위원 | 평 가 점 수 | 비 고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종합 평가 점수 | | | |

# 심 의 의 결 조 건 사 항

□ 안건명 : ○○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 심의

| 위원명 | 심 의 의 견 |
|---|---|
| ○○○<br>(○○분야) | |
| ○○○<br>(○○분야) | |
| ○○○<br>(○○분야) | |
| ○○○<br>(○○분야) | |

# 조 치 결 과 서

□ 안건명 : ○○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적격 심의

| 심의위원<br>(해당분야) | 조 건 사 항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 1.<br>2.<br>3.<br>.<br>. | 1.<br>2.<br>3.<br>.<br>. | |
| (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br>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 | | |

20 . . .

발주청 소속/직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

## 5. 「실시설계, 설계변경 타당성 심의」 관련 서식

# 사전 심의 의견서

| | |
|---|---|
| 1. 안 건 명 | ○○○○공사(실시설계 또는 설계 변경) |
| 2. 심의기간 | ~ ( 일간) |
| 3. 심의의견 | |

위와 같이 사전 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사전 심의 조치 계획

□ 안건명 : ○○공사(실시설계 또는 설계변경)

| 심의위원<br>(해당분야) | 심 의 의 견 | 조 치 계 획 | 비 고 |
|---|---|---|---|
| | 1.<br>2.<br>3.<br>.<br>. | 1.<br>2.<br>3.<br>.<br>. | 반영<br>미반영<br>부분 반영<br>표기 |

위와 같이 사전 심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인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심 의 의 견 서

| | | | |
|---|---|---|---|
| 1. 안 건 명 | ○○○○사업(실시설계 또는 설계 변경) | | |
| 2. 의 견 | | | |
| 3. 심의구분 | □ 원안채택 | □ 조건부채택 | □ 재심의 |

위와 같이 심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심 의 의 결 조 건

□ 안건명 : ○○공사(실시설계 또는 설계 변경)

| 위원명<br>(해당 분야) | 심 의 의 견 |
|---|---|
| ○○○<br>(○○분야) | |
| ○○○<br>(○○분야) | |
| ○○○<br>(○○분야) | |
| ○○○<br>(○○분야) | |

# 조 치 결 과 서

□ 안건명 : ○○공사(실시설계 또는 설계 변경)

| 심의위원<br>(해당분야) | 조 건 사 항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 1.<br>2.<br>3.<br>.<br>. | 1.<br>2.<br>3.<br>.<br>. | |
| (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br>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 | | |

20 . . .

발주청 소 속/직 :

성명 : (서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참 고 자 료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169

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207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237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257

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277

6.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363

7.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373

8.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95

9. 기관별 설계심의 담당자 연락처 ····· 467

# 1 경상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1989-11-30 조례 제 1897호
(일부개정) 1991-09-26 조례 제 2088호
(일부개정) 1992-09-18 조례 제 2173호
(일부개정) 1993-05-11 조례 제 2210호
(일부개정) 1993-11-25 조례 제 2248호
(일부개정) 1993-12-31 조례 제 2252호
(전부개정) 1994-05-20 조례 제 2278호
(일부개정) 1996-05-09 조례 제 2413호
(일부개정) 1997-12-31 조례 제 2537호
(일부개정) 1999-01-14 조례 제 2648호
(일부개정) 2000-06-10 조례 제 2792호
(일부개정) 2007-06-28 조례 제 3228호
(일부개정) 2007-06-28 조례 제 32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03 조례 제 33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8-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 3498호
(일부개정) 2010-11-04 조례 제 354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11-10 조례 제 3652호
(일부개정) 2012-10-11 조례 제 3778호
(일부개정) 2013-01-31 조례 제 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08-07 조례 제 392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 3933호
(일부개정) 2017-12-21 조례 제 4392호
(일부개정) 2018-11-01 조례 제 44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4.10.10., 2018.11.1>

**제2조(구성)** 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

정 1996.5.9, 1999.1.14, 2007.6.28, 2009.8.13, 2010.3.25, 2014.10.10, 2018.11.1>

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5.9, 1997.12.31, 1999.1.14, 2007.6.28, 2008.7.3, 2010.3.25, 2010.11.4, 2013.1.31, 2014.8.7, 2017.1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10,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996.05.09, 2011.11.10, 2017.12.21>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0.3.25, 2014.10.10>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0.3.25, 2014.10.10>
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6.10., 2010.03.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1.14, 2000.06.10, 2007.6.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6.28.>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6.10, 2010.3.25, 2014.10.10, 2017.12.21>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1>

③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14> <개정 2010.3.25., 2014.10.10.>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심의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기술심의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0.03.25, 2011. 11. 10>

**제6조(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5.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기술제안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6.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7. 영 제1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8. 영 제17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
9. 영 제17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
10.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과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4.10.10>

11.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12.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10.03.25, 2011.11.10>

**제7조 삭제 <2000.06.10.>**

**제8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별표 1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4.10.10>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

③ 삭제 <2000.06.10>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03.25>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0조(소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0.03.25>

1. 건설기술분야 소위원회 :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
2. 건설공사부실방지분야 소위원회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

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18.11.1>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6.28>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25>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10.10, 2017.12.2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8.11.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4.10.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

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4.10.10>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개정 2012.10.11, 2014.10.10>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

⑥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1, 2018.11.1>

⑧ 삭제 <2018.11.1.>

⑨ 삭제 <2018.11.1.>

<본조신설 2010.03.25.>

**제10조의3(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⑥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분과소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11조(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1997.12.31>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1997.12.31>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개정 1997.12.31>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0, 2014.10.10>

④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개정 2010.03.25.>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5., 2014.10.10>

**제13조(심의·의결)**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제6조제4호에 관한 심의는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심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4.10.10.>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제16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5, 2014.10.10>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7조(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17조의2(심의수수료)** ①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0.>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설계심사위원회조례(조례 제900호, 1977년 3월 25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1.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5.1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5.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괄입찰공사 등의 설계평가 등에 관한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①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10.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는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표지)

| 의안 번호 | 제 호 |
|---|---|

| 건명 | |
|---|---|

20 . . .

| 요청기관명 | |
|---|---|
| 설 계 자 | |

# 공 사 설 명 서
(내지)

| | | |
|---|---|---|
| 공 사 명 | | |
| 공사 위치 | | |
| 공사 기간 | | |
| 공사 금액 | 총 공 사 비 | 백만 원 |
| | 금회 공사비 | 백만 원 |
| 공사 내용 | | |
| 첨부 서류 및 부수 | | |

# 용 역 설 명 서
(내지)

| | | |
|---|---|---|
| 용 역 명 | | |
| 위 치 | | |
| 용역기간 | | |
| 용역금액 | 총용역비 | 백만 원 |
| | 금회 용역비 | 백만 원 |
| 용역 내용 | | |
| 첨부 서류 및 부수 | | |

[별지 제2호서식]

# 설계 심의(사전)결과보고

| | |
|---|---|
| 1. 공 사 명 | |
| 2. 심의 기간 | |
| 3. 의 견 | |

위와 같이 설계 심의(사전)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회 의 록

1. 의 안 명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 일 련 번 호 | 위 원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 결과 : 붙임

[별지 제4호서식]

# 건 설 기 술 심 의 대 장

| 공 사 명<br>(안건명) | | | | 의안번호 | 2018-02-01 | 요 청 자 | 창원시장 |
|---|---|---|---|---|---|---|---|
| 접수일자 | '18. 1.26. | 사전<br>심의기간 | 해당없음 | 회의일시 | '18. 2.23. | 완결일자 | '18. 2.23. |
| 공사기간 | '18.11~'20.1. | 총공사비 | 백만원 | 금회<br>공사비 | 백만원 | 처리구분 | 완결 |
| 심의위원 | 0명 | ooo,ooo,ooo,ooo,ooo | | | | | |
| 의견서<br>미제출위원 | 0명 | ooo | | | | | |
| 회의<br>불참위원 | 0명 | ooo | | | | | |

**[심의결과]**

-

| 특기사항 | |
|---|---|
| 비 고 | |

[별지 제5호서식]

# 조 치 결 과 서

| 지 적 내 용 | 조 치 내 용 | 비 고 |
|---|---|---|
| | | |

(주) 1.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별표 1]

#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 기준

## 1. 토목 분야

### 가. 기본설계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목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예비 설계를 수행하며, 설계 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 |
|---|---|
| 토질 및 지반 조사 보고서 | ○ 토질개황<br>○ 주요 토질 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br>○ 주요 토질 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등)<br>○ 성과분석<br>·교량 및 터널구간 지층분석<br>·교량 기초 검토<br>·사면안정 검토<br>·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등<br>○ 기타 발주청이 공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 기본설계 예산서 | ○ 기본설계내역서<br>○ 기본단가산출서<br>○ 기본수량산출서<br>·수량집계표<br>·공종별 수량산출서 |

| 구분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설계 보고서 | ○ 공사 개요(목적, 규모, 사업비 등)<br>○ 조사 사항<br>○ 계획<br>·노선 계획<br>·구조물 계획 및 수리 계획<br>·환경영향평가<br>·설계 기준 및 조건<br>○ 기본설계(선형, 토공, 교량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br>○ 주요 시공 계획<br>○ 주요자재 수급·사용 계획<br>○ 공정 계획<br>○ 기본 사업비<br>○ 경제성 분석(공사비, 보상비, 유지 관리)<br>○ 기타 발주청이 공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 ○ 구조계획도<br>○ 설계 조건<br>○ 주요 구조계산<br>·구조단면 결정 및 사유<br>·기초 허용 지지력 계산<br>·각부 주요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br>·기타<br>○ 주요 수리계산<br>·유역도<br>·수리계산(설계 빈도, 강우 강도, 단면결정 등)<br>○ 기타 발주청이 공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 구분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
| | 도면종류 | 축척 | 사 항 |
| 설계도면 | 위치도 | 1/50,000 ~ 1/5,000 축척지형도 | 주변 지형지물 표기 |
| | 노선종평면도 | H=1/1,000 V=1/500 | |
| | 주요횡단면도 | 1/100 ~ 1/200 | |
| | 주요 구조물 일반도 | 1/50 ~ 1/200 | |
| | 주요단면 구조상세도 | 1/10 ~ 1/200 | 표준도, 기본설계단면도등 |
| | 기 타 | | 필요한 도면 |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설계 보고서 | ○ 공사 개요<br>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 수행 지침, 금액등<br>○ 계획 및 방침<br>· 위치 선정<br>· 세부구조물 및 수리 계획<br>· 세부조경 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br>·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 시)<br>○ 사전 조사<br>○ 세부시공계획<br>○ 자재사용계획<br>○ 세부공정계획<br>○ 세부공사비 산정<br>○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br>· 경제분석<br>- 공사비산출<br>- 유지보수비<br>- 경제분석<br>· 기타사항 |
| 구조및수리 계 산 서 | ○ 세부구조계산서<br>· 구조단면 결정 계산 및 사유<br>·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br>· 각부 구조의 제하층에 대한 구조계산<br>·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br>· 수리모형 실험결과<br>· 내진설계 |
| 토 질 조 사 보 고 서 | ○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br>○ 세부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등)<br>· 조사방법<br>· 조사위치 선정<br>· 조사결과 분석<br>○ 세부토질 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 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br>○ 부 목<br>· 지질분포 현황도<br>· 토질 조사 위치도 (S=1/25,000)<br>· 토질 조사 위치 상세도 (S=1/1,200)<br>· 재료원 현황도<br>· 지층단면도<br>·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br>·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br>· 실내시험 성과표<br>·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골재, 석산골재) |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공사 시방서 | ○ 주요 시방내역<br>- 공사 시방서 작성 지침 참조 |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
| | 도면종류 | 축 척 | 사 항 |
| 설계도면 | 위 치 도 | 1/50,000 ~ 1/5,000 축척지형도 | 주변지형지물 표기 |
| | 종단면도및 평 면 도 | 1/1,200 ~ 1/3,000 | 세부 종평면도 |
| | 횡 단 면 도 | 1/100 ~ 1/200 | 세부 횡단면도 |
| | 구 조 물 도 | 1/100 ~ 1/200 | 세부 구조물도 |
| | 부대 시설도 | 1/100 ~ 1/200 | 세부 부대시설도<br>세부 가시설물 도면 |
| | 조 경 도 | 1/200 ~ 1/500 | 세부 조경 계획<br>(사면보호, 식재 계획 등 조경 설계기준 참조) |
| | 기 타 | | 기타 필요한 도면 |
| 설계내역서 | | | 설계 설명서<br>공정별 세부내역서<br>수량 산출근거<br>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다. 설계 변경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설계 보고서 | 1. 공사 개요<br>○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br>설계개요, 사전 조사,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내용<br>○ 설계 변경 개요 (사유서)<br>·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br>2. 변경계획 및 방침<br>가. 위치 선정<br>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 계획<br>다.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br>3. 사전 조사<br>4. 세부 시공 계획<br>5. 자재 사용 계획<br>6. 세부 공정 계획<br>7. 세부 공사비 산정<br>8.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 |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구조및수리<br>계 산 서 | 1. 변경세부 구조계산서<br>○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br>○ 기초 허용 지지력 계산<br>○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br>○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br>○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
| 토 질 조 사<br>보 고 서 | ○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
| 공사 시방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 시방서 |

| 구 분 |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 | |
|---|---|---|---|
| | 도면종류 | 축 척 | 사 항 |
| 설계도면 | 위 치 도 | 1/50,000 ~ 1/5,000 축척지형도 | 전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
| | 종단면도및<br>평 면 도 | 1/1,200 ~ 1/3,000 | |
| | 횡 단 면 도 | 1/100 ~ 1/200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구 조 물 도 | 1/50 ~ 1/100 | “ |
| | 부대시설물도 | 1/100 ~ 1/200 | “ |
| | 조 경 도 | 1/200 ~ 1/500 | |
| | 기 타 | | 기타 필요한 도면 |
| 설계내역서 | | | 변경세부설계 내역서<br>- 공종별 세부내역서<br>- 수량산출근거<br>-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

나. 공통사항 : 개별법에 의한 용역, 협의사항 보고서 등 제출

## 2. 건축분야

### 가. 기본설계

사업기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 조건 및 요구 사항을 토대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기본상세도, 내부전개도, 천정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 공사비 개산서, 공사 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설계 개요 | -설계개요(위치,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대수 등)<br>-투시도(A4용지 2매이내)<br>-개요계획서(건축, 시공, 구조, 기계 설비, 전기·통신 설비, 토공, 조경)<br>-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br>-신기술·신공법 |
| 계획 | -배치계획(배치도,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br>-평면계획(각층평면도)<br>-입면계획<br>-단면계획(종단면도, 횡단면도)<br>-마감계획(실내외 주요부분 마감 재료표) |
| 시공 | -공정관리·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개요 |
| 구조 | -구조계획서<br>-각층 구조평면도(기초,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br>-구조단면도 |
| 기계 | -간선도<br>-설비계통도 |
| 전기 · 통신 | -간선도<br>-설비계통도<br>-에너지 절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 토목 | -공사계획평면도(지반고, 계획고, 고저현황 등)<br>-급수 및 우·오수공사계획평면도(우·오수 관경, 재질, 평면)<br>-토목구조물 계획 |
| 조경 | -식재수종, 규격, 수량 등<br>-공개공지 계획(필요시) |

## 나. 실시설계

### 1) 건축일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 명세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 작성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목록 | 표 지 | | · 공사명, 작성년월, 건축사사무소명 |
| | 도면 목록표 | | ·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페이지) |
| 사전 조사 | 지반 조사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 | ·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토질 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 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과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등 |
| 개요 | 계획 및 방침 | | ·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 제시, 안채택과정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방지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등 |
| | 설계 설명서 | | · 건축공사개요<br>· 주차설계<br>· 배치설계<br>· 평면, 입면, 단면계획<br>· 구조설계<br>· 조경설계 |
| | 배치도 | 1/100이상 | · 기본설계시 배치도와 상이 부분 및 상세 부분 표현 |
| | 부분배치도 | 1/50이상 | · 상기사항(배치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 (필요시 작성) |
| | 주차 설계도 | 1/100이상 | · 축척,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재료등 |
| 계산서 | 구조계산서(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세부 계산서(내진 설계 포함) |
| 시방서 | 공사 시방서 | | · 공사시방서작성요령 참조<br>· 유지 관리서 |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공사비 명세서 | 공사비 명세서 | |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
| 안내도 | 부근 안내도 | 임의 |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
| 조감도 | 조감도 | 임의 |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투시도 | 투시도 | 임의 | · 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미관 |
| 주 변 현황도 배치도 | | 임의 1/600이하 | · 축적, 방위, 대지 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 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 시설물 간의 위치 관계 및 동선 처리, 심의 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 시설·주차 장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
| 면적표 | 건축면적 산출표 | | · 각층 면적 및 부대 복리시설 면적 |
| 마 감 | 실내외 마감 재료표 | | · 바닥, 천정, 내·외벽, 지붕등 마감 재료 |
| 평면도 | 각층 평면도 상세도 | 1/100이상 | · 시공에 필요한 사항<br>· 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직통계단 또는 피난 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 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
| 입면도 | 정면도, 배변도, 좌·우측면도 | 1/100이상 | · 축적, 개구부, 옥상 돌출부, 재료, 기타<br>·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br>· 문.창 위치 표시(바닥 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
| 단면도 | 주단면도(종·횡으로 2면 이상) | | · 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정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
| 전개도 | 천정평면도, 벽입면도 | | · 각층 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상세도 | 주단면상세도 | 1/5~1/50이상 | · 주요 부분 상세 표시 |
| | 개별실평면, 단면상 세도 | " | · 설치 상세도 |
| | 계단 평면·단면상세도 | " | · 설치 상세도 |
| | 계단 평면·단면상세도 | " | · 설치 상세도 |
| | 기타 상세도(굴뚝및부착시설물등) | " | · 설치 상세도 |
| | 셔터,핏트,발코니등의 부분 상세도 | 1/5~1/50이상 | · 주요 부분 상세 표시 |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구조도 | 각부배근 상세도 | 1/30이상 | · 철근의 종류 및 배근 형식, 보강근의 위치 |
| | 각부 구조단면도<br>(라멘도) | " | · 각종 주철근 및 보강근의 종류·배근방법 |
| | 각부 구조 상세도 | 1/5~<br>1/50 | |
| | 기초·기둥·보·슬라브·콘크리트벽일람표 | 1/30이상 | · 기둥의 크기, 층별 기호<br>· 철근의 지름 표시 |
| | 구조 부재 조립도 | | · P.C철골 및 트러스등 |
| | 구조 부재 접합 상세도 | | · P.C철골 및 트러스등 |
| 창호도 | 창호 일람표 | 1/50이상 | · 모듈, 제작 치수, 적용 위치 |
| | 각층 창호 평면도 | 1/100이상 | · 모듈, 제작 치수, 적용 위치 |
| 단지계획 | 보행자 및 차량 동선도 | 1/600 | · 단지 내.외 보행 및 차량 흐름도<br>· 각 시설물의 위치도등 |
| 조경<br>부분 | 조경 상세도<br>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상세도면 일체<br>토목 상세도 | 1/50이상 | · 축척, 조경 면적 또는 녹지 면적 산출, 수종등 식재 계획·휴게시설(광장, 휴게소, 파고라, 원두막, 의자 등)·놀이시설(놀이터 등)·체육시설·환경조형시설(조각, 상징탑 등)·기타(잔디, 휴지통, 안내판, 분수, 벤치, 등산로, 담장, 화단, 음료수대 등)<br>·조경 시설물의 위치, 크기, 포장 등 기타 사항 |
| | 배식 평면도 | 1/200이상 | ·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면적계산표등 |

<비고>

① 설계 설명서(설비 분야 포함)에는 개요, 사전 조사, 공사비 개산서, 세부 공정 계획, 세부 설비 및 자재사용계획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 설계도서의 설계심의도서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지하 주차장, 옹벽등 토목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개 요 | 설계 설명서 | | · 흙막이 구조<br>· 단면 상세<br>· 옹벽 구조 |
| 시방서 | 공사 시방서에 포함 | | |
| 공사비 명세서 | 공사비 명세서 | |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
| 현황도 | 현황도 | | · 지하 매설 구조물 현황 |
| 평면도 | 각종 평면도 | 1/100이상 | · 세부 시설물 계획도 |
|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 | 1/100이상 | · 세부 종·횡단면도 |
| 기 타 | | | · 기타 필요한 도면 |

3) 건축 기계 설비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배치도 | 배치도 | 임의 | · 기본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
| 계통도 | 계통도 | 임의 | · 각종 설비용 닥트 및 배관<br>- 공조 설비(냉난방, 환기등)<br>- 위생 설비(급배수·급탕·소화·가스등)<br>- 기타 설비 |
| 평면도 | 각종 평면도 | 1/50이하 | · 옥외배관, 옥외 공동구<br>· 각층 설비용 닥트 및 배관<br>· 기계실 닥트 및 배관 확대<br>· 장비 일람표 |
| 상세도 | 상세도 | 1/5~1/50 | · 주요 샤프트, 핏트 내·외 닥트 및 배관<br>· 주요 부분 상세도 |
| 계산서 | 각종 계산서 | | · 각종 설비 부하 및 용량 계산 |
| 공사비 명세서 | 공사비 명세서 | | · 각종 설비별 공사비 명세서 |
| 시방서 | 공사 시방서(기계 설비) | | · 특기 사항<br>- 기기의 메이커 리스트<br>- 특수 공법 및 시험법<br>- 시공도의 종류 및 축척 지정<br>- 공사 시방서의 적용 범위 |

4) 건축 전기 설비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개요 | 설계 설명서 | | · 전기 설비 개요<br>- 각종 설비(전력, 방재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br>· 수.변전설비에 관한 수전 방식, 배치 및 감시 제어에 관한 설명<br>·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br>·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 관한 고려 사항 |
| | 배치도 | 1/100이상 |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br>·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 관계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
| 계산서 | 전기 설비 계산서 | | · 조도계산서<br>· 부하 산출서 및 수·변전 설비용량 계산서<br>· 발전기용량 계산서<br>· 축전지 설비 등의 용량 계산서<br>· 간선 계산서 |
| 시방서 | 공사 시방서<br>(전기 설비) | |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 사항 |
| 공사비 명세서 | 공사비 명세서 | |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
| 계통도 | 각종 전기 설비의 계통도 | |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
| 간선도 | 옥외 간선도 | 1/20 이상 | · 전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전력, 설치 방법, 설치 상세 도등 |
| 수·변전 설비도 | 수·변전 설비도 | 1/100이상 | · 수·변전 설비의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및 기타 설치 상세도 |
| 설 비 배치도 | 각종 전기 설비의 배치도 | 1/100이상 | ·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
| 기 타 | | | · 기타 필요한 도면 |

(비고) 건축 통신 설비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 통신 설비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개 요 | 설계 설명서 | | · 통신 설비 개요<br>- 각종 설비(전화·TV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br>·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br>· 유지 관리 관한 고려 사항 |
| | 배치도 | 1/100이상 | · 전화 설비.TV공청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
| 계산서 | 통신 설비 계산서 | | · 전화회선수 산출 계산서<br>· TV전계 강도 계산서<br>· 엠프용량 계산서<br>· 기타 필요한 계산서 |
| 시방서 | 공사 시방서<br>(통신 설비) | |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 사항 |
| 공사비 명세서 | 공사비 명세서 | |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
| 간선도 | 옥외 간선도 | 1/20이상 | · 전화 설비.TV공청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설치 방법·설치 상세도 |
| 설 비 평면도 | 각종 통신 설비의 평면도 | 1/100이상 | · 전화 설비.TV공청 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
| 기 타 | | | · 기타 필요한 도면 |

다. 설계변경

1) 건 축

| 구 분 | 작성 도면 | 축 적 | 표 기 사 항 |
|---|---|---|---|
| 설계 변경 일반 사항 | | | ·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 설계 개요, 사전 조사,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 내용<br>· 설계 변경 개요(설계 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 내용)<br>-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등<br>- 수평·수직 동선계획, 세부 배치, 평면, 입면계획등<br>- 세부 공정 계획<br>- 세부 자재 계획<br>- 공법 비교 검토 |
| 구조계획서 | | | · 전체 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br>· 변경 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
| 토질 조사서 공사 시방서 | | | · 전체 및 변경 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br>· 기초 구조 설계변경시<br>· 전체 및 변경 설계에 대한 공사 시방서 |
| 설계도면 | 부근 안내도 | 임의 | · 전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조감도 또는 투시도 | 임의 | · 전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배치도 | 1/600이하 | · 전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건축물 내의 마감표 | | · 전체 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평면도, 입면도(4면) | 1/50이상 또는 1/100이상 | · 전체 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주단면도 | 1/100이상 | · 전체 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기초,기둥,보,기붕구조도 각종시공상세도 | 1/100이상 1/50~1/30 | · 전체 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각종 구조단면 상세도 및 배근 상세도 | 1/50~1/30 | · 전체 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2) 기계 설비

| 구 분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설계 설명서 | ·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 주요 생산 설비, 주요 유틸리티 설비, 복리 후생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 필요한 사항등 실시설계 내용<br><br>· 설계 변경(설계 변경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 내용)<br>- 설비 시방, 배치 계획, 생산 조건, 생산량등<br>- 주요 유틸리티 설비<br>-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 관한 사항<br>- 세부 시공 계획<br>- 세부 공정 계획<br>- 세부 공사비 비교 검토<br>- 변경 사항 비교 검토 |
| 공사 시방서 | · 변경 설계에 대한 시방 사항 |
| 설계 계산서 | · 변경 설계에 대한 설계 계산서<br>- 주요 생산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br>- 주요 유틸리티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br>- 작업 능력, 싸이클타임, 작업 효율에 관한 세부 계산서<br>- 부하 계산서 |

| 구분 | 도면 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설계도면 | 일반 사항 | 전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배 치 도 | 전체 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계 통 도 | “ |
| | 평 면 도 | “ |
| | 단 면 도 | “ |
| | 기 계 실 | “ |
| | 입체 단면도 | “ |
| | 옥외 공동구 | “ |
| | 상 세 도 | “ |
| | 기 타 | “ |

3) 전기·통신 설비

| 구 분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설계 설명서 | ·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 개요, 설계 개요, 사전 조사,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 내용<br><br>· 설계 변경 개요<br>- 각종 설비<br>- 인입, 수변전 및 배정 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등<br>- 계장 설비<br>- 특수한 공법 기준<br>- 각종 설비의 전력 에너지 절감 방안 등 |
| 설비 계산서 | · 변경 설계에 대한 설계 계산서<br>- 조도계 산서<br>- 부하 계산서<br>- 통신 설비<br>- 각종 통신 설비 세부 계통도<br>- 예비 및 비상 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br>- 축전지 설비 용량계산서<br>- 전압강하 계산서<br>- 계측 및 조절 범위 산출서<br>-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 계산서, 선실계산서등 |
| 공사 시방서 | · 변경 설계에 대한 시방 사항 |
| 설계도면 | · 원설계도에 변경 내용 표시 |

라.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 부수

| 구 분 | 규 격(m/m) | 지 질 | 소요 부수 | 비 고 |
|---|---|---|---|---|
| 기본설계<br>(설계도면) | A (841×1,189) 또는<br>A (594×841) | 청사진용<br>감 광 지 | 10부 | |
| 실시설계<br>(설계도면) | A (841×1,189) 또는<br>A (594×841) | " | 10부 | |
| 각종 서류<br>(설계설명서등) | B (257×364) 또는<br>A (211×297) | 갱지 이상 | 10부 | |

<주>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 계획에 따라 관계 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 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 3. 공통사항

◦ 개별법에 의한 용역, 협의 보고서 제출

[별표 2]

# 건설기술심의 수당 및 수수료 산출 기준

| 구 분 | 심의수당 및 수수료 산출기준(건당) |
|---|---|
| ① 조례[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 · 수 당 : 사전심의수당[2]+참석수당<br>·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
| ② 조례 제6조제4호 입찰방법 심의 | · 수 당 : 참석수당<br>· 수수료 : 수당 × 심의위원수 |
| ③ 조례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적격평가심의, 기술제안서 적격평가심의(기술형 입찰) | · 수 당 : (기술검토비[3] × 업체수) + 참석수당<br>· 수수료 : 수당×심의위원수 |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7조

2) 사전심의수당은 심의 건 당 30,000원으로 한다.

3) 기술검토비는 기술사 단가의 50%로 한다.

↳ 기술사 단가 :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사 단가로 한다(천 원 이하 단위는 절사함)

※ 수당지급 시 여비(교통비 등)는 별도 산정하며 실비를 지급한다.

※ 참석수당은 일 당 70,000원으로 한다.

※ 초과수당은 일 당 30,000원으로 하며, 소집심의 2시간 초과 시 지급한다.

# ②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호, 2019. 2.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5.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공사로서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스마트건설공사”라 한다)

**제3조(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① 발주청장은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공사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이하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로 집행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제출
2.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3. 기타공사로 의결된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②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한다.

1. 별표 1의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이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입찰방식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3.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

③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낙찰자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때 별표5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안사유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심의를 요청하려면

대안구간 또는 제안대상구간이 시·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할 수 있고 원안구간의 규모가 최저가낙찰 공사 발주대상인 경우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장은 별표1의 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전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기단축이 주된 사유인 경우
2.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신기술·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3.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난이도 높은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경우
4.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제4조(위원회 심의요청)**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집행기본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으로부터 받은 집행기본계획서 중 기타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
   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2. 대안입찰 :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당해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4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다.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공사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추정가격) 이상인 경우

5. 설계·시공 분리입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심의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심의대상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제3조제7항에 해당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 완료되었는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4.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검토한 결과,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공사의 특성, 현지 여건, 공사관리 역량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이 아닌 기타공사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입찰참가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공사의 물량과 입찰예정시기를 조정하도록 발주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낙찰자결정방법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입찰방법 심의 시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방법에 따라 해

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주청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별표5의 낙찰자결정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발주청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3. 낙찰자결정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이 적정한지 여부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낙찰자결정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2. 입찰가격 조정 방식
3. 설계점수 조정 방식
4. 가중치 기준 방식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제5조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인 경우에만 해당)

**제6조(입찰방법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등)**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운영·관리 등)** ① 위원은 가능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관리대장 및 심의 회의록(서면으로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 가능)을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의 입찰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입찰방식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시 입찰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주청 제시 설계내용과 낙찰 설계내용을 비교한 정량적 추정치 산정 결과서(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공기단축, 품질향상 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효과)를 실시설계 완료 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일괄입찰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과 비교
2. 기본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설계 내용과 비교
3. 대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일 경우, 발주청이 제시한 실시설계 내용과 비교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8.4.23>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

①(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고시일 이전에 적용하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4호(2008.4.23)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2009.8.2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29>

(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 기준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입찰방법 심의된 공사 중 아직 입찰공고가 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장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3.4.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23>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25>

이 심의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2.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일괄·대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분 야 | 심의대상 시설기준 |
|---|---|
| 토 목 | ▪ 교량(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 및 경간장 100m 이상(철도교량은 70m 이상)인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br>▪ 일반터널(3,000m 이상 또는 방재1등급터널), 하저 및 해저터널<br>▪ 댐(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배수갑문<br>▪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br>▪ 항만(계류시설, 외곽시설 등)<br>▪ 철도(철도차량기지)<br>▪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 건 축 | ▪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공동주택<br>▪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br>▪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 플랜트 |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하수(5만톤/일 이상)·폐수(1만톤/일 이상) 처리시설<br>▪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br>▪ 가스공급시설<br>▪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 분 야 | 심의대상 시설기준 |
|---|---|
| 토 목 |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연장 500m 이상,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br>▪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m 이상<br>▪ 도로터널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br>▪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br>▪ 항만 : 높이(기초 포함) 30m 이상 및 설계파랑 5.0m 이상 해상구조물,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시설<br>▪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br>▪ 하천 :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m 이상인 다기능 보, 강변여과 취수시설(10만톤/일 이상)<br>▪ 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상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br>▪ 공항(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br>▪ 철도(철도차량기지)<br>▪ 통제센터와 연계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지능형교통체계시설 |
| 건 축 |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공동주택(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br>▪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막구조, 돔구조는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br>▪ 연면적 3만㎡ 이상인 공용청사 |
| 플랜트 | ▪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1만톤/일 이상 하수·폐수 처리시설<br>▪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소각시설(30톤/일 이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및 매립시설<br>▪ 가스공급시설<br>▪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

[별표 2]

#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 대상공사 선정기준 | 검토항목 |
|---|---|---|
| 1. 여러 공종(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한 경우 |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때<br>2) 복합공종으로서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br>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 ▪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br>▪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br>▪ 설계·시공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 (설계·시공 분리입찰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br>▪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br>▪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br>▪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br>▪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용이 정도<br>▪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
|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br>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 ▪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br>▪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br>▪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3. 설계VE,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br>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br>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 ▪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br>▪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br>▪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br>▪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
|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br>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 ▪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br>▪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br>▪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

[별표 3]

#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 대상공사 선정기준 | 검토항목 |
|---|---|---|
|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br>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단축이 요구되는 때 | 1)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br>2)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br>3)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br>4) 설계·시공 분리입찰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공정 자료 포함) |

[별표 3의 2]

# 스마트 건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①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발주공사유형 | 대상공사 선정기준 | 검토항목 |
|---|---|---|
|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 1) BIM기반 스마트 설계기술을 설계 및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br>2) 시공 전 과정에 자동화된 건설기계 운용 및 통합 관제,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br>3)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의 자동화,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단계에 기술 적용이 필요한 경우 |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필요성 (해당기술 채택 사유)<br>2) 설계와 시공단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지 여부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인 적용은 제외)<br>3)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시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검토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품질, 안전, 유지관리 경제성 등)<br>4)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br>5)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시, 해당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불리한지 여부 |

② 스마트 건설기술의 주요 대상기술

| | |
|---|---|
| 스마트 건설 | ▪ BIM기반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BIM설계 자동화)<br>▪ 건설기계 자동화 및 관제(건설기계 자동화, 건설기계 통합 운영 및 관제)<br>▪ 공정 및 현장관리 고도화(시공 정밀제어 및 자동화, ICT기반 현장 안전사고 예방기술, BIM기반 공사관리, 모듈화 또는 프리패브방식에 의한 시공)<br>▪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IoT 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기반 시설물 진단)<br>▪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및 표준화,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

[별표 4]

#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우선 입찰방식(안)

|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 발주방식 (우선순위) | | | |
|---|---|---|---|---|
| | 기본계획완료 후 | | 실시설계완료 후 | |
| | 일괄 | 기본설계 기술제안 | 대안 | 실시설계 기술제안 |
| Ⅰ 여러 공종의 복합공사로 설계·시공의 일괄시행이 필요한 경우 | | | | |
| 1) 복잡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 | ○ | △ | ○ | △ |
| 2)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 ○ | △ | △ |
| 3) 연계공종간 책임이 불분명 | ○ | ○ | △ | △ |
| Ⅱ.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 | |
| 1) 설비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 △ | ○ | △ | ○ |
|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과 품질보증이 요구 | △ | ○ | △ | ○ |
| Ⅲ.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적용등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 | | | | |
| 1) 경제적인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 △ | ○ | △ | ○ |
| 2)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 | ○ | △ | ○ | △ |
| 3) 공기,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 ○ |
| Ⅳ.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 | | | |
| 1) 가격 외에 시공자 기술, 창의적 요소 반영이 필요 | △ | ○ | △ | ○ |
| 2) 국가, 지역적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 | △ | ○ | △ | ○ |
| Ⅴ.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Ⅵ. 설계와 시공·유지관리 전반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 | ○ | - | - |

* (검토시기) 발주청이 입찰방법 심의 요청전 공사수행방식 결정시 활용하고, 입찰방법 심의시 발주청 결정사항에 대해 적절여부 검토

* (평가기준)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발주방식 우선 순위에 따라 “○”와 “△”로 구분 후, “○”가 많은 발주방식을 우선 적용
발주방식 우선 순위를 달리할 경우, 발주청은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과 발주방식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별표 5]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선정기준

①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

| 종 류 | | 낙찰자 결정방법 |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 ▪ 설계 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자 |
| 종합평가방식 | 입찰가격조정 |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
| | 설계점수조정 |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 가중치기준 |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일괄입찰만 적용) | | ▪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② 낙찰자 결정방법별 적용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은 공사목적, 기술적 난이도, 규모 등 공사특성과 예산확보, 사업관리역량 등 발주청 여건을 감안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 설계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 단순반복 공사 등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

⑵ 입찰가격 조정/설계점수 조정방식 : 비교적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있어 비용절감,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⑶ 가중치 기준방식 : 시설물의 사용 목적 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⑷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로서, 고난이도 기술·공법이 현저히 필요한 공사 또는 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국가 랜드마크 시설 공사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집 행 기 본 계 획 서

| 구 분 | 내 용 |
|---|---|
| ① 발주기관 | |
| ② 공사명 | |
| ③ 공사 개요 | |
| ④ 총공사비(추정금액) | |
| ⑤ 공사기간 | |
| ⑥ 공사위치 | |
| ⑦ 입찰예정시기 | |
| ⑧ 입찰방법 | |
| ⑨ 낙찰자결정방법 | |
| ⑩ 제안사유 | |
| ⑪ 사업효과 | |
| ⑫ 심의개최 요청시기 | |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 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단위: 억 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 예정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입찰방법 명시

다만,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또는 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낙찰자결정방법 명시

⑩ 입찰방법 제안 핵심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⑪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명시

(일괄, 대안, 기본설계기술제안,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방법을 통해 얻고자하는 기대효과를 추가적으로 명시)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1호의2서식]

(4쪽 중 제1쪽)

# 집행기본계획서 세부현황

## 1. 위치도 또는 도면

##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6.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table>
<tr><td>입찰방법</td><td>*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br>*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br>*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td></tr>
<tr><td>입찰방법 심의요청<br>근거규정</td><td>*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br>관한 근거규정 명시</td></tr>
<tr><td>공사의 목적 및 특성</td><td></td></tr>
<tr><td>입찰방법을 통한<br>사업효과</td><td>○ 일괄의 경우<br>-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br>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br>-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br>○ 대안의 경우<br>-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br>비교 제시<br>○ 기술제안의 경우<br>- 공기단축, 사업관리, LCC, 사업비, 성능개선 등의 기대효과를<br>원설계와 비교제시</td></tr>
<tr><td>입찰방법별<br>장단점 비교</td><td><table><tr><td>검토항목</td><td>심의요청 입찰방법</td><td>타 입찰방법1</td><td>타 입찰방법2</td></tr><tr><td>1.</td><td></td><td></td><td></td></tr><tr><td>2.</td><td></td><td></td><td></td></tr></table>○ 추진가능한 다른 입찰방법과 비교하여 심의요청하는 입찰방법이 필요한 사유를 검토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항목을 구성할 것<br>- 신기술·신공법 필요성 :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가능한지 여부 등<br>- 개선된 설계안 도출가능성 : 원안설계(일괄입찰의 경우 기본계획)와 비교검토하여 더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br>- 별표2 내지 별표3의2 의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 중 입찰방법을<br>제안하는 핵심적인 사유 : 사유별 구체적 비교검토<br>- 사업추진 소요예상기간 분석 비교</td></tr>
<tr><td>입찰방법<br>제안사유</td><td>* 아래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td></tr>
<tr><td>사업추진간<br>타 기관 등과의<br>협의필요사항</td><td>○ 사업추진간 민원발생가능성,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br>기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작성</td></tr>
<tr><td>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br>(최근 10년간)</td><td>○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br>○ 과거 일괄·대안공사 시행의 경우<br>-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br>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제시)</td></tr>
<tr><td colspan="2">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 3의2)별 검토의견<br>(구체적 근거 제시)</td></tr>
</table>

| 입찰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 *“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기재 |
|---|---|
| 1. -- | |
| 2. -- | |
| 낙찰자결정방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중 택일 |
|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사유 | |
| 낙찰자결정방법 관련 총괄검토의견 | |

※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 공종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 |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 | 사업비 (억 원) |
|---|---|---|---|---|
| | 내용 | 반영사유 | | |
| | | | | |
| | | | | |

○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기술제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 표와 함께 별도 첨부

| 공종 | 실시설계 | | 대안 또는 기술제안 필요 사유 | 사업비 (억 원) |
|---|---|---|---|---|
| | 설계내용 | 반영사유 | | |
| | | | | |
| | | | | |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난에 기재

○ 공기단축을 사유로 입찰방법을 제안하는 경우 패스트트랙(Fast-track)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설계·시공 분리입찰과의 공기비교표, 공기단축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스마트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설기술과 효과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 “예시” )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 발주공사유형 | 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 | 평가기준 | | 자체평가(%) | | | | | | 평가 점수 |
|---|---|---|---|---|---|---|---|---|---|---|
| | | 평점 | 가중치 (%) | A (100) | B (90) | C (80) | D (70) | E (60) | 미제출 (0) | |
|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 |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고기술 요구 | 60 | 50 | | ✓ | | | | | 27.0 |
| |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 | 30 | | ✓ | | | | | 16.2 |
| |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 | | 20 | ✓ | | | | | | 12.0 |
| | | | 100 | | | | | | | 55.2 |
|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 |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 30 | 100 | | | ✓ | | | | 24.0 |
|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 |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 10 | 50 | | ✓ | | | | | 4.5 |
| |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 | 50 | | ✓ | | | | | 4.5 |
| | | | 100 | | | | | | | 9.0 |
| 평 점 | | | | | | | | | | 88.2 |
|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 | -5 | | | | | | | | - |
| 최종평점 | | 100 | | | | | | | | 88.2 |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 별표3의 2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 등급 | 자 체 평 가 기 준 |
|---|---|
| A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 B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
| C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
| D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E |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 8. 분리 도급(발주) 검토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공사 포함 여부:

○ 분리 도급(발주) 예외 해당 여부:

※ 심의요청한 전체공사 중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 도급(발주)해야 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분리 도급(발주) 해당부분의 공사는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분리 도급(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근거 및 사유: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1호의3서식]

#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 의안번호 | 제　　호 |
|---|---|
| 구　　분 |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br>낙찰자결정방법 심의 |

| 건명 | ○○○○ 건설공사 등　 건 |
|---|---|

| 발 주 청 | |
|---|---|
| 제출년월일 | 20 . . . |

## 1. 심의주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 2. 제안사유

○○ 시행부서 등에서 집행계획인 ○○ 공사 등 ( )건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 3. 관련규정

-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이 참고할 규정을 기재

## 4.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요청 사항 (총괄표)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 발주기관 | 입찰방법 |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 예정 |
|---|---|---|---|---|---|---|---|---|
| | | |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
| 1. | | | | | | | | |
| 2. | | | | | | | | |

【작성요령】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등 참조

## 5. 건별 설명자료 따로붙임(00공사 예시참조)

※ 건별설명 자료는 붙임 예시를 참조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사용 가능

붙임 : 건별 설명자료

# 1. ㅇㅇ 건설공사

## 1. 위치도 또는 도면

## 2. 사업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추정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의 연속성, 하자보수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 교 통 량 : 대(목표년도 년도)

##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 5. 기타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 사유( ㅇㅇ 발주청) :

○ 입찰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지 제3호서식]

(앞쪽)

# 심의 의견서

## - ’00년, 제00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심의안건</td><td colspan="3"></td><td>심의요청</td><td></td></tr>
<tr><td>발주기관</td><td colspan="2"></td><td>공사비</td><td></td><td>입찰예정</td><td></td></tr>
<tr><td>공사개요</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심의대상<br>시설기준</td><td>내 용</td><td colspan="5"></td></tr>
<tr><td>충족여부</td><td colspan="5">[ ]매우충족 [ ]충족 [ ]미달 [ ]□매우미달<br>(200%이상) (50%미만)</td></tr>
<tr><td rowspan="3">공사기간 단축<br>필요성</td><td>공사종류</td><td colspan="5">[ ]국제행사 [ ]국책사업 [ ]수해복구<br>[ ]국가안보 [ ]기타</td></tr>
<tr><td>필요성 정도</td><td colspan="5">[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td></tr>
<tr><td>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고난도/고기술</td><td>필요성 정도</td><td colspan="5">[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td></tr>
<tr><td>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신기술/신공법</td><td>필요성 정도</td><td colspan="5">[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td></tr>
<tr><td>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상징성, 예술성<br>창의성 등</td><td>필요성 정도</td><td colspan="5">[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td></tr>
<tr><td>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기타 검토사항<br>·설계변경 빈번<br>·보증책임불명확<br>·자재공급자<br>일괄시행 필요<br>·공사비 절감</td><td>필요성 정도</td><td colspan="5">[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해당없음</td></tr>
<tr><td>사유</td><td colspan="5"></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
|---|---|---|
| 【심의의결】 | 입찰방법 | [ ]요청안 [ ]요청안이 아닌 기타공사 [ ]재심의 |
| | 낙찰자<br>결정방법 | [ ]설계적합최저가 [ ]입찰가격조정 [ ]설계점수조정<br>[ ]가중치기준 [ ]확정가격최상설계 |

【심의의견】

○ 분리 도급(발주)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기타공사로 의결된 경우 작성 불필요)

[ ]적정, [ ]부적정, [ ]기타의견

20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_____(서명 또는 인)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 제4호서식]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심의의결내용

| 번호 | 공사명 | 공사개요 |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 발주기관 | 입 찰 방 법 | |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 예정일 |
|---|---|---|---|---|---|---|---|---|---|
| | | | |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심의 요청 | 심의 의결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2조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4. 30.>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안전관리·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2. 11.]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본조신설 2016. 1. 12.]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4. 23.>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3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

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 3. 18.,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4조(적용대상 등)** 대형공사계약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5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

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9., 2017. 7. 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7. 7. 26.>

1.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4.>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전문개정 2010. 7. 26.]

**제97조(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정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7조의2(일괄입찰 등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6., 2014. 5. 22.>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4. 5. 22.>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16. 9. 13.>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3. 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 삭제 <2009. 11. 26.>

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8. 5.]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 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 9.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 장에 따른 계약 사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16. 9. 13.>

[본조신설 2011. 9. 15.]

[제목개정 2014. 5. 22.]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102조** 삭제 <2007. 9. 20.>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 1. 22.>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1. 24.>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전문개정 2010. 7. 26.]

**제104조** 삭제 <2007. 9. 20.>

**제105조** 삭제 <2009. 8. 5.>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26조(적용대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2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9. 15.>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 9. 20.]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8. 19.]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15.>

[본조신설 2007. 9. 20.]

[제목개정 2011. 9. 15.]

**제130조** 삭제 <2011. 9. 15.>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11. 29.>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4. 삭제 <2011. 9. 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1. 9. 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제안점수·가격점수 산출방법과 가중치, 기술과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 9. 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

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7. 8. 9.>

[본조신설 2007. 9. 20.]

[제목개정 2011. 9. 15.]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 <2011. 9. 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 단가와 수량을 적은 산출내역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3.>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았을 때

④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과정에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9.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4조제3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1. 9. 15.>

③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과정에서의 가격조정 협의 및 재공고입찰 등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33조와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8. 19.]

**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목개정 2014. 5. 22.]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38조(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9.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0. 11. 5.]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된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가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전문개정 2010. 11. 5.]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제81조** 삭제 <2007. 10. 5.>

# 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1224호, 2019. 10. 7, 일부개정]

##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

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5.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6.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7. 영 제6조제5호 라·마·바·사·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

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 1. 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

8.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9. 영 제6조제5호 다·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10.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2.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6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6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11조 제1호부터 5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4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라. 제11조제7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5조(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부터 제11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

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

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
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 제4장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조를 따른다.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준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0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발주청장은 별표3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

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6호의 라목 및 마목의 기술제안에 대한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 시 제34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개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 설명 청취 등
4.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6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기술검토회의 2일 전까지 보고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

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

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6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

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

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

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

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

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1조제6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6 및 별표7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8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
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당일에 별지 제15의1호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text{세부배점} = \frac{(\text{평가지표의 배점} \times \text{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text{모든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

* 세부평가지표 배점은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배점의 합이 평가항목 배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낮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후 순위) 배점에서 감하고, 작은 경우는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동점이 있는 경우 목차 선 순위) 배점에 가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⑩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6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10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37조(입찰안내서)** ①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일괄·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감독
2. 건설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 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 등)**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영 제65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별표14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건설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224호, 2019. 10.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 구분 | 전문분야 | 세부전공분야 |
|---|---|---|
| 토목분야<br>(7개 분야) | 도로 및 교통 |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br>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
| | 철 도 | 철도계획, 철도설계, 궤도, 관제, 측량 및 측지, 교량 |
| | 토목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
| | 토질 및 기초 |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
| | 수자원, 상·하수도 | 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br>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
| | 항만·해안 |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br>해양수공 |
| | 토목시공<br>건설관리 |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br>안전관리 |
| 건축분야<br>(4개 분야) | 건축계획 |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
| | 건축구조 |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
| | 건축시공<br>건설관리 |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br>유지관리, 안전관리 |
| | 건축설비 통신 |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br>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
| 공통분야<br>(1개 분야) | 조경·환경 |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br>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br>소음진동, 환경평가 |
| **합계** | **11개 분야** |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윤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규정에 의한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강령지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심의에서 낙찰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는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 조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제1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13조【교육】**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 전문분야 | 기술제안 과제 | 평가요소 |
|---|---|---|
| 토목구조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교량유지관리비 절감<br>(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교량가설 기술 | · 미관향상, 비용절감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강교용접 등 품질관리 기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특정구조물 개선<br>(대규모 옹벽, 암거 등)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토질 및 기초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터널, 사면 등 유지관리 절감<br>(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터널굴착 및 버럭처리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터널 지보 및 라이닝 적정화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사면처리(안정화 등)적정화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기초시공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차수 및 흙막이공 적정화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연약지반 처리의 적정화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전문분야 | 기술제안 과제 | 평가요소 |
|---|---|---|
| 토목시공 건설관리 | 공정관리 최적화 및 공기단축 | ·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br>·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br>·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br>·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지하매설물, 철도, 고압선, 병원, 학교 등 근접시공 계획 | ·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 | ·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br>·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 ·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토질오염, 악취 대책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br>·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공사현장 주변 지반침하 대책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br>·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
| | 공사현장 및 주변 생태계 대책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자연보호구역 등 희소 동식물 관리방안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방지 기술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
| | 공사 가설계획 | · 제안내용의 적정성<br>·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품질관리의 적정성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br>·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등 |
| 도로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 또는 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와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타당성 |
| | 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포장 평탄도 향상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br>·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차량소음 저감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br>·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균열방지 기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br>·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전문분야 | 기술제안 과제 | 평가요소 |
|---|---|---|
| 수자원, 상·하수도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성능개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항만·해안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성능개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건축계획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계획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br>(생애주기비용 감축) | · 분석방법,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산출 적정성 |
| | 성능개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건축구조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생애주기비용 감축<br>(에너지 절감) | ·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건축구조 성능개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br>·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건축시공<br>건설관리 | 공사관리방안 | ·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br>·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br>·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br>·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전문분야 | 기술제안 과제 | 평가요소 |
|---|---|---|
| | 거푸집 등 가설공사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재료 품질 및 성능개선기술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마감품질 향상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가설계획 수립 | ·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br>·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건축설비 통신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각종 설비의 저소음, 저진동 기술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조경·환경 | 공사비 절감 | ·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br>·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공기단축 | ·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br>·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 ·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br>·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상징성, 예술성 향상 | · 제안내용의 적용 적정성<br>·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별표 4] 기술제안입찰의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일시 | 주의사항 | 비고 |
|---|---|---|---|---|
| 심의계획 설명회 | · 심의일정 및 평가방법 안내<br>· 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안내<br>· 설명회 발표순서 결정 | 평가회의 15일 이전 | 발주청, 입찰사 참석 | |
| 소위원회 구성 | · 심의위원 선정 | 평가회의 10일전 | 입찰사 참석 | |
| 현장답사 | · 현장답사 | 평가회의 8~9일전 | 입찰사 미참석 | |
| 공동 제안서설명회 | · 심의운영계획 설명 (심의기관→심의위원)<br>· 설계내용 설명 (발주기관→심의위원)<br>· 입찰사별 제안서 내용 설명 | 평가회의 8~9일전 | | |
| 기술검토회의 | ·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확정<br>· 기술제안검토서 검증<br>· 기준위반사항 심의<br>·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 | 평가회의 5일전 | 입찰사 미참석 | |
| 제안서 평가회의 | · 입찰참가업체 설계 설명<br>· 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br>· 보충·추가 질의 및 답변<br>· 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br>· 기술제안서 검토 및 토론 (심의위원)<br>· 기술제안서 적격여부 심의 (심의위원)<br>·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br>· 평가결과 공개 | 평가회의 당일 (2박3일)* | | |

[별표 5]

#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자재 등의 장·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1·20>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학술논문집·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홍보용 자료(팜플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 전문 분야 | 세부 검토항목 | A사 | | B사 | |
|---|---|---|---|---|---|
| |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 도로 | ○ 사전 조사의 적정성<br>-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br>-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br>○ 설계기준 적정성<br>○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br>-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br>-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br>○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 | | |
| | ○ 토공설계 적정성<br>○ 배수시설 적정성<br>○ 포장설계 적정성<br>○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
| |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br>○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br>○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 | | |
| |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구조 |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br>-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br>-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br>-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br>○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 |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br>○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br>○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br>○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br>-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br>○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 | |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br>○ 발파패턴의 적정성<br>○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br>○ 갱문형식의 적정성 | | | | |
| |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br>○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br>○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 | | |
| |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br>○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br>○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 |

| 전문 분야 | 세부 검토항목 | A사 | | B사 | |
|---|---|---|---|---|---|
| |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제시 내용 | 관련 근거 |
| |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br>○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
| |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토질 및 기초 |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br>○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br>○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 |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br>○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br>○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토목시공 |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br>○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br>○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br>-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br>-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br>○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br>○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기타 | | | | |
| 환경 |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br>○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
| | ○ 기타 | | | | |
| 조경 | ○ 조경계획의 적정성<br>- 공간구조의 효율성<br>-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 | | |
| | ○ 기타 | | | | |
| 전기설비 | ○ 설비시스템 선정<br>○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기타 | | | | |
| 기계설비 | ○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br>○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br>○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br>○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기타 | | | | |

[별표 6]

#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도로 및 교통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br>○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br>○ 토공계획의 적정성<br>○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br>○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br>○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 구조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br>○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br>○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br>○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기초 |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br>○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br>○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br>○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br>○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br>○ 발파패턴의 적정성<br>○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br>○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br>○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br>○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br>○ 가 시설 설계의 적정성<br>○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건설관리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설비<br>통신 |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br>○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br>○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br>○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br>○ 에너지 절감계획 | |
| 조경·환경·<br>경관 | ○ 조경계획의 적정성<br>○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br>○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 |
| 총 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건축계획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br>○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구조 | ○ 구조계획의 적정성<br>○ 기초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시공 | ◦ 시공계획수립의 적정성<br>-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기계 및 소방 | ○ 설비 시스템 계획<br>○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전기설비·통신 | ○ 설비 시스템 계획<br>○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 | |
| 토목 및 조경·환경·경관 |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br>○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br>○ 흙막이 및 기초계획<br>○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총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표 7]

#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도로 및 교통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br>○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br>○ 토공계획의 적정성<br>○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br>○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br>○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 구조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br>○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br>○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br>○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기초 |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br>○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br>○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br>○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br>○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br>○ 발파패턴의 적정성<br>○ 터널지보공 적용의 적정성<br>○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br>○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건설관리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건축설비<br>통신 |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br>○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br>○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br>○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br>○ 에너지 절감계획 | |
| 조경·환경·<br>경관 | ○ 조경계획의 적정성<br>○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br>○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 |
| 총 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철도계획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br>○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의 적정성<br>○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공사용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 구조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br>○ 구조물계획(교량, 정거장, 지하구조물 등) 수립의 적정성<br>○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br>○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공사 중, 공용 중 민원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 |

| | | |
|---|---|---|
| | ○ 관련계획 및 관련분야를 고려한 구조물 설계<br>○ 친환경 구조물설계 방안<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기초 |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br>○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br>○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br>○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br>○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br>○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br>○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br>○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br>○ 터널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br>○ 터널 방·배수설계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br>○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건설관리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궤도 |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br>○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br>○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br>○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br>○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 적용 시스템 적합성<br>○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br>○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조경·환경·경관 | ○ 조경계획의 적정성<br>○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철도설계의 적정성<br>○ 경관설계의 적정성(교량, 터널, 건축물 등) | |
| 전철·전력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전철·전력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전철·전력분야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
| 신호·<br>통신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신호·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br>○ 신호·통신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 |
| 기계·<br>소방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br>○ 방재(소화, 피난, 구난 등) 계획의 적정성<br>○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
| 총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수자원 | ○ 사전조사의 부합성<br>○ 수리·수문 분석의 적정성<br>○ 시설물(댐, 하구둑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br>○ 하천정비계획의 적정성<br>○ 주변시설물 및 주민의 안전성 고려 여부<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기준 수립 적정성<br>○ 주요구조물 안전성 및 내구성 등<br>○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br>기초 |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br>○ 토질 특성 분석의 적정성<br>○ 주요시설물 기초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br>○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 |
|---|---|---|
| 토목시공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기계 및 전기 | ○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br>○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br>○ 에너지 절감방안,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환경 및 조경 | ○ 사전조사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br>○ 경관계획의 적정성<br>○ 조경 및 생태환경 시설계획의 적정성<br>○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환경 친화적인 설계의 적정성 | |
| 총계 |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항만 및 해안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평면계획의 적정성<br>○ 단면선정의 적정성<br>○ 구조물 세부설계의 적정성<br>○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br>○ 부대시설의 적정성<br>○ 준설 및 매립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 설계기준의 적정성<br>○ 구조물 단면계산의 적정성 | |

| | | |
|---|---|---|
| |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의 적정성<br>○ 가시설물의 안전성<br>○ 인접 구조물 안전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기초 |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의 산정의 적정성<br>○ 설계기준의 적정성<br>○ 기초지반처리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br>○ 계측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부대시설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공사관련 계약관리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해상교통 및 안전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해상교통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공사중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br>○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br>○ 해상사고 대책방안의 적정성 | |
| 해양환경 | ○ 해양·해저 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해양 보존을 고려한 시설계획의 적정성<br>○ 해양환경 보전의 적정성<br>○ 해양 구조물 및 자원 이용의 적정성 | |
| 환경 및 조경 |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친수성 시설계획의 적정성<br>○ 환경 친화적인 항만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총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건축계획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br>○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구조 | ○ 구조계획의 적정성<br>○ 기초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시공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기계 및 소방 | ○ 설비 시스템 계획<br>○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전기설비·통신 | ○ 설비 시스템 계획<br>○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 및 조경·환경·경관 |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br>○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br>○ 흙막이 및 기초계획<br>○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br>○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총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공항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공항계획 | ○ 사전조사의 적정성<br>○ 설계기준 및 평면배치의 적정성<br>○ 포장계획의 적정성<br>○ 배수계획의 적정성<br>○ 공항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br>○ 토공계획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br>○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기초 |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br>○ 설계기준의 적정성<br>○ 기초지반(침하대책)의 검토 적정성<br>○ 비탈면 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토목구조 | ○ 구조물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구조설계의 적정성<br>○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 | ○ 건축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br>○ 건축구조의 적정성<br>○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br>○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기계/전기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급유시설의 적정성<br>○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br>○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br>○ 항공등화시설의 적정성<br>○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
| 정보통신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br>○ 정보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 ○ 정보통신시설 계획의 적정성<br>○ 항행안전무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환경 |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
| 총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상하수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 배점기준 |
|---|---|---|---|
| 상하수도 | 처리장/<br>하수관로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br>○ 설계 기준의 적정성<br>○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br>○ 부대시설계획<br>○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br>○ 관로정비 개선방향<br>○ 관로정비 계획수립의 적정성<br>○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br>○ 저탄소 녹생성장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정수장/<br>상수관로 |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br>○ 설계 기준의 적정성<br>○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br>○ 부대시설계획<br>○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br>○ 관로계획의 적정성<br>○ 관로정비의 적정성<br>○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br>○ 저탄소 녹생성장 도입의 적정성<br>○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br>건설관리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br>○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br>○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br>○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br>○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
| |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br>○ 사회적 가치실현 | |
| 토질 및 기초 | ○ 지반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설계지반정수)의 적정성<br>○ 굴착방법 선정 및 가시설의 안정성<br>○ 구조물 및 관로 기초계획의 적정성<br>○ 지하수 처리계획<br>○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 |
| 토목구조 | ○ 구조설계 제반기준 수립의 적정성<br>○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설계의 적정성<br>○ 방수 및 방식계획의 적정성<br>○ 기타 시설물 계획<br>○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계획 | ○ 사전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의 적정성<br>○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br>○ 건축계획의 적정성<br>○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br>○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
| 조경·환경·경관 | ○ 조경계획의 적정성<br>○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br>○ 경관설계의 적정성(건축 등) | |
| 기계 | ○ 공정 및 설비 구성의 적정성<br>○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br>○ 건축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br>○ 설비의 경제성 및 합리성 | |
| 전기 및 계측제어 |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br>○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br>○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br>○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 | |
| 총계 | | 100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 [별표 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 1. 일반기준

가. 기술제안서는 제시된 기술제안 분야에 대하여 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그밖에 발주청에서 정한 사항 등의 과제목록(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평가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하여 제안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공법, 특허자재 적용을 검토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특허 및 특정 공사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술권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등의 처리 및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마.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으로 인·허가 및 각종 협의(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안전과 관련된 기술제안은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기술제안자는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 품질관리비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과 기술제안에 따라 변경된 공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차. 기타 발주청이 제안 받고자 하는 기술제안 내용, 성능기준 및 관련지침 등을 제시한다.

### 2. 제안도서 작성 세부기준

가.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기술제안요약서, 기술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등으로 제출부

수와 쪽수을 정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의 규격, 지질 및 제본방식, 표지, 목차, 본문 등의 구성순서, 번호부여방법, 글자색,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작성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등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표기한다.

라. 모든 제안서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자. 기술제안요약서는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평가 시 기술제안 요약서만으로도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 별도로 제본하고 표지는 기술제안서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차. 각종 통계나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췌, 참고문헌을 각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한다.

카. 기술제안에 대한 증빙 및 보충자료가 부속서류 등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해당 기술제안서 하단에 명기한다.

파. 제출도서는 원칙적으로 흑백인쇄만 허용하되, 필요시 칼라도면의 내용 및 개수, 형식 등을 별도로 제시한다.

### 3.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가.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이며 실시설계내역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산출물량, 금액 등 기술제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의 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산출물량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수량으로 한다.

라. 산출금액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비용으로 한다.

마. 법정경비율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사.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의 수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자재 금액을 산출하며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아.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를 대체하는 신규자재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자재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해당 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은 감한다.

자. 산출내역에 대한 주요내용(수량, 금액 등)은 기술제안서의 해당 항목 편에 명기한다.

차.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타. 필요시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 [별표 9]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일반사항 | | |
|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 공사설명서 | |
| 입찰에 관한 사항 | | |
| 3 | 입찰서 목록 | |
| 4 | 공사입찰 유의서 | |
| 5 |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계약에 관한 사항 | | |
| 6 |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기술에 관한 사항 | | |
| 11 | 설계지침 | |
| 12 | 시공지침 | |
| 13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
| 평가에 관한 사항 | | |
| 16 | 평가기준 | |
| 17 | 배점표 | |
| 18 | 평가지침 | |
| 19 | 감점기준 | |
| 참고 | | |
| 20 | 내역서 등 참고자료 | |

[별표 10] 감점기준

#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 감점사항 | 감점 | 감점기간 |
|---|---|---|
|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3 | 당해심의 |
|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1년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5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 | 감점부과 결정일부터 2년 |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마.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한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감점 부과시기

가. 모든 감점의 부과시기는 총점차등으로 인한 순위 변동이 없도록 총점차등 전에 적용한다.

나. 심의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점 부과시기는 1심 판결 결과가 통보된 즉시 적용한다.

다. 심의위원 사전접촉 감점은 심의위원 접촉신고 확인 후 즉시 감점을 부과한다.

4. 감점 적용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5. 감점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별표 11]

##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 공사설명서 | |
| 3 | 입찰서 목록 | |
| 4 | 공사입찰 유의서 | |
| 5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6 |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11 | 설계지침 | |
| 12 | 시공지침 | |
| 13 |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14 | 공사관리지침 | |
| 15 |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 |
| 16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
| 17 | 설계배점표 | |
| 18 | 설계평가방식 | |
| 19 | 감점기준 | |
| 20 | 토질조사 보고서(단,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활용성이 낮은 경우 생략가능) | |

2. 철도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 공사 설명서 | |
| 3 | 입찰서 목록 | |
| 4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 | |
|---|---|---|
| 5 | 공사계약 특수조건(1) | |
| 6 | 공사계약 특수조건(2) | |
| 7 |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8 |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 |
| 9 |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특별시방서) | |
| 10 | 설계지침 | |
| 11 | 시공지침 | |
| 12 | 설계서 작성지침 | |
| 13 | 관리지침 | |
| 14 | 관리계획서 작성지침 | |
| 15 | 입찰서 평가기준 | |
| 16 | 입찰서 감점기준 | |
| 17 | 기본계획보고서 | |
| 18 | 기본계획설계도면 등 | |
| 19 | 지질조사 자료 | |

3. 수자원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 |
| 2 | 공사입찰 유의서 | |
| 3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4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5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6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7 |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8 | 기계경비 지수조정 특수조건 | |
| 9 | 설계지침 | |
| 10 | 시공지침 | |
| 11 |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 |
| 12 | 입찰도서 작성지침 | |
| 13 | 지질조사 자료 | |
| 14 |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기준 | |

## 4. 항만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 공사설명서 | |
| 3 | 입찰서 목록 | |
| 4 | 공사입찰 유의서 | |
| 5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6 |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11 | 설계지침 | |
| 12 | 시공지침 | |
| 13 |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14 | 공사관리지침 | |
| 15 |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 |
| 16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
| 17 | 설계배점표 | |
| 18 | 설계평가방식 | |
| 19 | 감점기준 | |
| 20 | 기초자료 조사용역(지질조사, 측량보고서, 구조검토서 등) 보고서 등 | |
| 21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서류 | |
| 22 |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
| 23 | 현장설명서 자료배포 | |

## 5. 건축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 |
| 2 | 공사설명서 | |
| 3 | 공사입찰유의서 | |
| 4 | 계약에 관한 사항 | |
| 5 | 설계 및 시공지침 | |
| 6 |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7 | 관리지침 | |
| 8 |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 |
| 9 | 부록(토질조사) | |

* 입찰비용 경감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스템은 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구축토록 입찰안내서에 명시

[별표 12]

##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1. 도로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설계보고서 | |
| 2 | 설계요약보고서 | |
| 3 | 지반해석보고서 | |
| 4 |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 |
| 5 | 설계도 | |
| 6 | 공사관리계획서 | |

2. 철도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기본설계 보고서 | |
| 2 |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 |
| 3 | 기본설계도면 | |
| 4 | 선로 종단면도 | |
| 5 | 선로 평면도 | |
| 6 | 구조 등 각종계산서 | |
| 7 | 지반해석보고서 | |
| 8 | 사업수행계획서 | |
| 9 | 산출내역서 | |

3. 수자원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기본설계보고서 | |
| 2 | 기본설계 요약보고서 | |
| 3 | 지반해석보고서 | |
| 4 | 설계도면 | |
| 5 | 공사관리계획서 | |

## 4. 항만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설계도면 | |
| 2 | 기본설계 보고서 | |
| 3 | 기본설계 설명서 | |
| 4 | 지반해석보고서 | |
| 5 | 공사관리계획서 | |

## 5. 건축분야

| 번호 | 자료명 | 비고 |
|---|---|---|
| 1 | 기본설계 보고서 | |
| 2 | 설계도면 | |
| 3 | 실시설계 계획서 | |
| 4 | 지반해석 보고서 | |
| 5 | 공사관리계획서 | |

[별지 제4호서식]

#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 의안번호 | 제 호 |
|---|---|
| 구 분 | |

| 건 명 | |
|---|---|

| 심의요청인 | |
|---|---|
| 제출연월일 | |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기타공사), 건설기준심의, 기술개발보상심의 및 신기술지정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 기 술 제 안 평 가 심 의 요 청 서

| 의안번호 | 제 호 |
|---|---|
| 구 분 | |

| 공 사 명 | |
|---|---|

| 발 주 청 | |
|---|---|
| 제출년월일 | 20 . . . |

※ “구분”란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1. 공사명 :

2.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예시)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기술제안 평가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 조 치 결 과 서

| 지적위원 |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 | 지적분야 | ② 8 |
|---|---|---|---|
|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 ③ 지적사항 : 280 | | |

조치결과 :

| 지적위원 | 4 | 지적분야 | 8 |
|---|---|---|---|
| 지적사항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 280 | | |

조치결과 :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지적사항 분류는 건설교통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심의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 1. 조치건수

| 구 분 | 조치 내용 | 조 치 가 능 | | | | 조치곤란 | 비고 |
|---|---|---|---|---|---|---|---|
| | | 조치완료 | |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 | 착공후 공사중 반영 | | |
| | | 적정 | 미흡 | | | | |
| 건축계획분야 | 건 | | 건 | | | | |
| 건축구조분야 | 건 | | | | | | |
| | 건 | | | | | | |
| 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

※ 조치내용, 조치가능, 조치곤란에는 건수를 기입

※ 조치완료(적정)외에는 2항의 양식에 의거 구체적인 향후조치계획 또는 곤란사유를 작성 제출

## 2. 향후조치예정인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

가. 조치완료중 미흡

| 구 분 | | | 지적내용 | 구체적인조치계획 | 비고 |
|---|---|---|---|---|---|
| 분야별 | 건수 | 지적번호 | | | |
| 건축계획분야 (○○○위원) | | ○ 번항 | | | |
| | | | | | |
| 계 | | | | | |

나.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할 사항

| 구 분 | | | 지적내용 | 구체적인조치계획 | 비고 |
|---|---|---|---|---|---|
| 분야별 | 건수 | 지적번호 | | | |
| 건축계획분야 (○○○위원) | | ○ 번항 | | | |
| | | | | | |
| 계 | | | | | |

다. 착공후 공사중 반영

| 구 분 | | | 지적내용 | 구체적인조치계획 | 비고 |
|---|---|---|---|---|---|
| 분야별 | 건수 | 지적번호 | | | |
| 건축계획분야<br>(○○○위원) | | ○ 번항 | | | |
| | | | | | |
| 계 | | | | | |

라. 조치곤란

| 구 분 | | | 지적내용 | 구체적인조치계획 | 비고 |
|---|---|---|---|---|---|
| 분야별 | 건수 | 지적번호 | | | |
| 건축계획분야<br>(○○○위원) | | ○ 번항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 종합조치결과

| 구 분 | 지적내용 | 조치내용 | 비 고 |
|---|---|---|---|
| 건축계획분야<br>(○○○위원)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구분 : 해당분야 및 위원 기입

※ 비고 : 관련근거, 해당도면등 기입

[별지 제9호서식]

# 평 가 요 령 서

가. 일반사항

| | |
|---|---|
| 공 사 명 : | 감 리 자 : |
| 공사개요 : | 계약금액 : |
| 시 행 청 : | 공사기간 : |
| 시 공 자 : | 현장대리인: |

나. 평 가 서

| 구 분 | 평 가 내 용 | 반영정도 | 참고자료 |
|---|---|---|---|
| 1. 심의결과 조 치 | 가. 지적사항의 시공반영 | (수, 우, 미, 양 등으로 표시) | (참고서류 사본, 도면 등 첨부) |
| 2. 설계변경 | 가. 설계변경심의 지적 사항의 시공반영<br>나. 심의대상인 설계변경 현황 | | |
| 3. 신 공 법 적 용 | 가. 법에 의한 신공법적용<br>나. 기타 신공법적용 | | |
| 4. 시공수준 | 가.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등의 수준 | | |

[별지 제10호서식]

# 제·개정규정(조례) 현황

위원회명 : ㅇㅇ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원원회

| 구 분 | 규정(조례)명 | 제정(개정)일 | 주요골자 | 비 고 |
|---|---|---|---|---|
| | | | | |

(주) : 1. 구분은 제정 또는 개정을 표시한다.
2. 제·개정 규정(조례)내용을 별도로 첨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지방(특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명 : ○○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분야 | 공사명<br>(용역명) | 공사개요 | 공사<br>금액 | 용역<br>금액 | 입찰<br>방법 | 심의일 | 심 의<br>위원수 | 발주<br>기관 | 비고 |
|---|---|---|---|---|---|---|---|---|---|
| | | | | | | | | | |

(주) : 1. 분 야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전기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공사개요 : 공사규모, 구조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3. 공사기간 : 월단위로 표시한다.
4. 입찰방법 : P.Q, P.P,기술가격분리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표시한다.
5. 발주부서 : 시(도),국, 과단위까지(전화번호 포함) 기재한다.
6. 설계심사이외의 심의실적(사후관리평가, 기술진단등)은 별도로 첨부한다.

[별지 제12호서식]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 청 렴 서 약 서

○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토목시공 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기준 | 세부 배점 | 세부평가 |
|---|---|---|---|
|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 | 미표시*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 –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 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 –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 –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br>1위 ○○사 2위 △△사 3위 □□사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상기 동일방법** |
| **소 계** | | | |
| **합계** | | | |

*** 세부배점은 평가위원들에게 미공개**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 설계평가 사유서

○ 안 건 명 :

| 평가 분야 | 평 가 항 목 | 평가 사유서 |
|---|---|---|
| 토목시공 (10) | ◦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br>◦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br>◦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br>◦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br>◦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1서식]

#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양식)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전문분야) : 도로 및 교통

| 전문분야 | 평가지표 | 세부평가지표 | 평가지표내 우선순위 | 세부배점 |
|---|---|---|---|---|
| 도로 및 교통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3점)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 미표시 |
| | |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 〃 |
| |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 | 〃 |
|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5점) |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교차로 계획 | | 〃 |
| | | .최적 노선의 경제성(B/C) | | 〃 |
| | |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 | |
|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4점) | .평면선형 설계의 적정성 | | |
| | |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 |
| | |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성 | | |
| | 토공계획의 적정성(3점) | .절토 및 성토의 균형 | | |
| | |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 | |
|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3점) |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 | |
| | |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 | |
|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3점) |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 | |
| | |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부대시설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 교통사고 방지대책 |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4점)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 |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년 월 일

발주청(입찰참여업체) 대표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 기 술 제 안 서

<table>
<tr><td>제안번호</td><td>00분야 - 00</td><td>기술적 과제</td><td colspan="4"></td></tr>
<tr><td>제안제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제<br>안<br>내<br>용</td><td colspan="2">원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td><td colspan="4">제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td></tr>
<tr><td>특징<br>(장단점)</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기대<br>효과</td><td>공사비</td><td>LCC</td><td>성능</td><td>품질</td><td>공기</td><td>기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위의 칸에는 ⇧, ⇩, - 중 택일(기타효과는 개략적으로 작성)<br><br>o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br>(단,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6">o 검증방법<br>- (시공 중이나 준공 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td></tr>
<tr><td>제안의<br>적정성</td><td colspan="6">o 기술적 적합성<br>o 연계성<br>o 시공성</td></tr>
<tr><td>근거<br>자료</td><td colspan="6"></td></tr>
</table>

[별지 제17호서식]

# 기술제안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평가대상 | 00 공사명 |
|---|---|
| 평가분야 | 분 야 |
| 소위원 | (인) |

| 평가 분야 | 평가항목(기술제안과제) | 배점 | 업체별 평가점수 | | | |
|---|---|---|---|---|---|---|
| | | | A사 | B사 | C사 | D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 안 건 명 :

| 평가분야 | 평가항목(기술제안 과제) | 평가 사유서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참가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서 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 의안번호 | 제 호 |
|---|---|
| 구 분 | 설계심의 감점 심의 |

| 건 명 | |
|---|---|

| 심의요청기관 | |
|---|---|
| 제출연월일 | |

# 〈 건 명 〉

##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총공사비 :

## 2. 추진경위

○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신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

## 3. 신고 내용

○ 신고접수일 :
○ 신고대상 :
○ 신고내용 :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 사실여부 확인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조사내용을 작성

○ 검토결과 : 감점 대상 여부 및 부과감점·감점기간 작성

## 5. 기타 참고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신의 참가업체 현황 및 점수 등 참고사항

# 6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시행 2017. 1. 16.] [조달청지침 제616호, 2017. 1. 16.,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
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
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
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정하는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설계점수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을 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

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

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 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②〈삭제〉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자 중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 제4장 보 칙

**제21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16호, 2017.1.16>

이 지침은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 등급<br>(유형) | 기술적 난이도 | 설계가중치 |
|---|---|---|
| A<br>기술<br>강조형 |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br>-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br>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br>-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br>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br>-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br>④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br>-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 50초과<br>~<br>80%이하 |
| B<br>균등<br>평가형 |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 이상, 방재 1등급 터널에 한함)<br>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br>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br>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br>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br>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br>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br>⑧ 가스공급시설 | 40%이상<br>~<br>60%이하 |
| C<br>가격<br>강조형 | ①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 20%이상<br>~<br>50%미만 |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30%이상~50%미만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 7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시행 2018. 12. 1.] [조달청지침 제9690호, 2018. 11. 29.,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부속서류"란 기술제안 개요 또는 증빙자료 등 기술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4. '기술자문위원회'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의 심의·평가 및 실시설계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 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3.>

1. 입찰안내서

2.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3.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제안서
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제6조(기술제안서의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
   가. [별표 1]에 의한 요약서
   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
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②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감안 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규격, 양면)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은 [별표 2]또는 [별표 3]과 같다.

②배점기준 등은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평가방법)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②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자로 통지 받은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4조(재심의)**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제안의 반영)** ①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

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제16조(기타사항)**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며,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경비)** 기술제안입찰 등의 심의·평가를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제18조(부칙)** 이 기준은 2008년 7월 22일 이후 공고하는 기술제안입찰 등 공사에 적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690호, 2018. 11. 29.>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기술제안서 요약

| | | | |
|---|---|---|---|
| ○ 입찰공고번호 | | ○ 입찰일시 | 2008년 0월 0일 00:00 |
| ○ 수요기관 | | ○ 낙찰방식 | |
| ○ 공 사 명 | ○ ○ ○ 청사신축공사 | | |

| 기술제안 내용 요약 |
|---|
|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
|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 3. 공기단축방안 |
| 4. 공사관리방안 |
|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일 경우) |
|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
| 첨부 1)<br>2) |

[별표 2]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 | 평가요소 | 배점 |
|---|---|---|---|---|
| 기술점수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6 |
| | |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5 |
|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5 |
|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5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5 |
|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 | | | ②공기단축 | 6 |
| | 공사관리 방안 | 24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3 |
|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3 |
| | |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3 |
| | |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3 |
|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
|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3 |
|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3 |
| | 산출내역 | 12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6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100 | | 100 |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3]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항목 | | | 평가요소 | 배점 |
|---|---|---|---|---|
| 기술점수 | 설계 계획 | 15 | ①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 | | ②설비계획의 적정성 | 5 |
| | | | ③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5 |
| | 공사비 절감방안 | 32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6 |
| | |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5 |
|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5 |
|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5 |
| | 생애주기 비용 개선방안 | 20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5 |
| | | | ④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공기단축 방안 | 12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 | | | ②공기단축 | 6 |
| | 공사관리 방안 | 21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3 |
|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3 |
| | |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3 |
| | |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3 |
|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2 |
|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2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100 | | 100 |

※ 공사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요소별로 ±20%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별표 4〕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항목별 평가지침

## □ 공사비 절감방안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br>사전조사의<br>부합성(관련기관<br>협의 등) | 6 | • 사전조사의 내용<br>-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br>- 사전조사 내용의 현실성/충실도<br>• 사전조사 내용과 공사비절감 제안요소들과의 부합성<br>- 공사비절감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br>※ 평가등급배분 및 가중치 참조<br>(별지6호) |
| ②<br>구조물/공법 계획의<br>적정성 | 6 | • 주요 구조물/공법 계획<br>- 공사비절감 효과를 위한 구조물과 공법의 개선·변경이 충실히 제시되었는지의 여부<br>• 공사특성 및 현장조건과의 일치성<br>- 당초의 설계의도를 준수하며 공사특성과 현장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의 여부 | 상동 |
| ③<br>신기술/신공법<br>도입의 적정성 | 5 | • 적용한 신기술/신공법의 적합성<br>- 당해 공사에 실제 적용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br>• 신기술/신공법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내용<br>-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사유 및 효과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상동 |
| ④<br>기술제안의<br>환경친화성 | 5 | •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br>- 제시하는 기술의 친환경성에 대한 분석 수준의 구체성<br>• 친환경성 확보/향상으로 인한 환경비용 및 공사비절감 수준<br>- 건설폐기물 저감/재활용 측면<br>- CO2 발생량 저감 측면<br>-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 측면<br>- 기타 환경적 비용 저감 측면 | 상동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⑤<br>장래계획과 부합성 및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 5 | •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 수준<br>- 공사/사업의 연속성과 확장계획, 기존 시설들과의 간섭/연계 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는지의 여부<br>• 장래계획 및 기존시설 분석과 기술제안 내용의 연계성<br>- 분석 내용이 제시하는 기술제안과 일치되며, 기술제안으로 인해 공사비절감이 달성되는지의 여부<br>※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⑥<br>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5 | • 방재/재난 도입의 기술요소<br>- 방재/재난 도입기술의 우수성 및 효과(공사비절감)에 대한 판단<br>•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br>- 기술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구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의 여부<br>※필요시 건축사와의 협의 등이 수행되었는지도 평가에 반영 | 상동 |
| [합 계] | 32 | | |

##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br>분석기준<br>및 방법의<br>적정성 | 4 |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br>-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br>-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br>-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br>-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br>-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br>•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br>-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의 적정성<br>- 분석절차의 적정성<br>- 적용모델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br>RFP<br>요구조건<br>반영결과 | 5 |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br>-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br>(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br>- 대안설계(기본설계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③<br>비용절감을<br>위한<br>유지관리<br>계획<br>제안의<br>적정성 | 5 |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br>-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br>-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br>•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br>-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br>-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상동 |
| ④<br>비용산출의<br>적정성 | 6 |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br>-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br>(내역서와 일치여부)<br>-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br>-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br>•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br>-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br>-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br>•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br>-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상동 |

## □ 공기 단축방안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br>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br>-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br>- 공사불능일 적용계획<br>-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br>-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br>-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br>공기단축 | 6 | •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br>•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br>※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br>※'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상동<br>*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9〕 참조 |

## □ 공사 관리방안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br>시공중<br>재난/구난계획<br>및 지장물처리<br>계획 | 3 | •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br>•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br>시공중<br>구조물/공사지역<br>안전계획 | 3 | •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br>-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br>-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br>-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br>-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육 계획<br>•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br>-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br>-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동선계획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③<br>시공중<br>장비/자재/인력<br>운영계획 | 3 |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br>•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br>•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상동 |
| ④<br>사업관리운영시<br>스템의 적정성 | 3 |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br>-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심 관리요소)<br>-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br>•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br>-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 상동 |
| ⑤<br>작업장 및<br>현장주변<br>가설계획의<br>적정성 | 3 | •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br>-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br>-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br>-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br>-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⑥<br>건설공해 및<br>민원 방지계획 | 3<br>(2) | •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의 적정성<br>-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성된 내용 평가<br>•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주변환경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br>•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br>-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br>-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br>-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스템<br>-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⑦<br>리스크분석 및<br>관리계획의<br>적정성 | 3<br>(2) | •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br>-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br>-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br>-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br>-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⑧<br>사업수행조직<br>구성의 적정성 | 3<br>(2) | •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br>•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br>•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br>-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 상동 |

※ ( )안의 배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임

## □ 산출내역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산출물량/금액 /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금액의 적정성을 평가<br>-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br>-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br><br>•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br><br>•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br>(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6 |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br>•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

[별표 5]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별 평가기준

□ 공사비절감방안 – [별표 4] 의 내용과 동일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 [별표 4] 의 내용과 동일

□ 공기단축방안 – [별표 4] 의 내용과 동일

□ 공사관리방안 – [별표 4] 의 내용과 동일

□ 설계계획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br>시설계획의<br>적정성 | 5 | •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br>•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br>• 건축계획의 적정성<br>• 구조계획의 적정성<br>• 토목계획의 적정성<br>• 조경계획의 적정성<br>•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br><br>•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br>설비계획의<br>적정성 | 5 | •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br>•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br>•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br>•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
| ③<br>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5 | •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br>-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br>-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br>-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br>-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br>-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별표 6〕

# 제안서 평가 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3 | 1 | 1 | (1)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 6 | 1 | 1 | 2 | 1 | 1 |
| 7 | 1 | 1 | 3 | 1 | 1 |
| 8 | 1 | 2 | 3 | 1 | 1 |
| 9 | 1 | 2 | 3 | 2 | 1 |
| 10 | 1 | 2 | 4 | 2 | 1 |
| 11 | 1 | 2 | 5 | 2 | 1 |
| 12 | 1 | 3 | 5 | 2 | 1 |
| 13 | 1 | 3 | 5 | 3 | 1 |
| 14 | 1 | 3 | 6 | 3 | 1 |
| 15 | 2 | 3 | 6 | 3 | 1 |
| 16 | 2 | 3 | 6 | 3 | 2 |
| 17 | 2 | 3 | 7 | 3 | 2 |
| 18 | 2 | 4 | 7 | 3 | 2 |
| 19 | 2 | 4 | 7 | 4 | 2 |
| 20 | 2 | 4 | 8 | 4 | 2 |

## 2. 차등비율

| 구분 | 평가항목별 차등 | 심의위원별 차등 | 총점 차등 |
|---|---|---|---|
| 차등비율 | 등급별(수~가)5~10% | 5~10% | 5~10% |

*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2조 적용
* 세부평가방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별표 7〕

# 기술제안입찰 등의 실격처리기준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실격여부 처리 |
|---|---|---|---|
| 공사비절감 방안 | '입찰안내서'의 공사비절감방안 작성기준 | - 설계기술심의회에서 '입찰안내서'에 정한 최소 성과요구 수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 1/2 이상의 동의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실격 처리<br><br>-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기술제안 서'의 항목별, 요소별 내용이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분야 평가위원 2/3 이상(평가위원이 2인 인 경우는 전원) 동의 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부분을 실격(0점)처리할 수 있음 | 공사비절감방안 0점 처리 (배점 32점) |
| 생애주기 비용개선 방안 | '입찰안내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작성기준 | |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0점 처리 (배점 20점) |
| 공기단축 방안 | '입찰안내서'의 공기단축방안 작성기준 | | 공기단축방안 0점 처리 (배점 12점) |
| 공사관리 방안 | '입찰안내서'의 공사관리방안 작성기준 | | 공사관리방안 0점 처리 (배점 24(21)점) |
| 산출내역 | '입찰안내서'의 산출내역 작성 기준 | | 산출내역 0점 처리 (배점 12점) |
| 설계계획 | '입찰안내서'의 설계계획 작성기준 | | 설계계획 0점 처리 (배점 15점) |

① 기술제안서 전체의 실격이 아니더라도, 평가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해당되는 평가항목 및 그 평가항목에 속하는 평가요소만을 실격으로(0점) 처리할 수 있음

② 실격제 평가(Pass or Fail)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처리방법 등은 해당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세부적인 실격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평가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별표 8〕

#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 항 목 | 감 점 |
|---|---|
|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br>•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 쪽당 : 0.1점<br>(최대 0.5점) |
|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쪽당 : 0.1점<br>(최대 0.5점) |
|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br>• 이미지 파일 삽입 위배<br>• 바탕면 및 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br>(MAC작업 금지) | |
| • 조감도 및 투시도, 시뮬레이션 사용 금지 | 쪽당 : 0.2점<br>(최대 1점) |
| • 기술제안서 규격 제한 기준 위배<br>• 기술제안서작성, 인쇄방법, 종이 재질 위배 등<br>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 쪽당 : 0.1점<br>(최대 0.5점) |
| • 본 과업구간의 현장사진 이외의 모든 사진 사용 시 | 쪽당 : 0.1점<br>(최대 0.5점) |
| 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1점 |
| 4.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 금지 위배 | 1점 |

※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처리

〔별표 9〕

# 공기단축 평가기준

| 구 분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 |
|---|---|---|---|---|---|---|
|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 총공사 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여 총공사 일수 산정

※ 공사의 제반특성상 별도의 공기단축이 요구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과도한 공기단축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기단축 평가기준을 조정하거나 공기단축 일수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 ⑧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상남도 공고 제2020 - 635호

#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554호, 2019.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경상남도지사

##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우리 도 및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거나 사업분야 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3.10.)「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제3항에 따라 본 기준을 시·군에서 준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⑥ 삭제

⑦ 발주청은 규칙 제28조에서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 받은자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제한규정(상위 업체에만 입찰 참여허용)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도에서 정한 기준을 시·군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부 칙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1] Ⅲ. 평가항목 및 배점, 나. 용역수행실적 중 “(4)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 방재, 항만·어항, 공원·조경레저, 폐기물, 환경, 블록구축 및 유수율제고)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8-870호, 2018.5.31),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8-871호, 2018.5.31.) 및 「경상남도 해당분야별(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8-872호, 2018.5.31.)은 폐지한다.

제4조(적용예외) 이 기준 시행일 이전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2020. 3.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 적용례) [별표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3호에 따라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Ⅲ. 평가항목 및 배점 라. (3)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되었거나 시행일 이후 준공된 용역사업은 입찰공고일이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2] Ⅲ. 평가항목 및 배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별표 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경 상 남 도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규칙 별표2〕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3.10.)「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 (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6.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의 업체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선정된 용역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10.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붙임 8 예시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 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실적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단,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라. 책임기술인의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3년 이상, **[실적]**은 3건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단,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은 퇴직 후, 책임기술인은 15년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발주청·감독기관의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때" 에는 발주청·감독기관 출신으로 보지 않고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 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 )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용역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한다.

* 용역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 × 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차.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카.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6]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단, 책임기술인은 지분율이 높은 공동도급자(대표회사)의 참여기술인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직위에 1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등의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예시) 공동이행 방식 산출방법

| 구 분 | 배치기술인(명) | 공동도급자 배치기준 | |
|---|---|---|---|
| | | A 업체(대표회사) (60%) | B업체 (40%) |
| 산출방법 | 11명 | 11명× 60%=6.6≒7명 | 11명×40%=4.4≒4명 |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사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용역수행실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Ⅲ.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배점 | 평가방법 |
|---|---|---|---|---|
| 합 계 | | | 100 | |
| 가. 참여기술인 [50] | (1) 책임기술인 〈15〉 | ㈎ 등급 | 3 | 절대평가 |
| | | ㈏ 경력 | 4 | |
| | | ㈐ 실적 | 5 | |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 등급 | 4 | 절대평가 |
| | | ㈏ 경력 | 7 | |
| | | ㈐ 실적 | 8 |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 등급 | 4 | 절대평가 |
| | | ㈏ 경력 | 5 | |
| | | ㈐ 실적 | 5 | |
| | (4)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 교육훈련 | 1 | 절대평가 |
| | | ㈏ 전차용역수행실적 | 1 | |
| 나. 용역수행실적 [15]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 6 | 절대평가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 6 | |
| | (3) 전차용역 수행실적 | | 1 | |
| | (4) 용역수행 성과 | | 2 | 상대평가 |
| 다. 신용도 [10] |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 | 7 | 절대평가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1) 개발실적 | | 2 | 절대평가 |
| | (2) 투자실적 | | 10 | |
| | (3) 활용실적 | | 3 | |
| 마. 업무중복도 [10] | (1) 책임기술인 | | 3 | 절대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 4 |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 2 | |
| | (4) 실무기술인 | | 1 | |
| 가점[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절대평가 |
| | 젊은기술인 참여 | | 0.2 | |

## 1. 분야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6">가.<br>참<br>여<br>기<br>술<br>인</td><td>(1)책임기술인<br><br>(가)등급</td><td>(15)<br><br>3</td><td>•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이 전문분야는 [붙임1]에 따른다.<br>- 등급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특급기술인</td><td>고급기술인</td><td>중급기술인</td></tr><tr><td>점 수</td><td>3.0</td><td>2.0</td><td>1.0</td></tr></table></td></tr>
<tr><td>(나)경력</td><td>4</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br>~14년이상</td><td>14년미만<br>~13년이상</td><td>13년미만<br>~12년이상</td><td>12년미만</td></tr><tr><td>점 수</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table></td></tr>
<tr><td>(다)실적</td><td>5</td><td>-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table><tr><td>실 적</td><td>10건이상</td><td>10건미만<br>~9건이상</td><td>9건미만<br>~8건이상</td><td>8건미만<br>~7건이상</td><td>7건미만</td></tr><tr><td>점 수</td><td>8.0<br>(5.0)</td><td>7.2<br>(4.5)</td><td>6.4<br>(4)</td><td>5.6<br>(3.5)</td><td>4.8<br>(3)</td></tr></table>※ ( )의 배점은 기술・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한다.</td></tr>
<tr><td>(라)기술능력 및<br>업무관리능력</td><td>3</td><td>-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처리)<br>*(붙임8)은 예시로 활용<br><table><tr><td>등 급</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tr><td>점 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용역비 5억원 미만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td></tr>
<tr><td>(2) 분야별<br>책임기술인</td><td>(19)</td><td>•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1]에 따른다.<br>•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td></tr>
<tr><td>(가) 등급</td><td>4</td><td>- 등급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해당분야<br>고급기술인 이상</td><td>해당분야<br>중급기술인</td><td>해당분야<br>초급기술인</td></tr><tr><td>배 점</td><td>4.0</td><td>3.0</td><td>2.0</td></tr></table></td></tr>
<tr><td>(나) 경력</td><td>7</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br>~8년이상</td><td>8년미만<br>~6년이상</td><td>6년미만<br>~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 수</td><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table></td></tr>
<tr><td>(다) 실적</td><td>8</td><td>-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table><tr><td>실 적</td><td>10건이상</td><td>10건미만<br>~8건이상</td><td>8건미만<br>~6건이상</td><td>6건미만<br>~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점 수</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가.<br>참<br>여<br>기<br>술<br>인</td><td>(3) 분야별<br>참여기술인</td><td>(14)</td><td>•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1]에 따른다.<br>•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td></tr>
<tr><td>(가) 등급</td><td>4</td><td>- 등급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해당분야<br>중급기술인 이상</td><td>해당분야<br>초급기술인</td></tr><tr><td>점 수</td><td>4.0</td><td>3.0</td></tr></table></td></tr>
<tr><td></td><td>(나) 경력</td><td>5</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table><tr><td>구 분</td><td>5년이상</td><td>5년미만<br>~4년이상</td><td>4년미만<br>~3년이상</td><td>3년미만<br>~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점 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td></tr>
<tr><td></td><td>(다) 실적</td><td>5</td><td>-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br><table><tr><td>실 적</td><td>5건이상</td><td>5건미만<br>~4건이상</td><td>4건미만<br>~3건이상</td><td>3건미만<br>~2건이상</td><td>2건미만</td></tr><tr><td>점 수</td><td>5.0</td><td>4.5</td><td>4</td><td>3.5</td><td>3.0</td></tr></table></td></tr>
<tr><td></td><td>(4) 참여기술인의<br>교육훈련, 전차<br>용역 수행실적</td><td>(2)</td><td>• 전차용역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td></tr>
<tr><td></td><td>(가) 교육훈련</td><td>1</td><td>-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br>·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br>·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td></tr>
<tr><td></td><td>(나) 전차용역<br>수행실적</td><td>1</td><td>-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br><table><tr><td rowspan="2">전차용역</td><td rowspan="2">당해용역</td><td colspan="4">용역완료 후 경과기간</td></tr><tr><td>3년 미만</td><td>3년 이상<br>~5년 미만</td><td>5년이상<br>~10년미만</td><td>10년<br>이상</td></tr><tr><td>책임 기술인</td><td rowspan="2">참여기술인</td><td>0.5</td><td>0.4</td><td>0.3</td><td>0</td></tr><tr><td>분야별 책임<br>기술인</td><td>0.5</td><td>0.4</td><td>0.3</td><td>0</td></tr></table>*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용역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br>* 배점<br>· 전차용역의 책임기술인인 당해용역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 전차용역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br>· 전차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용역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br>전차용역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용역 분야수<br>(단, 전차용역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용역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br>※ 발주청의 전차용역이 없을 경우 참여기술인에게 1점 부여</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br>용<br>역<br>수<br>행<br>실<br>적</td><td><br><br>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나.<br>용<br>역<br>수<br>행<br>실<br>적</td><td>(3)전차용역<br>수행실적</td><td>(1)</td><td>● 전차용역이 있는 경우 전차용역 및 전차용역 인정률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br>- 업체의 전차용역의 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용역규모 등)에 따라 평가<br><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4">용역완료 후 경과기간</th></tr><tr><th>3년 미만</th><th>3년 이상<br>~5년 미만</th><th>5년이상<br>~10년미만</th><th>10년 이상</th></tr><tr><td>점 수</td><td>1.0</td><td>0.8</td><td>0.6</td><td>0</td></tr></table>※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한다.<br>※ 전차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 용역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br>※ 전차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br>※ 전차용역이 당해용역보다 큰 경우는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br>* 전차용역 인정률(%)<br>= 당해용역 규모(면적, 연장, 금액 등)/전차용역 규모(면적, 연장, 금액 등) × 100<br>(단, 전차용역 인정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br>예시) 계산방법(조건 : 전차용역 있음, 3년미만, 단독시행, 인정률 50%)<br>= 1.0(3년미만) ×1.0(단독시행) × 0 .5(인정률)<br>※ 전차용역이 당해용역보다 작은 경우(전차용역이 부분변경용역 등인 있는 경우) 발주청은 전차용역이 당해용역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면적, 연장, 금액 등)하여, 별도의 인정률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br>※ 발주청의 전차용역이 없을 경우 참여업체에 1점 부여한다.</td></tr>
<tr><td>(4)용역수행성과</td><td>(2)</td><td>-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br>- 용역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br>- 상대평가 방법은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의 기준을 적용한다<br><table><tr><th>등급</th><th>수</th><th>우</th><th>미</th><th>양</th><th>가</th></tr><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r><td>배분율</td><td>10%</td><td>20%</td><td>40%</td><td>20%</td><td>10%</td></tr></table>※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전까지는 “(1)유사용역수행건수” 및 “(2)유사용역수행금액”의 배점에 각 1점씩 추가하여 평가한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다.<br>신<br>용<br>도</td><td>(1)영업정지(업무정지),<br>벌점 등</td><td>[10]<br>(7)</td><td>-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br><br>-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br><br>-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br>*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table>
<tr><th>부실벌점</th><th>1점이상<br>2점미만</th><th>2점이상<br>5점미만</th><th>5점이상<br>10점미만</th><th>10점이상<br>15점미만</th><th>15점이상<br>20점미만</th><th>20점이상</th></tr>
<tr><td>감점</td><td>-0.2</td><td>-0.5</td><td>-1.0</td><td>-2.0</td><td>-3.0</td><td>-5.0</td></tr>
</table>
</td></tr>
<tr><td>(2)재정상태<br>건실도</td><td>(3)</td><td>-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br><br>-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br><br>-「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br><br>-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br><br>-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table>
<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br>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br>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라.<br>기<br>술<br>개<br>발<br>및<br>투<br>자<br>실<br>적</td><td>(1)개발실적</td><td>[15]<br>(2)</td><td>-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br><br>-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br>· 건설신기술 : 2.0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br><table><tr><td>경과기간</td><td>5년 미만</td><td>5년 이상<br>10년 미만</td><td>10년 이상<br>2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공동도급비율)<br><br>-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br><br>-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2)투자실적</td><td>(10)</td><td>-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br>·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br>(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br><br><table><tr><td>구분</td><td>1.50% 이상</td><td>1.50% 미만<br>1.25% 이상</td><td>1.25% 미만<br>1.00% 이상</td><td>1.00% 미만<br>0.75% 이상</td><td>0.75% 미만<br>0.50% 이상</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공동도급비율)<br><br>-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br><br>-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br><br>-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라.<br>기<br>술<br>개<br>발<br>및<br>투<br>자<br>실<br>적</td><td>(3)활용실적</td><td>(3)</td><td>-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br><br>-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br><br>-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br>· 건설신기술 : 1.0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br>·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br><br>-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br><br>-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br><br>*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활용건수<br>(건)</td><td>5 이상</td><td>5 미만<br>4 이상</td><td>4 미만<br>3 이상</td><td>3 미만<br>2 이상</td><td>2 미만<br>1 이상</td></tr>
<tr><td>활용금액<br>(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br>18 이상</td><td>18 미만<br>16 이상</td><td>16 미만<br>14 이상</td><td>14 미만<br>12 이상</td></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br><br>*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A사 점수×공동도급비율)+(B사 점수×공동도급비율)<br>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br>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br>: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5">마.<br>업<br>무<br>중<br>복<br>도</td><td>공통사항</td><td>[10]</td><td>-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br><br>· 각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br>(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br><br>※ 업무중복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br>사례①)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br>사례②)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br>사례③)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br><br>
<table>
<tr><th>사례</th><th>만점</th><th>만점×0.9</th><th>만점×0.8</th><th>만점×0.7</th><th>만점×0.6</th></tr>
<tr><td>①</td><td>200%이하</td><td>200~250%</td><td>250~300%</td><td>300~350%</td><td>350%이상</td></tr>
<tr><td>②</td><td>250%미만</td><td>250~350%</td><td>350~450%</td><td>450~550%</td><td>550%이상</td></tr>
<tr><td>③</td><td>300%미만</td><td>300~400%</td><td>400~500%</td><td>500~600%</td><td>600%이상</td></tr>
</table>
<br>-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br><br>-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br><br>-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br><br>-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td></tr>
<tr><td>(1)책임기술인</td><td>(3)</td><td>-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td></tr>
<tr><td>(2)분야별<br>책임기술인</td><td>(4)</td><td>-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br>-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td></tr>
<tr><td>(3)분야별<br>참여기술인</td><td>(2)</td><td>-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br>-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td></tr>
<tr><td>(4)실무기술인</td><td>(1)</td><td>-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br>-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td></tr>
</table>

## 2. 가점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점</td><td>건설기술인 신규<br>고용</td><td>-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br>· 1% 이상 : 0.1점<br>· 2% 이상 : 0.2점<br>· 3% 이상 : 0.3점<br><br>*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r>*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br>*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br>-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br>-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r>
<tr><td></td><td>젊은 기술인<br>참여</td><td>-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table>
<tr><td>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br>(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br>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d><td>5% 이상</td><td>3% 이상</td><td>1% 이상</td></tr>
<tr><td>가점</td><td>0.2점</td><td>0.15점</td><td>0.1점</td></tr>
</table>
</td></tr>
</table>

## [붙임 1]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th><th>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th></tr>
<tr><td rowspan="2">도로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도로 및 공항</td><td rowspan="2">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br>※ 아래 규모 이상<br>・법정도로(시・군도) 이상 및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도로폭 6.0m이상의 실적</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토목구조, 교통, 상・하수도,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계획, 전기, 기계, 통신, 환경</td></tr>
<tr><td rowspan="2">하천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수자원개발</td><td rowspan="2">하천분야〔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설계용역(단, 댐, 유역조사, 수자원개발조사, 빗물펌프장, 유량측정조사, 하상변동조사은 제외)</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환경(수질관리, 자연환경)</td></tr>
<tr><td rowspan="2">도시계획<br>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도시계획</td><td row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일부변경),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용역, 관리계획의 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용역<br>※ 단, 관리계획의 시설결정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수자원개발, 조경계획, 환경, 구조, 토질・지질</td></tr>
<tr><td rowspan="2">도시개발<br>(단지)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도시계획</td><td row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용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단,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단지)사업은 실적증명서 상에 근거법령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인정한다.]<br>※ 사업시행근거법률,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수자원개발, 조경계획, 환경, 구조, 토질・지질</td></tr>
<tr><td rowspan="2">상·하수도<br>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상하수도</td><td rowspan="2">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br><table><tr><td rowspan="2">- 업체유사용역 평가 시</td><td>하수도분야 (상수도 60%인정)</td></tr><tr><td>상수도분야 (하수도 60%인정)</td></tr></table></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상・하수도, 기계, 전기, 토목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수질관리, 폐기물), 토목시공, 도시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조경계획</td></tr>
<tr><td rowspan="2">항만·어항<br>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항만・해안</td><td rowspan="2">「항만법」 제2조(정의)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에 의한 용역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및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포함)중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항만 및 해안, 농어업토목,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조경계획</td></tr>
<tr><td rowspan="2">공원·조경레저<br>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조경계획</td><td rowspan="2">실적증명원상 법적지정 현황이 명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단, 기본계획, 조성계획, 조성계획이 포함된 기본설계・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조경계획,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교통, 환경, 전기</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폐기물분야</td><td>책임<br>기술인</td><td>폐기물처리</td><td rowspan="2">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기계적 전처리(MBT), 매립, 재활용, 음식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br>※ 두 개이상의 복합시설은 시설별 금액이 분리될 경우에만 시설별 실적이 인정되며, 금액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1건으로 인정한다.(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그 외 시설의 복합시설일 경우 반드시 금액분리될 경우만 실적을 인정한다.)</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환경(폐기물), 기계, 전기,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td></tr>
<tr><td rowspan="2">블럭구축및유수율제고</td><td>책임<br>기술인</td><td>상하수도</td><td rowspan="2">블록시스템구축, 누수탐사사업의 용역<br>- 업체유사용역 평가 시<br>상수도분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60% 적용</td></tr>
<tr><td>분야별<br>책임(참여)<br>기술인</td><td>상・하수도,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환경, 기계, 전기</td></tr>
</table>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2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용역의 실적인정금액은 용역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역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용역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기술능력 평가서

##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 4]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table>
<tr><td rowspan="5">신 청 인</td><td colspan="2">업체명 (상호)</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영업소재지</td><td colspan="3"></td><td>전화</td><td></td></tr>
<tr><td colspan="2">사업자번호</td><td colspan="3"></td><td>팩스</td><td></td></tr>
<tr><td colspan="2">증명서용도</td><td colspan="2"></td><td>제출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td></tr>
<tr><td rowspan="9">연구수행<br>실적내용</td><td colspan="2">사 업 명</td><td colspan="3"></td><td>과제유형</td><td></td></tr>
<tr><td colspan="2">연구과제명</td><td colspan="3"></td><td>총연구기간</td><td></td></tr>
<tr><td colspan="2">연 구 내 용<br>(요약)</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7">기업부담금 내역</td><td>구 분</td><td>참여<br>형태</td><td>연구수행(참여)기간</td><td colspan="2">기업부담금(현금)</td><td>비고</td></tr>
<tr><td>1차년도</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2차년도</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3차년도</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4차년도</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5차년도</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8">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br><br>년 월 일<br><br>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td></tr>
</table>

[붙임 5]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 Ⅰ. 일반적인 사항 | | | | | | 발급번호 | |
|---|---|---|---|---|---|---|---|
| 1) 용 역 명 | (국문)<br>(영문) | | | | | 2) 발주기관<br>(발 주 국) | |
| 3) 발주기관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 | |
| 5) 신 청 자<br>(대 표)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
| | 5-4)영업소재지 | | | | 5-5)전화번호 | |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 | |
| 7) 원하도급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 | | | | |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 | | | |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 | | | |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
|---|---|---|---|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 1) 회 사 명 |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 4) 전체용역규모<br>(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 | | |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확 인 자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위 내용을 증명함.<br><br>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
| 용 역 명 | | |
| 발 주 처 | | |

[붙임 6]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 Ⅰ. 일반적인 사항 | | | | 발급번호 | |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 1-2) 대 표 자 | |
| | 1-3) 영업소재지 | | | 1-4) 면허번호 | |

| Ⅱ. 해외설계용역 | | | | | |
|---|---|---|---|---|---|
| 1) 공 사 명 | (국문)<br>(영문) | | | 2) 발주기관<br>(발 주 국) | |
| 3) 계약 및 준공 | 3-1)<br>계약일자 | | 3-2)<br>착공일자 | 3-3)<br>준공일자 |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 | |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
| 1) 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위 내용을 증명함.<br><br>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
| 발 주 처 | | |
| 공 사 명 | | |

[붙임 7]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지 표 |
|---|---|---|
| 수 | 3.0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br>▪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br>▪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 우 | 2.7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br>▪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br>▪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 미 | 2.4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br>▪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br>▪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 양 | 2.1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br>▪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br>▪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 가 | 1.8 |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br>▪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br>▪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붙임 8] 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 업체수 | 등 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경 상 남 도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규칙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3.10.)「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이내(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0000년 00월00일)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해당분야는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
|---|---|
| 도로분야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br>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
| 하천분야 | 하천, 교량, 댐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br>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
| 상하수도분야 | 우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상하수도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br>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
| 도시개발<br>(단지)분야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
| 폐기물분야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전처리(MBT), 매립, 자원재활용,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br>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
| 건축분야 | 건축, 주택 공종에서의 건설공사 업무는 100%,<br>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

※ 발주청에서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를 **상기 내용 중**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이상으로 해당사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의 분야, 등급 및 인원수를 결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분야, 등급 및 인원수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 구 분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
| 도로분야 | 토목 | 토목, 건축, 기계, 환경, 전기·전자, 조경 | 토목(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
| 하천분야 | 토목 | 토목, 건축, 기계, 환경, 전기·전자, 조경 | 토목(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건축,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
| 상하수도 분야 | 토목 | 토목, 건축, 기계, 환경, 전기·전자, 조경 | 토목(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
| 도시개발 (단지)분야 | 토목 | 토목, 건축, 기계, 환경, 전기·전자, 조경 | 토목(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
| 폐기물분야 | 토목, 환경, 기계 | 토목, 건축, 기계, 환경, 전기·전자, 조경 | 토목(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
| 건축분야 | 건축 | 토목, 건축, 기계, 환경, 전기·전자, 조경 | 건축, 토목(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기계, 전기·전자, 조경, 환경 |

※ 발주청에서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인원 및 분야를 **상기 내용 중**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점수배분률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 · 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 Ⅲ.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배점 | 평가방법 |
|---|---|---|---|---|
| 합 계 | | | 100 | |
| 가.참여기술인 [60] | (1)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5] | ㈎ 해당분야 경력 | 15 (11～13) | 절대평가 |
|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 | ㈐ 교육훈련 | 1 | |
|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5] | ㈎ 해당분야 경력 | 15 (13～15) | 절대평가 |
|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 | ㈐ 교육훈련 | 1 | |
| | (3) 기술지원 기술인[10] | ㈎ 등급 | 3 | 절대평가 |
|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 | ㈐ 교육훈련 | 1 | |
| | (4) 면접(발표) [3～6] |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 2～4 | 상대평가 |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2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0]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업체) | | 8 | 절대평가 |
| | (2) 용역수행성과 | | 2 | 상대평가 |
| 다. 신용도[15] | (1) 입찰참가제한・영업(업무)정지 | | 7 | 절대평가 |
| | (2) 벌점 | | 5 |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3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 (1) 개발・활용 실적 | | 3 | 절대평가 |
| | (2) 투자실적 | | 7 | |
| 마. 교체빈도 [5]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 3 | 절대평가 |
| | (2) 참여기술인 | | 2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1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5 | 절대평가 |

## 1. 분야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br>참<br>여<br>기<br>술<br>인</td><td>(1) 책임건설사업<br>관리기술인</td><td>60<br>[25]<br>(21-23)</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td></tr>
<tr><td></td><td>(가) 해당분야<br>경력</td><td>15<br>(11-13)</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경 력 기 간(단위 : 년)</th></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br>13이상</td><td>13미만<br>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br>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br>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br>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br>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br>7이상</td><td>7미만<br>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미만</td><td>9이상</td><td>9미만<br>7이상</td><td>7미만<br>5이상</td><td>5미만<br>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15<br>(13~11)</td><td>13.5<br>(11.7<br>~9.9)</td><td>12<br>(10.4<br>~8.8)</td><td>10.5<br>(9.1<br>~7.7)</td><td>9<br>(7.8<br>~6.6)</td></tr>
</table>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br><b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td></tr>
<tr><td></td><td>(나) 직무분야<br>실적</td><td>9</td><td>○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tr><th>등 급</th><th colspan="5">실 적(단위 : 년)</th></tr>
<tr><td>특급기술인</td><td>15이상</td><td>15미만<br>13이상</td><td>13미만<br>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12이상</td><td>12미만<br>10이상</td><td>10미만<br>8이상</td><td>8미만<br>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9.0</td><td>8.1</td><td>7.2</td><td>6.3</td><td>5.4</td></tr>
</table></td></tr>
<tr><td></td><td>(다) 교육훈련</td><td>1</td><t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br>-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br>-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2) 분야별 건설<br>사업관리기술인</td><td>[25]<br>(23-24)</td><td>○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br><br>* 발주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을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조정 가능</td></tr>
<tr><td></td><td>(가) 해당분야<br>경력</td><td>15<br>(13-14)</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경력(단위 : 월)</th></tr>
<tr><td>300억원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br>52이상</td><td>52미만<br>44이상</td><td>44미만<br>36이상</td><td>36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br>100억원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br>42이상</td><td>42미만<br>36이상</td><td>36미만<br>24이상</td><td>24미만</td></tr>
<tr><td>100억원미만</td><td>36이상</td><td>36미만<br>30이상</td><td>30미만<br>24이상</td><td>24미만<br>18이상</td><td>18미만</td></tr>
<tr><td>점 수</td><td>15<br>(14~13)</td><td>13.5<br>(12.6~11.7)</td><td>12<br>(11.2~10.4)</td><td>10.5<br>(9.8~9.1)</td><td>9<br>(8.4~7.8)</td></tr>
</table>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td></tr>
<tr><td></td><td>(나) 직무분야<br>실적</td><td>9</td><td>-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table>
<tr><th>등 급</th><th colspan="5">실 적(단위 : 년)</th></tr>
<tr><td>특급기술인</td><td>12이상</td><td>12미만<br>10이상</td><td>10미만<br>8이상</td><td>8미만<br>6이상</td><td>6미만</td></tr>
<tr><td>고급기술인</td><td>10이상</td><td>10미만<br>8이상</td><td>8미만<br>6이상</td><td>6미만<br>4이상</td><td>4미만</td></tr>
<tr><td>중급기술인</td><td>8이상</td><td>8미만<br>6이상</td><td>6미만<br>4이상</td><td>4미만<br>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9.0</td><td>8.1</td><td>7.2</td><td>6.3</td><td>5.4</td></tr>
</table>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td></tr>
<tr><td></td><td>(다) 교육훈련</td><td>1</td><t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br>-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br>-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br><br>※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을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참여하는 분야별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3) 기술지원<br>기술인</td><td>[10]</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br>○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등급, 점수배분율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td></tr>
<tr><td></td><td>(가) 등급</td><td>3</td><td>○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2">등 급(점수)</th></tr>
<tr><td rowspan="2">총 공사비<br>300억원 이상</td><td>특급기술인</td><td>고급기술인 이하</td></tr>
<tr><td>3.0</td><td>0</td></tr>
<tr><td rowspan="2">총 공사비<br>300억원 미만</td><td>고급기술인 이상</td><td>중급기술인 이하</td></tr>
<tr><td>3.0</td><td>0</td></tr>
</table></td></tr>
<tr><td></td><td>(나) 해당분야<br>경력</td><td>6</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th></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br>13이상</td><td>13미만<br>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br>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br>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br>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br>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br>9이상</td><td>9미만<br>7이상</td><td>7미만<br>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미만</td><td>9이상</td><td>9미만<br>7이상</td><td>7미만<br>5이상</td><td>5미만<br>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td></tr>
<tr><td></td><td>(다) 교육훈련</td><td>1</td><td>○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br>-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br>-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td></tr>
<tr><td></td><td>(4) 면접(발표)</td><td>(3~6)</td><td>○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br>-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정을 위한 면접(발표)시,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배점한도에 상대평부(붙임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용 역 비</th></tr>
<tr><th>20억원 미만</th><th>20억원 이상<br>30억원 미만</th><th>30억원 이상</th></tr>
<tr><td>책임건설사업<br>관리기술인</td><td>2점</td><td>3점</td><td>4점</td></tr>
<tr><td>분야별건설사업<br>관리기술인</td><td>1점</td><td>1.5점</td><td>2점</td></tr>
</table>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나.<br><br>유<br>사<br>용<br>역<br>수<br>행<br>실<br>적</td><td>(1)유사용역<br>수행실적</td><td>10<br>(8)</td><td>○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br><br>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 또는 폐기물처리시설공사인 경우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단위 : 억원)</th></tr>
<tr><td>3,000억원 이상</td><td>120이상</td><td>120미만<br>100이상</td><td>100미만<br>90이상</td><td>90미만<br>80이상</td><td>80미만</td></tr>
<tr><td>3,000억원 미만<br>2,000억원 이상</td><td>100이상</td><td>100미만<br>90이상</td><td>90미만<br>80이상</td><td>80미만<br>70이상</td><td>70미만</td></tr>
<tr><td>2,000억원 미만<br>1,000억원 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br>70이상</td><td>70미만<br>60이상</td><td>60미만<br>50이상</td><td>50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br>500억원 이상</td><td>60이상</td><td>60미만<br>50이상</td><td>50미만<br>40이상</td><td>40미만<br>30이상</td><td>30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br>300억원 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br>35이상</td><td>35미만<br>30이상</td><td>30미만<br>25이상</td><td>2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br>1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br>25이상</td><td>25미만<br>20이상</td><td>20미만<br>15이상</td><td>15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20이상</td><td>20미만<br>15이상</td><td>15미만<br>10이상</td><td>10미만<br>5이상</td><td>5미만</td></tr>
<tr><td>점수</td><td>10<br>(8)</td><td>9<br>(7.2)</td><td>8<br>(6.4)</td><td>7<br>(5.6)</td><td>6<br>(4.8)</td></tr>
</table>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단위 : 억원)</th></tr>
<tr><td>1,000억원 이상</td><td>50이상</td><td>50미만<br>45이상</td><td>45미만<br>40이상</td><td>40미만<br>35이상</td><td>35미만</td></tr>
<tr><td>1,000억원 미만<br>500억원 이상</td><td>40이상</td><td>40미만<br>35이상</td><td>35미만<br>30이상</td><td>30미만<br>25이상</td><td>25미만</td></tr>
<tr><td>500억원 미만<br>300억원 이상</td><td>30이상</td><td>30미만<br>25이상</td><td>25미만<br>20이상</td><td>20미만<br>5이상</td><td>15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br>100억원 이상</td><td>20이상</td><td>60미만<br>50이상</td><td>50미만<br>40이상</td><td>40미만<br>30이상</td><td>5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10이상</td><td>10미만<br>8이상</td><td>8미만<br>6이상</td><td>6미만<br>4이상</td><td>4미만</td></tr>
<tr><td>점수</td><td>10<br>(8)</td><td>9<br>(7.2)</td><td>8<br>(6.4)</td><td>7<br>(5.6)</td><td>6<br>(4.8)</td></tr>
</table>
※ 토목+건축+기타공사 등 복합공사(주공종 50% 이하) 및 기타공사(폐기물처리시설공사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세부사업능력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br><br>○ 산정방법<br>-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br>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br>＋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br>＋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td><td>-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br>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br>＋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br><br>-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br>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br>＋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br><br>산정예시)<br>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4건,<br>설계용역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6건일 경우<br><br>-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br>= 2건 × 1.0 ＋ (4건+5건×0.7) × 0.7 ＋ (3건 + 6건×0.7) × 0.7<br>-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br>= 2건 × 1.0 ＋ (4건+5건×0.7) ×1.0<br>-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br>= 2건 × 1.0 ＋ (3건+6건×0.7) × 1.0<br>※설계용역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td></tr>
<tr><td></td><td>(2)용역수행성과</td><td>(2)</td><td>○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한다.<br>*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br>- 상대평가 방법은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2.의 기준을 적용한다<br><table><tr><td>등급</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tr><td>배점</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r><td>배분율</td><td>10%</td><td>20%</td><td>40%</td><td>20%</td><td>10%</td></tr></table>※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발주청에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br>※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주청에서 용역수행성과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유사용역실적”의 배점에 2점 추가하여 평가한다.</td></tr>
<tr><td>다.<br><br>신<br>용<br>도</td><td>(1) 영업(업무)정지</td><td>15<br>[7]</td><td>○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br>○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td></tr>
<tr><td></td><td>(2) 벌점</td><td>[5]</td><td>○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br>○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3) 재정상태<br>건실도</td><td>[3]</td><td>○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br><신용평가등급 기준><br><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td></tr>
<tr><td>라.<br><br>기술개발및투자실적</td><td>(1) 개발·활용<br>실적</td><td>10<br>[3]</td><td>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br><br>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br><br>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br><br>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br>○ 개발실적<br>-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br>○ 활용실적<br>-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br>-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r>○ 기준점수<br><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2.0점/건당</td></tr><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 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td><td></td><td>○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br><table><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5">가 중 치</td></tr><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r><td>실적건수<br>(건)</td><td>5이상</td><td>5미만<br>4이상</td><td>4미만<br>3이상</td><td>3미만<br>2이상</td><td>2미만<br>1이상</td></tr><tr><td>실적금액<br>(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br>18이상</td><td>18미만<br>16이상</td><td>16미만<br>14이상</td><td>14미만<br>12이상</td></tr></table>※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br>○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br><table><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br>10년미만</td><td>10년이상<br>20년미만</td></tr><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table>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td></tr>
<tr><td></td><td>(2) 투자실적</td><td>[7]</td><td>○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br>-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br><table><tr><td>구분</td><td>1.5%이상</td><td>1.50%미만<br>1.25%이상</td><td>1.25%미만<br>1.00%이상</td><td>1.00%미만<br>0.75%이상</td><td>0.75%미만<br>0.50%이상</td><td>0.5%미만</td></tr><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table>※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td></tr>
<tr><td>마.<br><br>교<br>체<br>빈<br>도</td><td></td><td>5</td><td>○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td></tr>
<tr><td></td><td>(1) 건설사업관리<br>용역사업자</td><td>[3]</td><td>○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br>※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br><table><tr><td>교체빈도율<br>(%)</td><td>5%미만</td><td>5%이상<br>10%미만</td><td>10%이상<br>15%미만</td><td>15%이상<br>20%미만</td><td>20%이상</td></tr><tr><td>점 수</td><td>3</td><td>2.5</td><td>2</td><td>1</td><td>0</td></tr></table></td></tr>
<tr><td></td><td>(2) 참여기술인</td><td>[2]</td><td>○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td></tr>
</table>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table>
<tr><th>평가<br>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세부평가방법</th></tr>
<tr><td>가점</td><td>공사비절감<br>기여 기술인</td><td>○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br>-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br>-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br><br><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br><table><tr><td>가중치</td><td>1.0</td><td>0.8</td><td>0.5</td></tr><tr><td>절감금액</td><td>10억원 이상</td><td>10억원 미만<br>5억원 이상</td><td>5억원 미만<br>1억원 이상</td></tr><tr><td>절감비율</td><td>1.0% 이상</td><td>1.0% 미만<br>0.5% 이상</td><td>0.5% 미만<br>0.1% 이상</td></tr></table><br>*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br>*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br>*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br>*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br>*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br>*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td></tr>
<tr><td></td><td>건설기술인 신규<br>고용</td><td>○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br>· 1% 이상 : 0.1점<br>· 2% 이상 : 0.2점<br>· 3% 이상 : 0.3점<br>-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r>-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br>-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br>○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br>○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r>
<tr><td>감점</td><td>부패행위 관련자</td><td>○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td></tr>
</table>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 | ○ 감점적용 점수<br>-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br>-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br>-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br><br><부패행위><br>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br>※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붙임 1]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 업체수 | 등 급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2]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 3]

#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 | | |
|---|---|---|---|---|
| 1)용역명 | | | 3)발주기관 (발주청) | |
| 2)공사현장위치 | | | | |
| 4)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 |
| | 4-2)총공사비 | | |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사명 | | 5-3)대표자 | |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 6)용역기간 | 20 . . . ~ 20 . . . | | | |
| 7)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 |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여부 | 절감기여율(%) | 절감금액(백만원) | 비고 |
|---|---|---|---|---|---|---|---|---|
| 합 계 | 인 | | | | | 100 | | |
| 1)책임 |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 주 기 관 장** 직인

[별표 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경 상 남 도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규칙별표4〕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7호 (2020.3.10.)「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

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제 반환하지 않는다.

##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직무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는 안전관리분야의 전문분야인 건설안전분야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단, 건축분야는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를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전문분야 | 해당전문분야 외의 분야 | 비고 |
|---|---|---|
| 교량 및 터널 | 수리시설, 항만 | |
| 수리시설 | 교량 및 터널, 항만 | |
| 항만 |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 |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실적 건수 (5점)

| 구분 | 14건이상 | 14건미만<br>12건이상 | 12건미만<br>10건이상 | 10건미만<br>8건이상 | 8건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해당 전문분야 6건, 해당 전문분야 외 9건
- 평가점수 : 6건 + 7.9건 = 13.9건 → 4.5점

* 해당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3점(60%)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경력)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전문분야 실적을 말한다.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1)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 정하여야 한다.

## Ⅲ.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 | 배점 | 평가방법 |
|---|---|---|---|---|---|
| 합 계 | | | | 100 | |
| 가. 참여기술인 [45] | (1) 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 | (나)경력 | | 8 | |
| | | (다)실적 | 건수 | 5 | |
| | | | 금액 | 5 |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 2 | 절대평가 |
| | | (나)경력 | | 6 | |
| | | (다)실적 | 건수 | 5 | |
| | | | 금액 | 5 |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 2 | 절대평가 |
| | | (나)경력 | | 3 | |
| | | (다)실적 | | 4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 | 12 | 절대평가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 | 13 | |
| 다. 신용도 [10]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 | 4 | 절대평가 |
| |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 | 3 |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1) 개발·사용실적 | | | 2 | 절대평가 |
| | (2) 투자실적 | | | 8 | |
| 마. 업무중복도 [10] | (1) 책임기술인 | | | 6 | 절대평가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 | 4 | |
| 가점[0.3]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 | 0.3 | 절대평가 |

## 1. 분야별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2">가.<br>참여<br>기술인</td><td></td><td>[45]</td><td></td></tr>
<tr><td>(1) 책임기술인<br>(가) 등급</td><td>(18)<br>-</td><td>-「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부적격 시 실격</td></tr>
<tr><td></td><td>(나) 경력</td><td>8</td><td>-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h>구분</th><th>10년 이상</th><th>10년 미만<br>~9년 이상</th><th>9년미만<br>~8년이상</th><th>8년 미만<br>~7년이상</th><th>7년미만</th></tr>
<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 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td></tr>
<tr><td></td><td>(다) 실적(건수)</td><td>5</td><td>- 실적 건수 (5점)
<table>
<tr><th>구분</th><th>14건 이상</th><th>14건 미만<br>12건 이상</th><th>12건 미만<br>10건 이상</th><th>10건 미만<br>8건 이상</th><th>8건 미만</th></tr>
<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td></tr>
<tr><td></td><td>실적(금액)</td><td>5</td><td>- 실적 금액 (5점)
<table>
<tr><th>구분</th><th>7억 이상</th><th>7억 미만<br>6억 이상</th><th>6억 미만<br>5억 이상</th><th>5억 미만<br>4억 이상</th><th>4억 미만</th></tr>
<tr><td>배점</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
</table></td></tr>
<tr><td></td><td>(2) 분야별<br>책임기술인<br>(가)등급</td><td>(18)<br>2</td><td>-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
<tr><th>자격 및 등급<br>분야</th><th>해당분야<br>특급기술인</th><th>해당분야<br>고급기술인</th><th>해당분야<br>중급기술인</th></tr>
<tr><td>조사 및 시험 분야</td><td>1</td><td>0.9</td><td>0.8</td></tr>
<tr><td>분석 및 평가 분야</td><td>1</td><td>0.9</td><td>0.8</td></tr>
</table></td></tr>
<tr><td></td><td>(나) 경력</td><td>6</td><td>-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tr><th>규모<br>용역의 종류</th><th>7년이상</th><th>7년미만<br>6년이상</th><th>6년미만<br>5년이상</th><th>5년미만<br>4년이상</th><th>4년미만</th></tr>
<tr><td>조사 및 시험 분야</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r><td>분석 및 평가 분야</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td></tr>
<tr><td></td><td>(다) 실적(건수)</td><td>5</td><td>-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table>
<tr><th>구 분</th><th>11건이상</th><th>11건미만<br>9건이상</th><th>9건미만<br>7건이상</th><th>7건미만<br>5건이상</th><th>5건미만</th></tr>
<tr><td>조사 및 시험</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
<tr><td>분석 및 평가</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
</table></td></tr>
<tr><td></td><td>실적(금액)</td><td>5</td><td>-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table>
<tr><th>구 분</th><th>5억이상</th><th>5억미만<br>4.5억이상</th><th>4.5억미만<br>4억이상</th><th>4억미만<br>3.5억이상</th><th>3.5억<br>미만</th></tr>
<tr><td>조사 및 시험</td><td rowspan="2">2.5</td><td rowspan="2">2.25</td><td rowspan="2">2.0</td><td rowspan="2">1.75</td><td rowspan="2">1.5</td></tr>
<tr><td>분석 및 평가</td></tr>
</table>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가.<br>참<br>여<br>기<br>술<br>인</td><td>(3) 분야별<br>참여기술인</td><td>(9)</td><td>○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td></tr>
<tr><td></td><td>(가) 등급</td><td>2</td><td>-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br><table><tr><th>자격 및 등급 / 분야</th><th>해당분야<br>고급기술인</th><th>해당분야<br>중급기술인</th><th>해당분야<br>초급기술인</th></tr><tr><td>조사 및 시험 분야</td><td>1</td><td>0.9</td><td>0.8</td></tr><tr><td>분석 및 평가 분야</td><td>1</td><td>0.9</td><td>0.8</td></tr></table></td></tr>
<tr><td></td><td>(나) 경력</td><td>3</td><td>-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br><table><tr><th>규모 / 용역의 종류</th><th>5년이상</th><th>5년미만<br>4년이상</th><th>4년미만<br>3년이상</th><th>3년미만<br>2년이상</th><th>2년미만</th></tr><tr><td>조사 및 시험</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0.9</td></tr><tr><td>분석 및 평가</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0.9</td></tr></table></td></tr>
<tr><td></td><td>(다) 실적(건수)</td><td>4</td><td>-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br><table><tr><th>구 분</th><th>8건 이상</th><th>8건 미만<br>6건 이상</th><th>6건 미만<br>4건 이상</th><th>4건 미만<br>2건 이상</th><th>2건 미만</th></tr><tr><td>조사 및 시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r><td>분석 및 평가</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br>*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td></tr>
<tr><td>나.<br>유사용역<br>수행실적</td><td></td><td>[25]</td><td>○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td></tr>
<tr><td></td><td>(1) 건수</td><td>(12)</td><td>- 실적 건수 (12점)<br><table><tr><th>구분</th><th>10건 이상</th><th>10건 미만<br>8건 이상</th><th>8건 미만<br>6건 이상</th><th>6건 미만<br>4건 이상</th><th>4건 미만</th></tr><tr><td>배점</td><td>12.0</td><td>10.8</td><td>9.6</td><td>8.4</td><td>7.2</td></tr></table></td></tr>
<tr><td></td><td>(2) 금액</td><td>(13)</td><td>- 실적 금액 (13점)<br><table><tr><th>구분</th><th>10억원 이상</th><th>10억 미만<br>8억 이상</th><th>8억 미만<br>6억 이상</th><th>6억 미만<br>4억 이상</th><th>4억원 미만</th></tr><tr><td>배점</td><td>13.0</td><td>11.7</td><td>10.4</td><td>9.1</td><td>7.8</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다.<br>신용도</td><td>(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td><td>[10]<br>(4)</td><td>-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td></tr>
<tr><td></td><td>(2) 업무정지</td><td>(3)</td><td>- 삭제</td></tr>
<tr><td></td><td>(3) 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br>-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d>회사채</td><td>A-이상</td><td>A-미만<br>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br>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어음</td><td>A2-이상</td><td>A2-미만<br>A3-이상</td><td>A3-미만<br>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A-이상</td><td>A-미만<br>BBB-이상</td><td>BBB-미만<br>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0</td></tr>
</table>
* 붙임1 참조</td></tr>
<tr><td>라.<br>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td><td>(1) 개발·사용 실적</td><td>[10]<br>(2)</td><td>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br>-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br>- 특허 : 0.6점 / 건당<br>*건설신기술,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table>
<tr><td>가중치 / 실적</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r><td>건수</td><td>5이상</td><td>5미만<br>4이상</td><td>4미만<br>3이상</td><td>3미만<br>2이상</td><td>2미만<br>1이상</td></tr>
<tr><td>금액(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br>18이상</td><td>18미만<br>16이상</td><td>16미만<br>14이상</td><td>14미만<br>12이상</td></tr>
</table>
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br>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td><td>(2) 투자실적</td><td>(8)</td><td>-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tr><td>구분</td><td>3%이상</td><td>3.0%미만<br>2.5%이상</td><td>2.5%미만<br>2.0%이상</td><td>2.0%미만<br>1.5%이상</td><td>1.5%미만</td></tr>
<tr><td>배점</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마.<br>업무<br>중첩도</td><td>(1) 책임기술인</td><td>[10]<br>(6)</td><td>-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table>
<tr><td>구분</td><td>12월 미만</td><td>12월이상<br>15월미만</td><td>15월이상<br>18월미만</td><td>18월이상<br>21월미만</td><td>21월이상</td></tr>
<tr><td>배점</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td></tr>
<tr><td></td><td>(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td><td>(4)</td><td>-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table>
<tr><td>구분</td><td>12월<br>미만</td><td>12월이상<br>15월미만</td><td>15월이상<br>18월미만</td><td>18월이상<br>21월미만</td><td>21월이상</td></tr>
<tr><td>배점</td><td>4.0</td><td>3.6</td><td>3.2</td><td>2.8</td><td>2.4</td></tr>
</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br>*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td></tr>
</table>

## 2. 가점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br>· 1% 이상 : 0.1점<br>· 2% 이상 : 0.2점<br>· 3% 이상 : 0.3점<br>*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r>*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br>*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br>-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br>-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br>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br>(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⑨ 기관별 설계심의 담당자 연락처

# 전국 설계심의기관 연락처

('20. 4월 기준)

| 소 속 기 관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
| **국토교통부**<br>(기술기준과) | 과장(소위원장) | 박명주 | 044-201-3561 | |
| | 사무관(간사) | 강성호 | 044-201-3564 | |
| | 주무관(서기) | 박준수 | 044-201-3565 | |
| **조달청**<br>(시설사업기획과) | 과장(소위원장) | 김용환 | 042-724-7415 | |
| | 담당 사무관 | 이진구 | 042-724-7417 | |
| | 담당 주무관 | 김병기 | 042-724-7419 | |
| **서울특별시**<br>(기술심사담당관) | 담당관(소위원장) | 권완택 | 02-2133-8550 | |
| | 사무관 | 류용열 | 02-2133-8552 | |
| | 주무관 | 유현선 | 02-2133-8555 | |
| **인천광역시**<br>(건설심사과) | 과장(소위원장) | 서강원 | 032-440-5033 | |
| | 팀장(간사) | 조건영 | 032-440-3751 | |
| | 주무관(서기) | 조일동 | 032-440-3752 | |
| **경기도**<br>(건설정책과) | 과장(소위원장) | 이재영 | 031-8030-3630 | |
| | 토목기술팀장(간사) | 유재정 | 031-8030-3871 | |
| | 주무관(서기) | 이제형 | 031-8030-3872 | |
| | 주무관(서기) | 백승민 | 031-8030-3873 | |
| | 건축기술팀장(간사) | 김완신 | 031-8030-3911 | |
| | 주무관(서기) | 김의영 | 031-8030-3912 | |
| | 주무관(서기) | 신진철 | 031-8030-3913 | |
| **LH공사**<br>(기술심사처) | 단장(소위원장) | 이명하 | 055-922-5360 | |
| | 부장 | 이준식 | 055-922-5363 | |
| | 차장 | 장민우 | 055-922-5373 | |
| | 과장 | 정진기 | 055-922-5379 | |
| **한국도로공사**<br>(기술심사처) | 처장(소위원장) | 봉영채 | 054-811-3701 | |
| | 팀장(간사) | 이주안 | 054-811-3711 | |
| | 차장 | 권의성 | 054-811-3712 | |
| | 과장 | 이상지 | 054-811-3719 | |
| **한국수자원공사**<br>(기술계획처) | 처장(소위원장) | 안정호 | 042-629-3700 | |
| | 부장 | 김재윤 | 042-629-3701 | |
| | 차장 | 안흥기 | 042-629-3702 | |
| | 과장 | 권형택 | 042-629-3703 | |
| **한국철도시설공단**<br>(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건설본부장 | 최원일 | 042-607-3017 | |
| | 부장 | 한승우 | 042-607-3872 | |
| | 담당자 | 오성찬 | 042-607-3874 | |
| **한국농어촌공사**<br>(기반정비처) | 처장(소위원장) | 주영일 | 061-338-5291 | |
| | 부장 | 조현찬 | 061-338-5341 | |
| | 차장 | 오명식 | 061-338-5342 | |
| | 대리 | 김은지 | 061-338-5343 | |

| 소속기관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비 고 |
|---|---|---|---|---|
| 한국환경공단<br>(환경기술연구소)<br>(기술심사부) | 연구소장(소위원장) | 박광규 | 032-590-4800 | |
| | 팀장(간사) | 고태기 | 032-590-4711 | |
| | 차장(서기) | 김동욱 | 032-590-4716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br>(사업관리총괄과) | 과장(소위원장) | 유근호 | 044-200-3201 | |
| | 사무관(간사) | 강병구 | 044-200-3203 | |
| | 주무관(서기) | 조용구 | 044-200-3204 | |
| 부산광역시<br>(기술심사과) | 과장(소위원장) | 윤덕영 | 051-888-2510 | |
| | 사무관(간사) | 하치덕 | 051-888-2523 | |
| | 주무관(서기) | 구태윤 | 051-888-2522 | |
| 광주광역시<br>(건설행정과) | 과장(소위원장) | 이한국 | 062-613-4610 | |
| | 사무관(간사) | 노세곤 | 062-613-4630 | |
| | 주무관(서기) | 김석우 | 062-613-4631 | |
| 대구광역시<br>(건설산업과) | 과장(소위원장) | 이재근 | 053-803-4500 | |
| | 팀장(간사) | 박영호 | 053-803-4520 | |
| | 주무관(서기) | 조병철 | 053-803-4523 | |
| 대전광역시<br>(정책기획관) | 정책기획관 | 고현덕 | 042-270-3000 | |
| | 사무관(간사) | 곽경아 | 042-270-3070 | |
| | 주무관(서기) | 김성원 | 042-270-3072 | |
| 울산광역시<br>(건설도로과) | 국장(소위원장) | 김춘수 | 052-229-3800 | |
| | 사무관 | 박장수 | 052-229-4030 | |
| | 주무관 | 변준식 | 052-229-4031 | |
| 강원도<br>(지역도시과) | 과장(소위원장) | 송삼규 | 033-249-3440 | |
| | 사무관 | 남수연 | 033-249-2823 | |
| | 주무관 | 이정록 | 033-249-3432 | |
| 충청북도<br>(균형발전과) | 과장(소위원장) | 이제승 | 043-220-4110 | |
| | 도시개발팀장(간사) | 강종근 | 043-220-4141 | |
| | 주무관(서기) | 김우진 | 043-220-4144 | |
| 충청남도<br>(건설정책과) | 국장(소위원장) | 박연진 | 041-635-2800 | |
| | 건설기술팀장(간사) | 김경래 | 041-635-4605 | |
| | 주무관(서기) | 강현직 | 041-635-4624 | |
| 전라북도<br>(건설교통국)<br>(지역정책과) | 과장(소위원장) | 강경덕 | 063-280-3610 | |
| | 지역발전팀장(간사) | 최기만 | 063-280-3612 | |
| | 주무관(서기) | 이정근 | 063-280-3614 | |
| 전라남도<br>(건설도시과) | 과장(소위원장) | 김정남 | 061-286-7310 | |
| | 사무관(간사) | 염승열 | 061-286-7350 | |
| | 주무관(서기) | 남 건 | 061-286-7351 | |
| 경상북도<br>(도시재생과) | 과장(소위원장) | 장성활 | 054-880-3940 | |
| | 사무관(간사) | 이석우 | 054-880-3955 | |
| | 주무관(서기) | 엄재경 | 054-880-3956 | |
| 경상남도<br>(건설지원과) | 본부장(소위원장) | 신대호 | 055-211-2700 | |
| | 사무관(간사) | 한재명 | 055-211-2922 | |
| | 주무관 | 조용하 | 055-211-2923 | |
| 제주특별자치도<br>(건설과) | 과장(소위원장) | 부남기 | 064-710-2670 | |
| | 사무관 | 김영범 | 064-710-4291 | |
| | 주무관 | 고대호 | 064-710-4292 | |

## -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발행 연혁 -

- 『2011년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발행』 : 2011년 3월
- 『2012년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발행』 : 2012년 4월
- 『2013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설명서 발행』 : 2013년 5월
- 『2015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설명서 발행』 : 2015년 1월
- 『2016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설명서 발행』 : 2016년 1월
- 『2017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설명서 발행』 : 2017년 2월
- 『201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발행』 : 2018년 1월
- 『2019년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발행』 : 2019년 7월


지방건설기술심의 매뉴얼

발 행 일 2020년 5월

발 행 처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055) 211-2921

인 쇄

**부패척결**과 고강도 **청렴대책**으로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비리제보**
**080-211-0999**

경 상 남 도
GYEONGNAM